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차례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인사말

6p~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강민정

발표문

12p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발표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토론문

72p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82p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88p

김은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102p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104p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참고자료

106p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망
(뇌·심혈관계 질병) 사건(최종) 보고서(2015-2020),
분석 최종 보고서



인사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강민정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0년에 저는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로 배달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노동자들이 잇달아 쓰러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로사’라는 단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몇 나라뿐입니다. 죽을 만큼 일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선진국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로사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를 바꿔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작년 봄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가 돌아가신 일을 계기로 KBS 탐사보도부, 노무법인 필과 함께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고, 그것이 과로사 증가와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휴식과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각종 부가업무와 ‘갑질’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인정된 아파트 경비원들은 거의 100%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제도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입주민 괴롭힘으로 경비노동자가 분신한 일이 있으나 같은 아파트에서 2020년에도 과로사가 일어났고, 올해 초에도 과로사 추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노동환경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사고에 의한 죽음은 물론, 과로에 따른 죽음도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비노동자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 스트레스 그리고 그 종합적 결과인 과로사를 이제 추방하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신 우원식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취재와 실태 분석을 함께 한 KBS 탐사보도부와 노무법인 필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남우근 노무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의 김형렬 교수님,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김은풍 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경비노동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주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승희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경비노동자 과로사가 사라진 원년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여전히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 성동구 등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필수노동자’라 호명하며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공기처럼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필수노동자 중 하나가 경비노동자입니다. 경비노동자가 없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학교 등 공공기관은 상상조차 하기 끔찍합니다. 그들의 노동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됩니다.

경비노동자는 타 직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명목상 휴식시간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들의 노동과정 특성상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가 대부분이라 낮과 밤이 바뀐 그들의 휴일은 수면조차 제대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 삶이 파괴되어 노동자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자신의 건강 상황을 수치화해서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과로사는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돌연사입니다. 더구나 경비노동자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서 더 큰 과로사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호를 현실화해야 이 불행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과로사 사회를 막기 위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더구나 지난 6년간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례 전수조사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접할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공들여 분석해 발제를 준비해주신 유상철 노무사의 노고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정노동·야간노동 등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대목동병원 김현주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 연구위원인 남우근 노무사,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김형렬 교수, 서울의 수많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벗인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은풍 노무사, 경비노동자사업단에서 함께 하시는 경비노동자 당사자 분까지 모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승희 사무관도 오늘 현장의 얘기를 토대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비노동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아래로 흘러 고여서 임계점을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은 경비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경비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님께서 주관하시는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경비노동자,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에는 1천 1백만 호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가 많은 만큼, 그 안에는 수많은 경비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 출퇴근 길에 경비노동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4시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도 힘들 텐데, 주차단속, 택배 보관은 물론, 아파트 단지 청소예다가 분리수거까지 모든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경비노동자의 업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된 경비노동자의 일 뒤에는 과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고서는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 92건 중 71건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이고, 이 중 55건이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제, 야간 1인 근무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보여주듯, 과로사한 노동자들은 1인이 근무하던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졌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비업무 이외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휴식 시간은 물론,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경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감시·단속 이외 청소·주차·분리수거, 택배 보관 등입니다.

감시·단속 업무만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경비노동자들도 이제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식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지금처럼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에 너와 나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삶을 함께하는 노동자 모두의 건강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일하다 쓰러지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서시는
모든 분의 말씀을 꼼꼼히 적어가며 가슴으로 새기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출퇴근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터를 꾸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희망을 품고 뚜벅뚜벅 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경비노동은 대부분 24시간 동안 가동되어 구조적으로 장시간, 야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비노동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택배, 주차 관리, 청소 및 분리수거, 민원 대응 및 감정노동 등 업무 하중이 높고, 과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특히 지난 해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과 갑질로 사망에 이른 경비노동자 사건으로 경비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대신 위탁과 용역 등으로 고용해 공동주택별로 배치하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사용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점이 문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감시적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라는 전근대적 교대제가 탄생되어 지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 야간노동과 고용불안, 갑질 등의 문제가 결국 재해로 나타는 과로 관련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6년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경비노동자가 과로질환으로 신청하여 승인, 불승인 된 사건들을 분석해보고 이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용혜인 의원님과 공동주최로 힘을 보태주신 우원식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김현주 교수님과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해 주신 유상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함께 해 주실 남우근 노무사님, 김형렬 교수님, 김은풍 노무사님과 김승희 사무관님께도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먼저, ‘경비노동자 과로사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고 경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토론자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위해 경비노동자 과로사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노동자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환경 미화, 택배 정리 등 본래 업무인 경비와 무관한 업무를 많이 떠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계속 부과하면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공개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은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시달리며 고위험 질환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한 생명과 우리 사회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될 경비노동자의 실상과 대안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토론회의 논의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문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발표**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망 (뇌·심혈관계 질병) 사건 분석 보고서 (요약본)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필)

I. 연구사업 개요

- KBS탐사보도국(이하 'KBS'),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이하 '의원실'), 노무법인필(이하 '노무법인')은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 ~2020년까지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업무상 사망(이하 '과로사')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으로 분류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2015 ~2020년 업무상 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요약본(항목별 제출 자료) 중 관리소장, 시설관리, 청소, 주차원, 조경원 등 다른 직종을 제외하고 경비노동자에 해당하는 180건(재심 14건 포함)을 분석하였다.

II.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경위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사고로 인해 발병된 “사고성 질병”과 노동계약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 특정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판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의 법률판단을 함에 있어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며, 그 인정이 의학적 소견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학적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정도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내재하는 각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들 유해요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업무수행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병원인과의 인과관계 및 그 발병원인과 결과로서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로 보고 있다.

- (2008.7.~2013.7) 산재법 및 하위 법령은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은 1982년 노동부 예규로 마련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08. 7. 1.부터 개정·시행된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과거에 시행규칙에 있었던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인정기준’ 등을 삭제하였다. 단기간 업무상 부담과 만성 과중업무의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종래 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던 방식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인 지역본부별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¹⁾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 (2013. 7.~2017. 12.) 2013. 7. 1.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 속에서 직업성 암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이 추가됨으로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되었다. 특히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만성과로 판단 기준에 업무시간 기준을 도입하였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아지는 점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불규칙적인 근무형태, 고온·저온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등을 말하며, 특히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서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량·업무강도·책임 등 업무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2018. 1. 1.~현재) 2017. 12.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제시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용노동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만성과로 기준의 다양화, 근로시간에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구체화, 야간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할증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개인 질병이라는 확실한 반대근거가 없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추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요령과 기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8.1.1.)」에 명시하였다.

<표II-1> 고용노동부 고시 :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비고
제2009-38호	<p>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u>“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u>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u>“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u>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p> <p>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u>“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u>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p> <p>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u>“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u> 및 <u>“만성적인 중한 업무”</u>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시행일 2009. 09.25.
	<p>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u>“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u></p>	시행일 2013. 07.01

<p>제2013-32호</p>	<p>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p> <p>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p> <p>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p> <p>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로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p>	
<p>제2017-117호</p>	<p>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p>	<p>시행일 2018. 01.01.</p>

	<p>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p> <p>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p> <p>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p>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p>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p> <p>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요령과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

동부 고시의 개정에 맞춰 2013. 7. 31.과 2018. 1. 1. 지침을 개정하였다. 현재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2018. 1. 1. 개정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중 경비노동자에 대한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3. 7. 1. 지침은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라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공단은 2018. 1. 1. 지침을 개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종별 판단요령 :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를 명시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실무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뿐 아니라 아파트 외 주거지(빌라, 오피스텔 등), 공공기관(학교, 연구소 등), 상업시설(상가, 건물, 공장, 신축건설현장 등)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지침의 판단요령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표II-2> 근로복지공단 지침 :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판단 요령

구분	직종별 판단요령(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성과로)	(1)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아파트 주민과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이후 사태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충격만을 기준으로 판단 ○ 육체적으로 무리 힘의 급격한 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예 - 겨울철의 제설작업 - 가을철 낙엽치우기 등 청소 - 봄과 여름철의 화단과 정원수 가꾸기 - 벽돌쌓기 등 시설물 수리업무 - 택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겨울철 야간 순찰업무 수행시의 한랭의 정도, 경비실의 연속작업 시간 중의 난방의 상황 등
단기 과로	(2)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는 강도가 30% 이상 증가 여부와 복합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택배중개업무 - 가을의 낙엽청소 및 겨울철의 제설작업 - 봄여름가을의 화단 가꾸기와 정원수 가꾸기 -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의 직접 운반업무 - 주차관리를 위하여 정차된 차량 밀기 등
만성 과로	(3) 만성적인 과중 업무 ○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p>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p>○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어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판단</p> <p>○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판단</p> <p>○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p>
--	---

III.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인정률 변화

1.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2015~2020.6.)

○ 근로복지공단이 2020. 12. 22.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사건)²⁾ 산재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과 로 사	신청	36	36	26	33	46	45	222
	인정	10	5	6	21	22	31	95
	인정률	27.8%	13.9%	23.1%	63.6%	47.8%	68.90%	(전체평균)
		(평균) 21.4%			(평균) 59.7%			42.8%

* 통계기준

- 근로복지공단 최초 1회차 결재건 기준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또는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중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자료
- 과로사는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건

<제공> 용혜인 의원실(2020. 12.)

○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노동자'로 분류하여 제출한 현황은 경비노동자 외 관리소장, 청소, 시설 관리, 주차원, 조경원 등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현황은 이번 연구를

2)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과로사'로 표기하였다.

통해 분석한 업무상질병판정서 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5~2017년까지 신청건 수 98건 중 승인건 수 21건으로 승인률 21.4%이며, 2018~2020.6월까지 신청건 수 124건 중 승인건 수 74건으로 승인률 59.7%이다. 2015~2020년까지 평균 승인률은 42.8%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8. 1. 1.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후 승인률은 2.79배 증가하였다.
- 신청건 수는 2015년~2017년까지 98건, 2018~2020년까지 124건으로 1.27배 증가하였다.

2. (업무상질병판정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2015~2020년)

- 근로복지공단이 2020. 11. 24. 및 2021. 1. 22.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230건 (판정서 미제공 1건, 자살 3건 제외) 중 다른 직종을 제외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을 분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인정률 기준은 '최초 1회차 결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심의 사건(14건, 2018년 13건, 2019년 1건)의 인정률과 구분하여 166건의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분석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서를 통해 미확인되는 사항 및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2015~2020년까지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재해조사서를 요청하였고, 2020. 12. 22. 및 2021. 1. 22.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³⁾

<표Ⅲ-2>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분석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과 로 사	사건	30	21	18	30	32	35	166
	인정	9	5	4	21	17	25	81
	인정률	30.0	23.8	22.2	70.0	53.1	71.43	(전체평균) 48.80
		(평균) 24.6%			(평균) 64.95%			

- 2015~2017년까지 사건 수 69건 중 승인건 수 18건으로 인정률 24.6%이며, 2018~2020년까지 사건 수 97건 중 승인건 수 63건으로 인정률은 64.95%이며, 2015~2020년까지 평균 승인률은 48.80%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평균 인정률은 24.6%, 2018~2020년 평균 인정률은 64.95%로 분석되었다. 2018. 1. 1.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후 2.64배 인정률이 증가하였다.
- 신청건 수는 2015년~2017년까지 69건, 2018~2020.6월까지 97건으로 1.41배 증가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사

3)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실에서 요청한 필요 항목에 한하여 제출하였다.

건) 산재현황>의 경우 업종분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경비노동자 외 다른 직종(관리소장, 시설관리, 조정, 청소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의 신청건 수, 인정률은 본 연구사업을 통해 분석한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현황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경우 2018년 이후 신청건수는 1.41배 증가하였고, 인정률은 2018년 이후 2.6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2019. 11.30.)」에서 “전체 신청건의 직종별 빈도는 관리자 525건(1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1건(6.4%), 사무 종사자 157건(5.2%), 서비스 종사자 216건(7.2%), 판매 종사자 90건(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건(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1건(1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76건(15.9%), 단순 노무 종사자 948건(31.7%), 특수고용 노동자 17건(0.6%)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세부 직종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신청건수는 총 157건, 승인률은 61.8%로, 전체 신청건수의 승인률인 41.3%에 비하면, ‘경비원 및 검표원’의 승인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기별 승인률은 <표 V-26>과 같음”이라고 분석하였다.

<표Ⅲ-3> 2018.1.~2019.6. 뇌심혈관계질병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 승인률

<표 V-26>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반기별 승인률

반기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2018년 상반기	45	25	55.6
2018년 하반기	53	35	66.0
2019년 상반기	59	37	62.7
전체	157	97	61.8

3. 경비노동자 과로사 재신청 사건 분석 현황(2018~2019)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인정률은 ‘최초 1회차 결재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8. 1. 1. 뇌·심혈관계질병 과로 인정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이전 3년간 불승인 사건을 대상으로 재신청⁴⁾을 통해 재심의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경비노동자의 재신청 사건은 14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석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보도자료)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2018.4.16.) 참조

<표Ⅲ-4> 2018~2019년 재신청 사건 분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재 신 청	(최초)사건	1	10	3			14
	인정	0	0	0			0.00
	재신청				13	1	14
	인정				10	1	11
	인정률				76.92%	100%	78.57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뇌·심혈관계 질병 과로 인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3건, 2019년 1건을 재심의하였으며, 2018년 13건 중 10건 인정되어 인정률 76.92%, 2019년 1건 중 1건 인정되어 인정률 100%이며, 평균 78.57%의 인정률을 보였다.
- 2015~2017년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던 사건이 2018년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개정 후 인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에 대한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경비노동자의 만성과로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적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 인정률⁵⁾과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비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u>경비업무</u>

- 근로복지공단의 <2015~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5)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6~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종합

<표Ⅲ-5> 2015~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인정률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계	9,781	4,387	44.9	9,479	4,182	44.1	8,715	4,607	52.9
뇌심혈관질병	1,970	462	23.5	1,911	421	22.0	1,809	589	32.6
근골격계질병	5,833	3,155	54.1	5,345	2,885	54.0	5,201	3,199	61.5
기타질병	1,978	770	38.9	2,223	876	39.4	1,705	819	48.0
(COPD)	669	303	45.3	1,177	456	38.7	739	327	44.2
(레이노증후군)	480	171	35.6	129	13	10.1	59	10	16.9
(직업성 암)	188	91	48.9	228	134	58.8	303	190	62.7
(정신질병)	150	46	30.7	169	70	41.4	186	104	55.9
(세균성질병)	72	36	50.0	109	56	51.4	75	50	66.7
(간질병)	53	18	34.0	52	25	48.1	14	3	21.4
(기타)	366	105	28.7	359	122	34.0	329	135	41.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계	10,006	6,306	63.0	14,206	9,173	64.6	14,422	9,085	63.0
뇌심혈관질병	2,241	925	41.3	3,077	1,265	41.1	2,429	929	38.2
근골격계질병	6,375	4,416	70.0	9,524	6,844	71.9	10,000	6,827	68.3
기타질병	1,390	920	66.2	1,605	1,064	66.3	-	-	-
(COPD)	338	308	91.1	319	278	87.1	-	-	-
(레이노증후군)	35	10	28.6	2	1	50.0	-	-	-
(직업성 암)	302	220	72.8	386	286	74.1	477	335	70.2
(정신질병)	226	166	73.5	325	225	69.2	558	375	67.2
(세균성질병)	81	51	63.0	75	52	69.3	54	40	74.1
(간질병)	22	4	18.2	17	3	17.6	27	12	44.4
(기타)	386	161	41.7	481	219	45.5	877	567	64.7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 수는 2015년 9,781건에서 2016년 9,479건, 2017년 8,71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0,006건, 2019년 14,206건, 2020년 14,42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심의건 수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체 인정률은 2015년 44.9%, 2016년 44.1%, 2017년 52.9%, 2018년 63.0%, 2019년 64.6%, 2020년 63%로 상승하였다. 뇌심혈관 질병의 인정률은 2015년 23.5%, 2016년 22.0%, 2017년 32.6%이었으며,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로 분석되었다.

○ 2015~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건 수,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판정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정률을 분석하면, 2018년 이후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개정 후 전체적으로 인정률

이 상승한 경향을 보이며,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뇌심혈관질환 전체 인정률 대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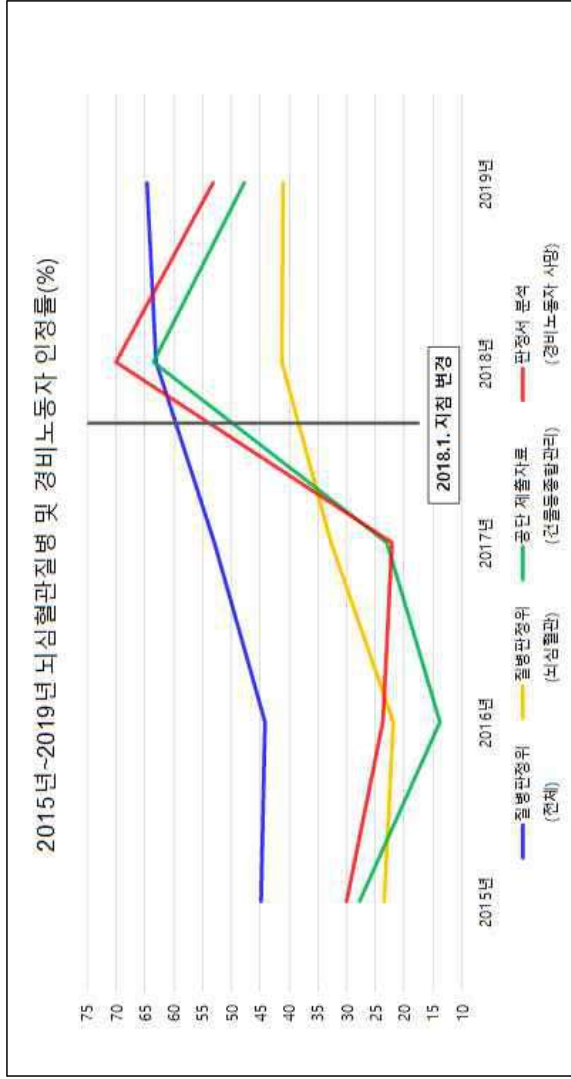
- 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체 판정건 수는 2018년에 비해 14,206건으로 전년 동기 10,006건 대비 4,200건(42.0%) 증가하였고, 인정률도 64.6%로 전년 동기 63.0% 대비 1.6%p 상승하였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3,077건으로 836건(37.3%) 증가, 인정률 41.1%(△0.2%p)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 판정건 수, 인정률,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질병 사건과 사망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전체 인정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환 인정률,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질환(사망) 인정률,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인정률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15~2017년까지 뇌심혈관계질환 인정률은 23.5%, 22.0%, 32.6%로 평균 29.9%였던 반면,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로 평균 40.20%를 보여 2018년 이후 1.34배 증가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 인정률은 2.64배 상승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부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6> 2015~2019년 뇌심혈관질병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단위 : 사건수, %)

뇌심혈관 질병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질병판정위(전체)	9,781	4,387	44.9	9,479	4,182	44.1	8,715	4,607	52.9	10,006	6,306	63.0	14,206	9,173	64.6
질병판정위(뇌심)	1,970	462	23.5	1,911	421	22.0	1,809	589	32.6	2,241	925	41.3	3,077	1,265	41.1
공단 제출자료(건물등)	36	10	27.8	36	5	13.9	26	6	23.1	33	21	63.6	46	22	47.8
판정서 분석(경비)	30	9	30.0	21	5	23.8	18	4	22.2	30	21	70.0	32	17	53.1

<그림Ⅲ-1> 2015~2019년 뇌심혈관질병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5.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재해자, 사망자 발생현황 분석

- 고용노동부의 2015~2020.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질병 재해자 수 및 질병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60세 이상의 질병 재해자 수 및 질병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 9월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질병 재해자 수는 5,335명으로 44.1%, 질병 사망자 수는 453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은 모두 남성이며, 180건을 기준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건 92건 중 60세 미만 인정 사건은 4건⁶⁾으로 4.35%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비율은 95.65%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질병 사망자 현황 중 기타의 사업 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질병 사망자 수와 60세 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비교하여 전체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현황(2015~2019)

가. (규모별, 업종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 재해 발생현황

- 2015~2019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하면, 뇌심혈관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뇌심혈관 사망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⁷⁾은 2015년 3.07%(293명 중 9명), 2016년 1.67%(287명 중 5명), 2017년 1.13%(354명 중 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4.60%(457명 중 21명), 2019년 3.38%(503명 중 17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변화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2018년 뇌심혈관 과로 인정기준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뇌심혈관 사망자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규모별 현황을 분석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0.0%, 2016년 57.16%, 2017년 34.62%, 2018년 50.0%, 2019년 53.63%를 차지하였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 사망망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60세 미만 인정 사건 : 2015년 52세 1건, 2018년 57세 1건, 2019년 59세 1건, 2020년 58세 1건

7)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수는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Ⅲ-7> 고용노동부 뇌·심혈관 사망 재해, 업종별·규모별 발생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 이상
2015	뇌심 질병 (5.28%)	총계	341 (100)	88 25.81	42 12.32	79 23.17	29 8.50	31 9.09	42 12.32	10 2.93	5 1.47	15 4.40	
		건물등	18	6	5	4	3	0	0	0	0	0	
		종합관리	(100)	33.33	27.78	22.22 ⁸⁾	16.67	0.00	0.00	0.00	0.00	0.00	
	뇌심 사망 (10.24%)	총계	293 (100)	61 20.82	41 13.99	50 17.06	37 12.63	31 10.58	39 13.31	10 3.41	8 2.73	16 5.46	
		건물등	30	9	9	4	3	4	0	1	0	0	
		종합관리	(100)	30.00	30.00	13.33	10.00	13.33	0.00	3.34	0.00	0.00	
2016	뇌심 질병 (3.14%)	총계	287 (100)	69 24.04	53 18.47	32 11.15	20 6.97	30 10.45	18 6.27	34 11.85	12 4.18	7 2.44	12 4.18
		건물등	9	4	3	1	1	0	0	0	0	0	
		종합관리	(100)	44.45	33.33	11.11	11.11	0.00	0.00	0.00	0.00	0.00	
	뇌심 사망 (7.00%)	총계	300 (100)	62 20.67	46 15.33	37 12.33	37 12.33	27 9.00	28 9.33	29 9.67	12 4.00	6 2.00	16 5.33
		건물등	21	9	3	2	2	1	1	2	0	0	1
		종합관리	(100)	42.87	14.29	9.52	9.52	4.76	4.76	9.52	0.00	0.00	4.76
2017	뇌심 질병 (7.60%)	총계	421 (100)	107 25.42	62 14.73	71 16.86	22 5.23	50 11.88	37 8.79	38 9.03	14 3.33	5 1.19	15 3.56
		건물등	32	8	9	8	0	3	2	2	0	0	0
		종합관리	(100)	25.00	28.13	25.00	0.00	9.37	6.25	6.25	0.00	0.00	0.00
	뇌심 사망 (7.34%)	총계	354 (100)	69 19.49	46 12.99	47 13.28	26 7.34	28 7.91	42 11.86	50 14.21	16 4.52	11 3.11	19 5.37
		건물등	26	3	6	6	2	3	2	2	1	1	0
		종합관리	(100)	11.54	23.08	23.08	7.69	11.54	7.69	7.69	3.85	3.85	0.00
2018	뇌심 질병 (11.93%)	총계	696 (100)	166 23.85	115 16.52	114 16.38	50 7.18	57 8.19	77 11.06	63 9.05	20 2.87	15 2.16	19 2.73
		건물등	83	24	24	26	4	2	2	1	0	0	0
		종합관리	(100)	28.92	28.92	31.33	4.82	2.41	2.41	1.19	0.00	0.00	0.00
	뇌심 사망 (10.50%)	총계	457 (100)	81 17.72	58 12.69	69 15.10	42 9.19	48 10.50	43 9.41	68 14.88	14 3.06	15 3.28	19 4.16
		건물등	48	9	15	14	5	3	0	0	2	0	0
		종합관리	(100)	18.75	31.25	29.17	10.42	6.25	0.00	0.00	4.16	0.00	0.00
2019	뇌심 질병 (12.43%)	총계	957 (100)	261 27.27	122 12.75	128 13.38	80 8.36	70 7.31	99 10.34	136 14.21	23 2.40	20 2.09	18 1.88
		건물등	119	38	29	24	10	12	4	1	0	1	0
		종합관리	(100)	31.93	24.37	20.17	8.40	10.08	3.37	0.84	0.00	0.84	0.00
	뇌심 사망 (13.72%)	총계	503 (100)	122 24.25	68 13.52	67 13.32	34 6.76	45 8.95	57 11.33	63 12.52	14 2.78	18 3.58	15 2.98
		건물등	69	19	18	15	7	6	4	0	0	0	0
		종합관리	(100)	27.54	26.09	21.73	10.14	8.70	5.80	0.00	0.00	0.00	0.00

- 2015~2019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뇌심혈관 사망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24%, 2016년 7.0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2019년 평균 12.11%로 분석되었다.

<표Ⅲ-8> 뇌심혈관 질병 건물등종합관리사업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구분	전체 질병사망 및 뇌심혈관 사망재해				건물등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재해		경비노동자 사망재해			전체 뇌심사망자 경비노동자 과로사	
	전체 사망자	뇌심 사망자	뇌심 비율	전년대비 증감	사망자	건물등 업종비율	인정 사건	경비 비율	전년대비 증감	비율	전년대비 증감
2015	855	293	34.27	-	30	10.24	9	30.00	-	3.07	-
2016	808	300	37.13	2.89	21	7.00	5	23.81	△6.19	1.67	△1.40
2017	993	354	35.65	△1.48	26	7.34	4	15.38	△8.34	1.13	△0.54
2018	1,171	457	39.03	3.38	48	10.50	21	43.75	28.37	4.60	3.47
2019	1,165	503	43.18	4.15	69	13.72	17	53.10	9.35	3.38	△1.22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 2016년 23.81%, 2017년 15.38%, 2018년 43.75%, 2019년 53.10%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23.06%에 불과하였으나, 2018~2019년 평균 48.43%로 분석되었다. 전체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변화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2018년 뇌심혈관 과로 인정기준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2) (연령별, 성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 발생현황

-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인정 사건 92건 중 60세 미만 4건, 60~64세 이하 18건, 65~69세 이하 36건, 70~74세 이하 23건, 75~79세 이하 9건, 80세 이상 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로 분석되었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표Ⅲ-9> 업무상질병판정서 경비노동자 연령별 인정 현황

구분	60세 미만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합계
인정	4	18	36	23	9	2	92
비율	4.35	19.57	39.13	25.00	9.78	2.17	100

8) 2015년의 규모별 현황을 10~29인으로 구분하였으며, 2016년 이후 10~19인, 20~29인으로 구분하였다.

<표Ⅲ-10>고용노동부 연령별, 성별 뇌심혈관 질병, 사망재해 발생 현황

연도	구분	총계	18세 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5	뇌심 질병	총계	341 (100)	0 0.00	1 0.29	3 0.88	11 3.23	27 7.92	41 12.02	60 17.60	76 22.29	68 19.94	54 15.84		
		(남)	296 (100)	0 0.00	1 0.34	2 0.68	11 3.72	24 8.11	37 12.50	55 18.58	65 21.96	60 20.27	41 13.84		
		86.80%	(여)	45 (100)	0 0.00	0 0.00	1 2.22	0 0.00	3 6.67	4 8.89	5 11.11	11 24.44	8 17.78	13 28.89	
	13.20%	뇌심 사망	총계	293 (100)	0 0.00	1 0.34	4 1.37	12 4.10	18 6.14	38 12.97	52 17.75	63 21.50	46 15.70	59 20.14	
	(남)		274 (100)	0 0.00	1 0.36	4 1.46	11 4.01	18 6.57	36 13.14	47 17.15	60 21.90	41 14.96	56 20.45		
	93.52%		(여)	19 (100)	0 0.00	0 0.00	0 0.00	1 5.27	0 0.00	2 10.53	5 26.32	3 15.78	5 26.32	3 15.78	
	6.48%	2016	뇌심 질병	총계	287 (100)	0 0.00	1 0.35	2 0.70	9 3.14	24 8.36	30 10.45	52 18.12	63 21.95	51 17.77	55 19.16
	(남)			249 (100)	0 0.00	1 0.40	2 0.80	8 3.21	23 9.24	28 11.24	46 18.47	55 22.11	40 16.06	46 18.47	
	86.76%			(여)	38 (100)	0 0.00	0 0.00	0 0.00	1 2.63	1 2.63	2 5.26	6 15.79	8 21.05	11 28.95	9 23.69
13.24%	뇌심 사망		총계	300 (100)	0 0.00	0 0.00	3 1.00	7 2.33	28 9.33	47 15.67	46 15.33	59 19.67	45 15.00	65 21.67	
(남)			271 (100)	0 0.00	0 0.00	3 1.11	7 2.58	25 9.23	44 16.24	42 15.50	55 20.30	41 15.13	54 19.91		
90.33%			(여)	29 (1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34	3 10.34	4 13.79	4 13.79	4 13.79	11 37.95	
9.67%	2017		뇌심 질병	총계 ⁹⁾	421 (100)	0 0.00	0 0.00	5 1.19	9 2.14	27 6.41	40 9.50	68 16.15	83 19.71	93 22.09	96 22.80
총계				354 (100)	0 0.00	0 0.00	4 1.13	7 1.98	32 9.04	52 14.69	53 14.97	64 18.08	62 17.51	80 22.60	
91.24%			뇌심 사망	(남)	323 (100)	0 0.00	0 0.00	3 0.93	7 2.17	31 9.60	49 15.17	50 15.48	59 18.27	55 17.03	69 21.35
		(여)		30 (100)	0 0.00	0 0.00	1 3.33	0 0.00	1 3.33	1 10.00	3 10.00	3 16.67	7 23.33	11 33.34	
		8.76%		2018	뇌심 질병	총계	696 (100)	0 0.00	0 0.00	6 0.86	14 2.01	24 3.45	60 8.62	91 13.07	145 20.83
(남)		600 (100)	0 0.00			0 0.00	4 0.67	12 2.00	22 3.67	53 8.83	78 13.00	120 20.00	112 18.67	199 33.16	
86.21%		(여)	96 (100)			0 0.00	0 0.00	2 2.08	2 2.08	2 2.08	7 7.30	13 13.54	25 26.04	20 20.84	25 26.04
13.79%		뇌심 사망	총계		457 (100)	0 0.00	0 0.00	5 1.09	10 2.19	28 6.13	59 12.91	64 14.00	77 16.85	99 21.66	115 25.16
(남)			427 (100)		0 0.00	0 0.00	2 0.47	10 2.34	27 6.30	59 13.82	59 13.82	71 16.63	89 20.84	110 25.78	
93.44%	(여)		30 (100)		0 0.00	0 0.00	3 10.0	0 0.00	1 3.33	0 0.00	5 16.67	6 20.00	10 33.33	5 16.67	
6.56%	2019	뇌심 질병	총계		957 (100)	0 0.00	4 0.42	7 0.73	18 1.88	27 2.82	89 9.30	114 11.91	162 16.93	189 19.75	347 36.26
(남)			846 (100)		0 0.00	3 0.35	6 0.71	14 1.65	26 3.07	78 9.22	102 12.06	138 16.31	171 20.21	308 36.42	
88.40%															

뇌심 사망	(여)	111	0	1	1	4	1	11	12	24	18	39
	11.60%	(100)	0.00	0.90	0.90	3.60	0.90	9.91	10.81	21.62	16.22	35.14
	총계	503	0	2	4	14	30	39	77	78	90	169
	(남)	471	0	2	4	13	26	39	72	73	82	160
	93.64%	(100)	0.00	0.42	0.85	2.76	5.52	8.28	15.29	15.50	17.41	33.97
(여)	32	0	0	0	1	4	0	5	5	8	9	
6.36%	(100)	0.00	0.00	0.00	3.13	12.50	0.00	15.63	15.63	25.00	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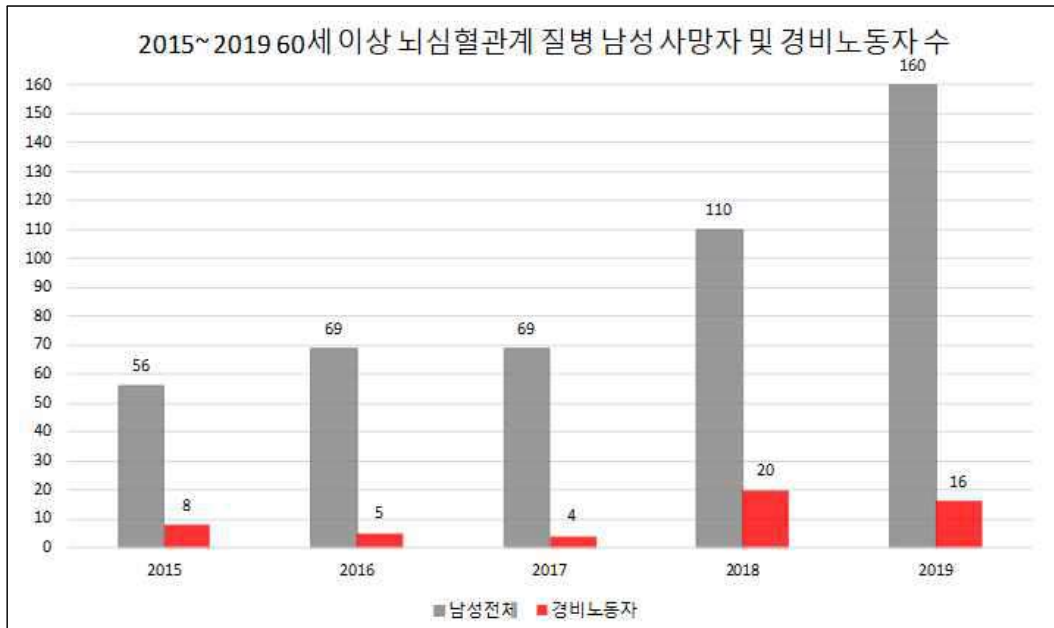
- 업무상질병판정서 인정사건 92건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한 60세 이상 남성노동자가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45%, 2016년 19.91%, 2017년 21.35%, 2018년 25.78%, 2019년 33.97%로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0대 이상 남성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29%, 2016년 7.25%, 2017년 5.80%이며, 2015~2017년 평균 9.11%를 차지하는 반면, 2018년 18.18%, 2019년 10.00%이며, 2018~2019년 평균 14.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뇌심혈관 질병 사망 사건 중 60대 이상 남성 경비노동자가 14.09% 가량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Ⅲ-11>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구분	전체 뇌심혈관 사망재해			(남성)연령 구분			경비노동자 인정 사건			
	전체 사망자	남성	여성	50~54세	55~59세	60세이상	50~54세	55~59세	60세이상	60세이상 경비비중 10)
2015	293	274	19	60	41	56	1	0	8	8
	(100)	86.80	13.20	21.90	14.96	20.45	11.11	0	88.89	14.29
2016	300	271	29	59	55	69	0	0	5	5
	(100)	90.33	9.67	18.27	17.03	21.35	0.00	0.00	100	7.25
2017	354	320	30	59	55	69	0	0	4	4
	(100)	91.24	8.76	18.27	17.03	21.35	0.00	0.00	100	5.80
2018	457	427	30	71	89	110	0	1	20	20
	(100)	93.44	6.56	16.63	20.84	25.78	0.00	5.00	95.00	18.18
2019	503	471	32	73	82	160	0	1	16	16
	(100)	93.64	6.36	15.50	17.41	33.97	0.00	6.25	93.75	10.00

9)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3. 뇌심혈관 요양재해 현황 중 나. 연령 및 성별 항목에서 성별 미표기
 10) 연도별 60세 이상 경비노동자 사망자 수/ 연도별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그림Ⅲ-2>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3)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자는 경비노동자가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경우 2015년 10.34%, 2016년 7.00%, 2017년 7.34%이며, 2015~2017년 평균 8.2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0.50%, 2019년 13.72%이며, 2018~2019년 평균 12.1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인정 사건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세부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5~2017년 사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3순위, 4순위를 차지한 반면, 2018년 1순위, 2019년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정률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12>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구분	총계	광업 11)	제조업 1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3)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4)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 ¹⁵⁾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15	293	3	86	1	36	37	1	0	2	5	92	30
	(100)	1.02	29.35	0.34	12.29	12.63	0.34	0.00	0.68	1.71	31.4	10.24
2016	300	1	83	3	33	37	2	0	1	4	115	21
	(100)	0.33	27.67	1.00	11.00	12.33	0.67	0.00	0.33	1.34	38.33	7.00

2017	354	3	122	1	33	45	2	0	0	10	112	26
	(100)	0.85	34.47	0.28	9.32	12.72	0.56	0.00	0.00	2.82	31.64	7.34
2018	457	3	125	2	46	65	1	0	3	6	158	48
	(100)	0.66	27.35	0.44	10.07	14.22	0.22	0.00	0.66	1.31	34.57	10.50
2019	503	0	133	3	47	84	0	0	2	6	159	69
	(100)	0.00	26.44	0.60	9.34	16.70	0.00	0.00	0.40	1.19	31.61	13.72

<표Ⅲ-13> (세부 업종별/연도별) 뇌심혈관 사망재해 업종별 순위

구분	1	2	3	4	5
2015	건설업	기타의 각종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여객자동차 운수업
	36(12.29%)	32(10.92%)	30(10.24%)	25(8.53%)	24(8.19%)
2016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전문기술서비스업
	41(13.67%)	36(12.00%)	33(11.00%)	21(7.00%)	18(6.00%)
2017	기타의 각종사업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건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54(15.25%)	34(9.60%)	33(9.32%)	26(7.34%)	24(6.78%)
2018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기계기구·비금속광 물제품·금속제품제 조업또는금속가공업
	48(10.50%)	48(10.50%)	46(10.07)	42(9.19%)	41(8.97%)
2019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육상 및 수상 운수업	기계기구·비금속광 물제품·금속제품제 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기타의 각종사업	건설업
	69(13.72%)	69(13.72%)	62(12.33%)	57(11.33%)	47(9.3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을 종합하여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1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광업'은 석탄광업 및 석회석·비금속광업및기타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제조업'은 식료품제조업,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유리제조업, 도자기·기타요제품·시멘트제조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도금업,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모터사이클수리업, 수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은 세부 업종분류를 하지 않았다.
-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청고업, 통신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기타의 사업'은 건물의종합관리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의 각종사업, 해외파견자,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사업서비스업, 주한미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건물 등의종합관리사업'을 제외한 전체 현황을 합산한 내역이다.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업종별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망자 수를 토대로 사망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을 비교 하면, 2015년 ① 0.16, ② 0.41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대비 2.56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27로 1.69배 높고, 2017년 ① 0.19, ② 0.32로 1.69배 높고, 2018년 ① 0.24, ② 0.58로 2.42배 높고, 2019년 ① 0.27, ② 0.72로 2.6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뇌심혈관질병 발생 현황을 토대로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병 재해자 수, 업종별 재해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자 수를 토대로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9, ② 0.25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대비 1.32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12로 0.75배 높고, 2017년 ① 0.23, ② 0.40로 1.74배 높고, 2018년 ① 0.36, ② 1.00로 2.78배 높고, 2019년 ① 0.51, ② 1.25로 2.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뇌심혈관질병 만인률과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질병 사망 만인율,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의 변화 추이 및 2018년 이후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Ⅲ-3>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비교



〈표Ⅲ-14〉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연도	구분	총계	광고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뇌심혈관 사망인원(사망자수/ 근로자수) ¹⁶⁾
2015	근로자수	17,968,931	11,615	4,161,536	64,244	3,358,813	805,403	86,565	5,357	68,697	705,629	7,975,826	725,246	0.16
	업종 분포	100	0.06	23.16	0.36	18.69	4.48	0.48	0.03	0.38	3.93	44.39	4.04	
	사망자수	293	3	86	1	36	37	1	0	2	5	92	30	
2016	근로자수	18,431,716	11,153	4,236,653	72,940	3,152,859	836,471	93,493	5,591	80,990	761,187	8,406,101	774,278	0.16
	업종비율	100	0.06	22.98	0.40	17.11	4.54	0.50	0.03	0.44	4.13	45.61	4.20	
	사망자수	300	1	83	3	33	37	2	0	1	4	115	21	
2017	근로자수	18,560,142	11,199	4,149,966	75,496	3,046,523	838,006	82,773	5,289	76,033	764,141	8,705,683	805,033	0.19
	업종 분포	100	0.06	22.35	0.41	16.41	4.52	0.45	0.03	0.41	4.12	46.90	4.34	
	사망자수	354	3	122	1	33	45	2	0	0	10	112	26	
2018	근로자수	19,073,438	11,697	4,152,058	76,967	2,943,742	873,232	89,751	5,416	83,540	778,105	9,232,552	826,378	0.24
	업종 분포	100	0.06	21.77	0.40	15.43	4.58	0.47	0.03	0.44	4.08	48.41	4.33	
	사망자수	457	3	125	2	46	65	1	0	3	6	158	48	
2019	근로자수	18,725,160	11,108	4,045,048	76,687	2,487,807	910,585	91,682	5,121	79,482	777,764	9,285,889	953,987	0.27
	업종 분포	100	0.06	21.60	0.41	13.29	4.86	0.49	0.03	0.42	4.15	49.60	5.09	
	사망자수	503	0	133	3	47	84	0	0	2	6	159	69	
	사망자분포	100	0.00	26.44	0.60	9.34	16.70	0.00	0.00	0.40	1.19	31.61	13.72	

16) 사망인원율(‰) =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전체 근로자 수,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근로자 수

IV.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세부 분석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 및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25.0.0”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인정, 불인정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비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및 재해발생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수 및 사업장 유형별 분석, 연도별 업무시간 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정, 불인정 사건 간 업무시간 등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연령

(1) 전체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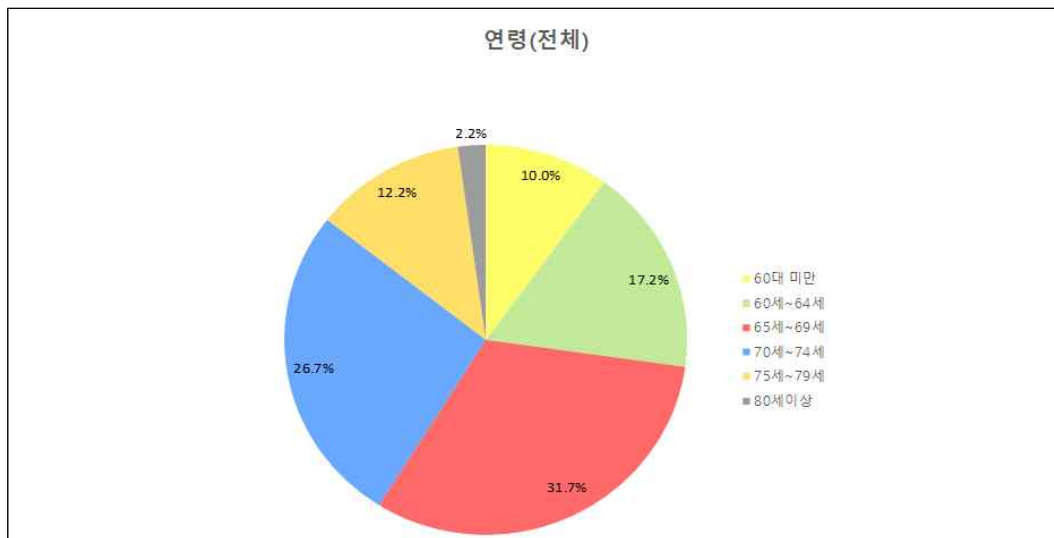
가. 전체 기술통계량

구분	개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80	50	85	67.94	6.356

- 표본의 평균 연령은 67.94세이고, 최소는 50세, 최대는 85세이다.

나. 전체 연령 분포

<그림IV-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표IV-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구분	60세 미만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이상	전체
개수	18	31	57	48	22	4	180
비중	10.0	17.2	31.7	26.7	12.2	2.22	100.0

○ 표본의 연령 중 65세~69세 사이가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인정·불인정 사건 분포

인정· 불인정 연령 분포

연령	인정여부	평균	N	표준편차
인정	인정	68.22	92	5.333
	불인정	67.65	88	7.294
전체	전체	67.94	188	6.356

○ 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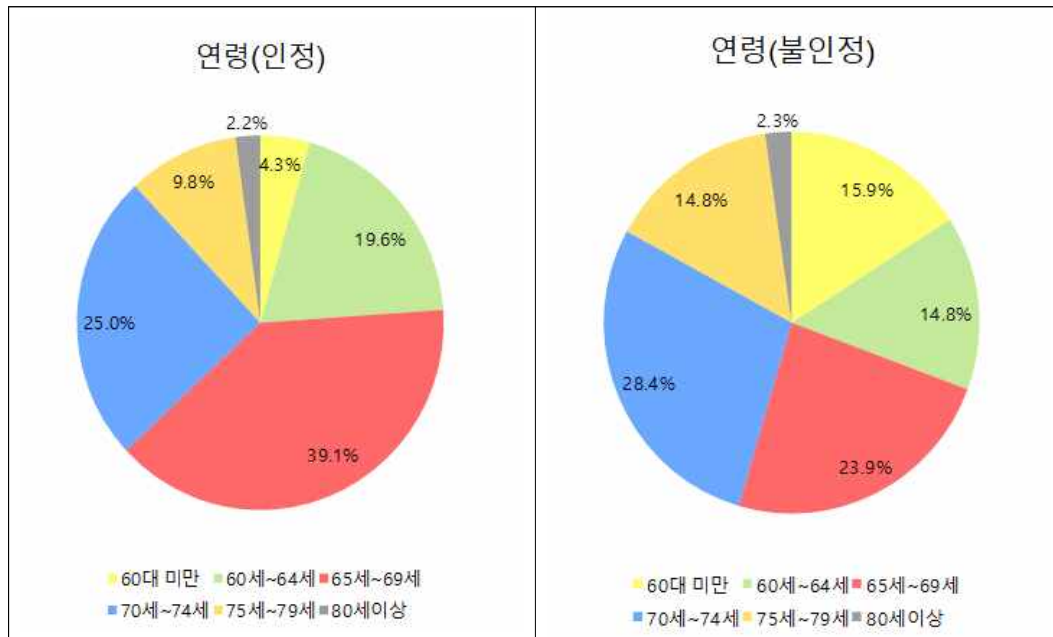
○ 불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7.65세, 최소 50세, 최대 85세

<표IV-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단위: 건)

구분	60세 미만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이상	전체
인정	4	18	36	23	9	2	92
불인정	14	13	21	25	13	2	88

<그림IV-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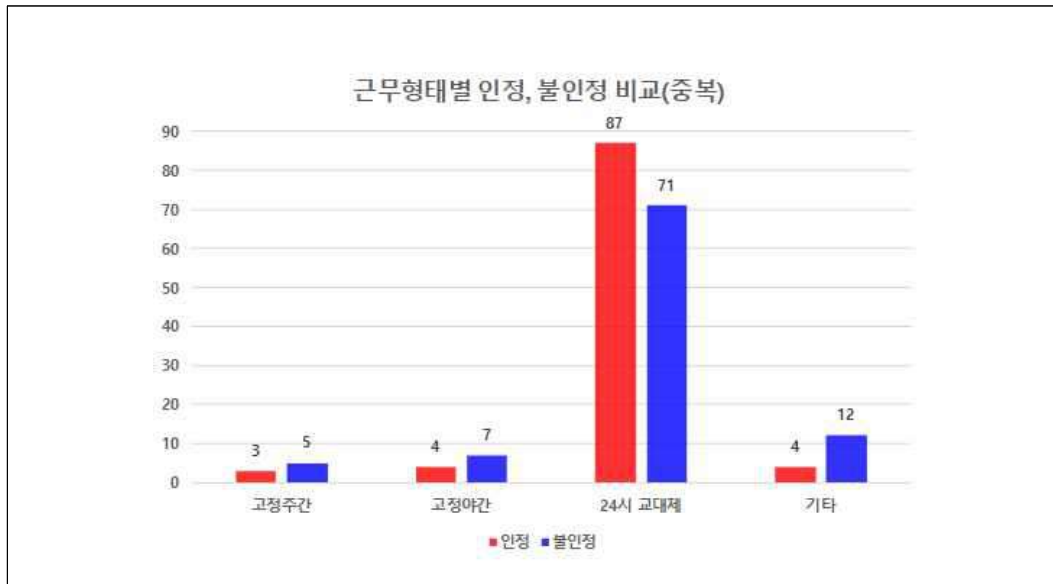
2. 근무형태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 고정저녁·고정야간,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기타로 구분하였고, 근무형태가 혼재된 경우 중복 체크하였다. ‘기타’는 3조2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체크하였다.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를 분석(중복)하면,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81.87%로 가장 많았다. 인정 사건 98건 중 24시간 교대제는 87건(88.78%)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 사건 92건 중 아파트는 71건(77.17%)를 차지하며, 아파트 71건 중 70건(98.59%)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3>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별 발생 현황

구분	인정여부	고정주간	고정야간	24시간	기타	계
근무기간	인정	3	4	87	4	98
		3.06	4.08	88.78	4.08	100
	불인정	5	7	71	12	95
		5.26	7.37	74.74	12.63	100
계	8	11	158	16	193	

<그림IV-3>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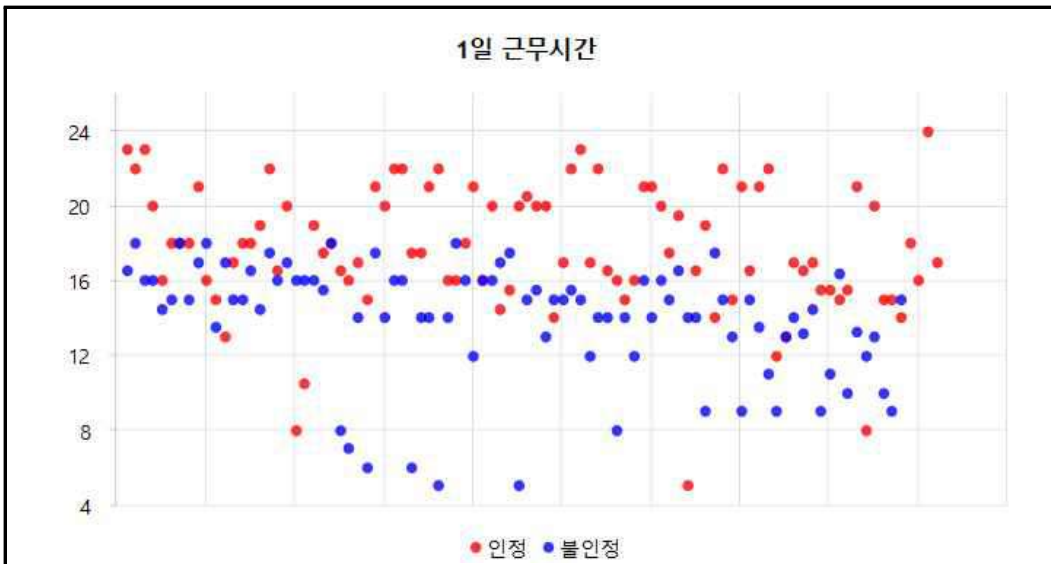
3. 1일 업무시간

- 경비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업무시간, 휴게시간(조식/중식/석식), 수면시간(야간 취침시간)이 각각 차지하는 시간에 따라 인정·불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불인정을 구분하여 1일 업무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구분	인정여부	개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업무시간	인정	92	17.6739	3.46207	.36095
	불인정	88	13.9236	3.15840	.33669

-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 표본의 평균 1일 업무시간은 17.67시간, 불인정된 사건 표본의 1일 업무시간은 평균 13.92시간으로 인정·불인정 사건 간 1일 3.75시간이 차이를 보였다.

<그림IV-4>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업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1일 업무시간이 3.75시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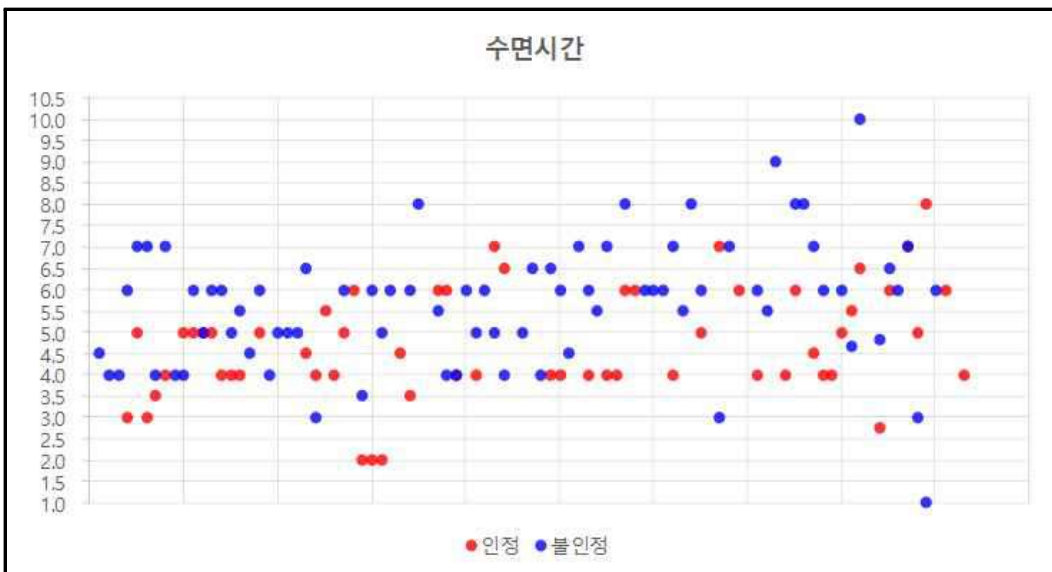
- 2018. 1. 1.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수면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인정여부	개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수면시간	인정	92	2.8859	2.53124	.26390
	불인정	88	4.8205	2.43892	.25999

○ 인정된 사건은 평균 2.89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평균은 4.8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1일 수면시간이 1.93시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5>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수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5. 재해발생 1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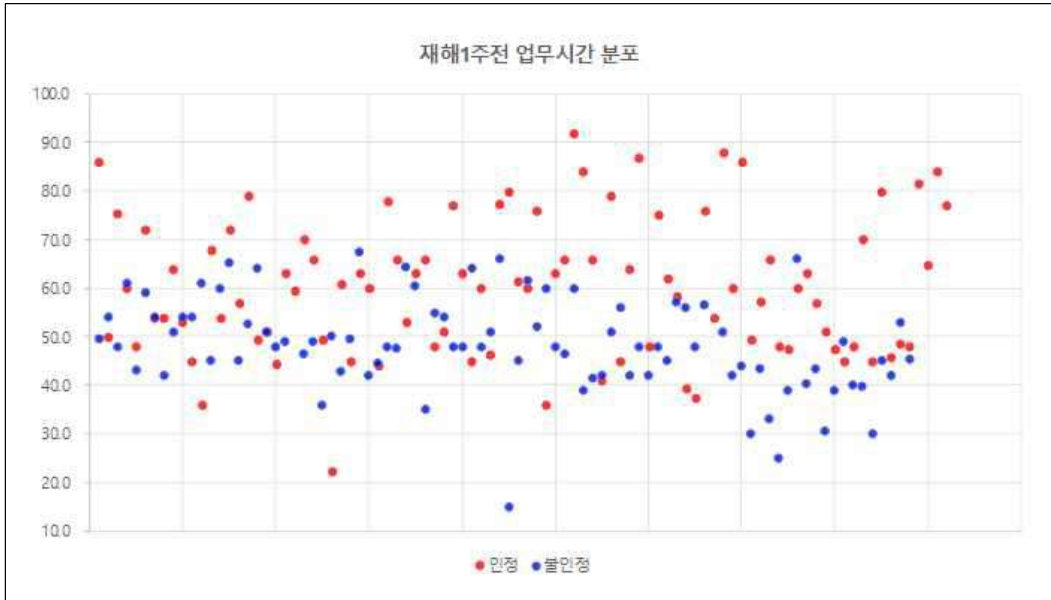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 평균 야간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1주 평균	인정	92	60.2054	14.23621	1.48423
	불인정	86	48.3566	9.68565	1.04443
1주 평균 야간	인정	88	18.1889	9.76310	1.04075
	불인정	73	10.0236	8.33794	.97588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0.21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48.3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주 전 평균업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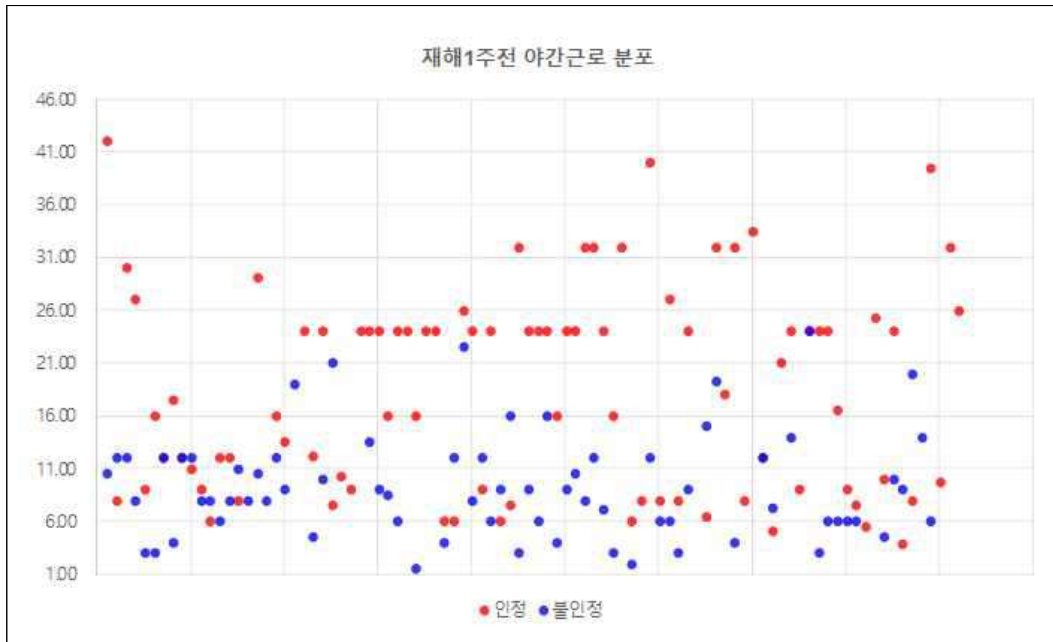
간을 살펴보면, 인정·불인정 사건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t=3.529$, $p<0.05$)하다.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평균 11.85시간 업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6>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8.19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0.0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7>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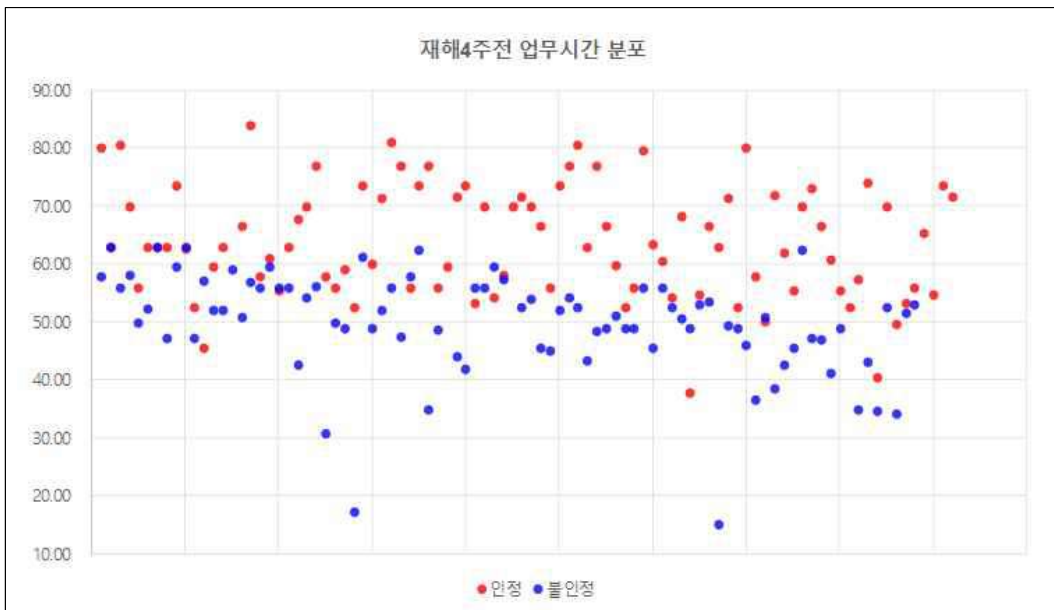
-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불인정 사건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t=7.507$, $p<0.05$)하다.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평균 8.97시간 야간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재해발생 4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4주 평균 업무시간	인정	91	63.9860	9.70070	1.01691
	불인정	85	49.9202	8.85277	.96022
4주 평균 야간시간	인정	86	19.5992	9.35904	1.00921
	불인정	73	9.6218	4.89801	.57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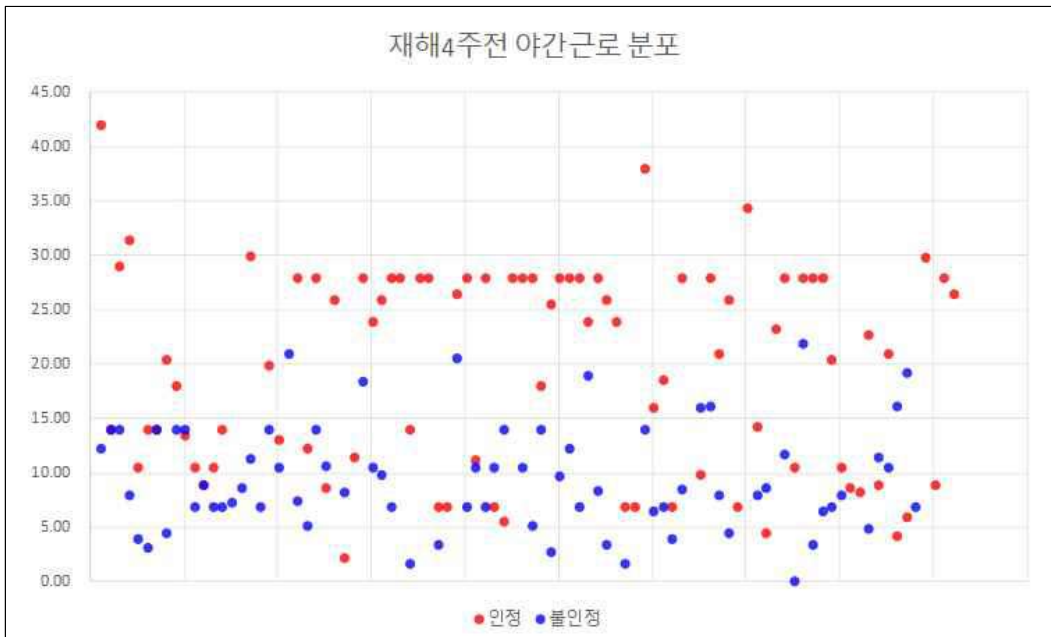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97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49.9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8>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유의($t=10.057$,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된 경우보다 평균 업무시간이 14.07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9.60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9.6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9>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 재해발생 4주 전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유의($t=8.596$,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 경우보다 야간시간이 9.98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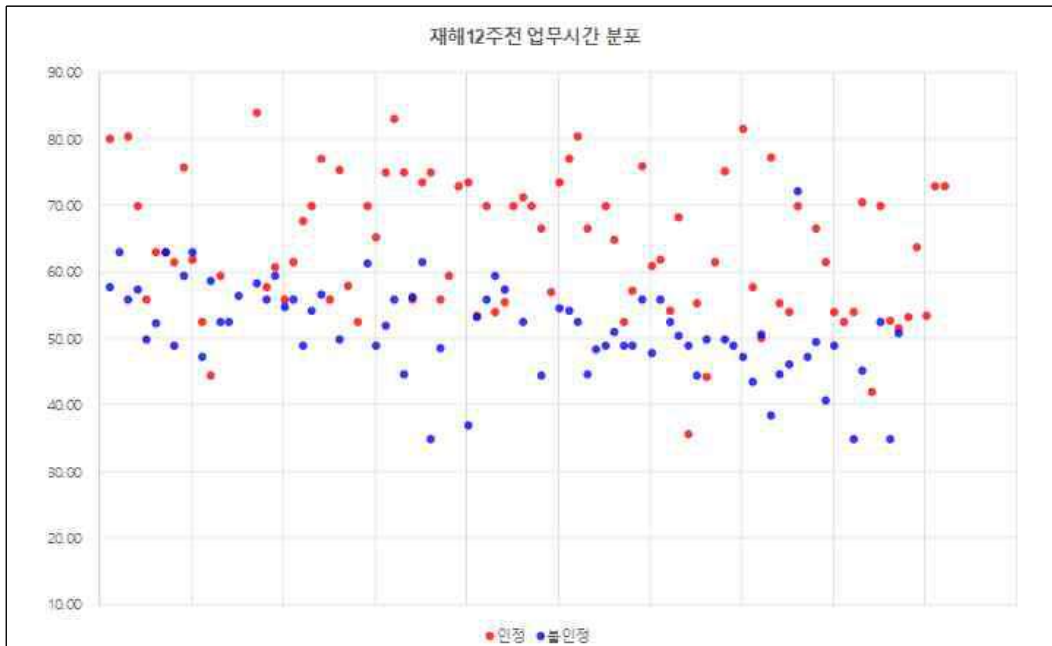
7. 재해발생 12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평균 야간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12주 평균	인정	85	63.7691	10.35091	1.12271
	불인정	76	50.9514	8.40991	.96468
12주 평균 야간	인정	81	19.6417	9.56993	1.06333
	불인정	65	9.6555	5.08190	.6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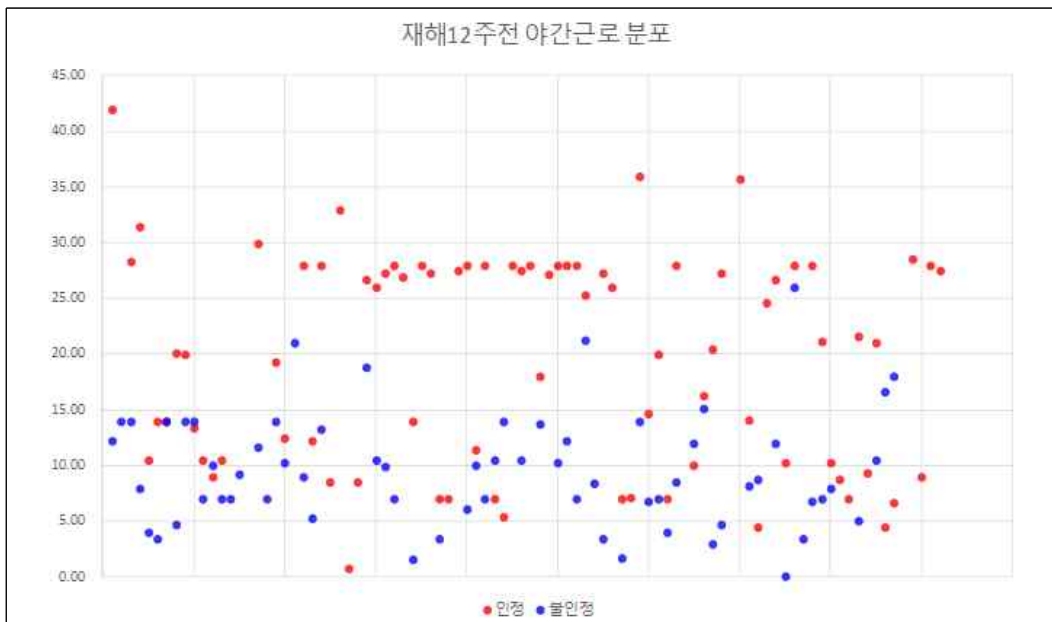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77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50.95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유의($t=8.659$,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된 경우보다 평균 업무시간이 12.82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IV-10>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9.64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9.6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11>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 재해발생 12주 전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유의($t=8.079$,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 경우보다 야간시간이 9.98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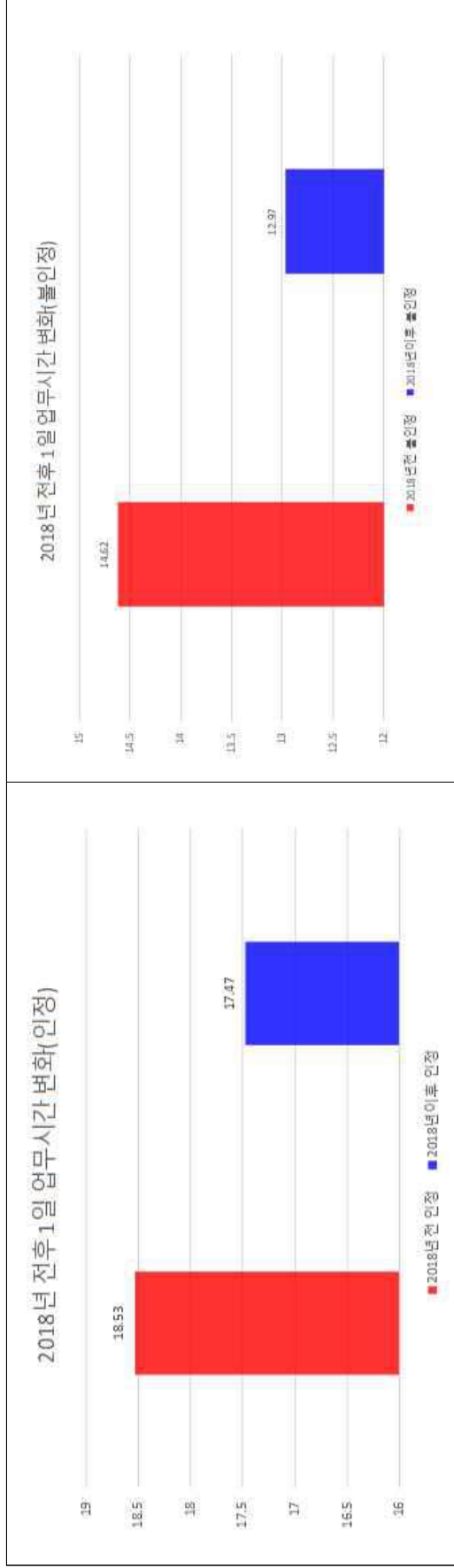
8. 2018년 이전·이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비교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1일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 12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을 비교 분석하면 2018년 이전 인정된 사건의 경우 1일 평균 업무시간 18.53시간에 비해 2018년 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이 17.47시간으로 적어졌고, 수면시간은 3.08시간에서 2.84시간으로 적어졌다. 2018년 이전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2018년 이후 지침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근무를 명시하였고,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만 성과로 인정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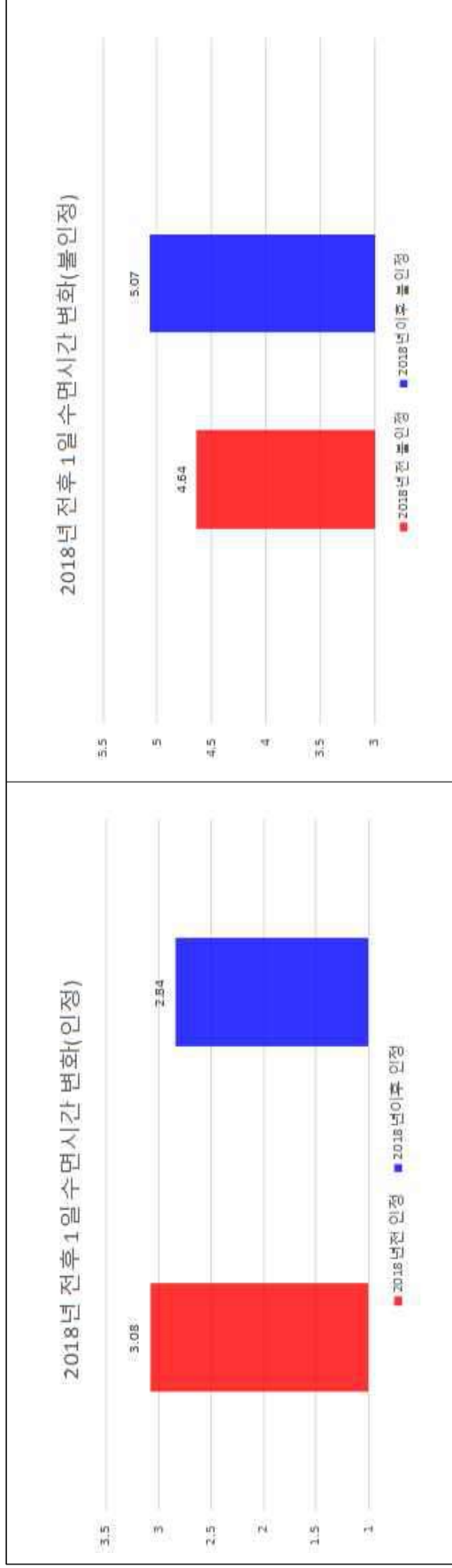
<표IV-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인정	18.53	3.08	2.39	59.84	16.28	64.91	18.73	65.00	19.53
2018년 이후	17.47	2.84	3.04	60.29	18.61	63.77	19.78	63.53	19.66
2018년 이전	14.62	4.64	2.75	51.11	9.48	52.26	9.84	53.96	10.37
2018년 이후	12.97	5.07	2.80	44.53	8.78	46.74	9.29	47.24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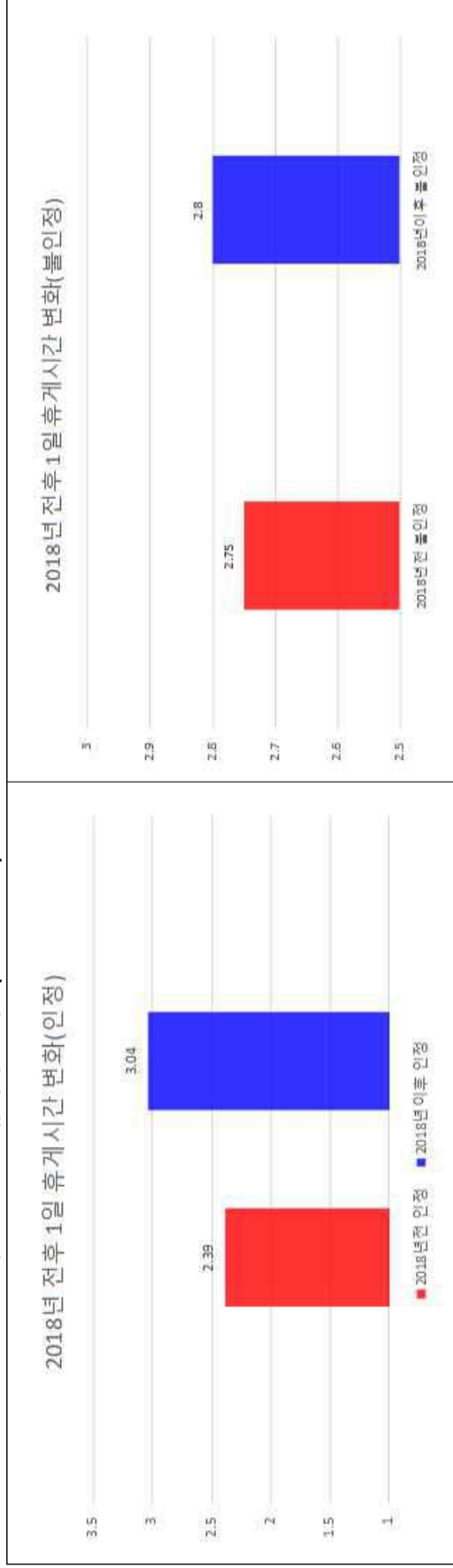
<그림IV-12>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그림IV-13>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수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그림IV-1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인정·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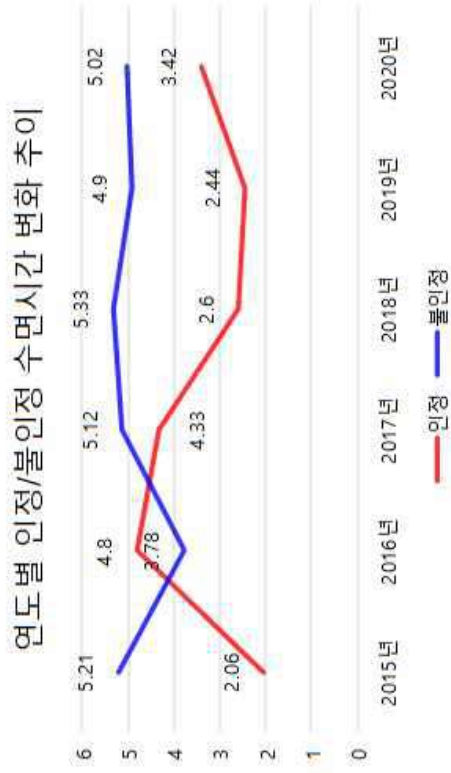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연도별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1주, 4주, 12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IV-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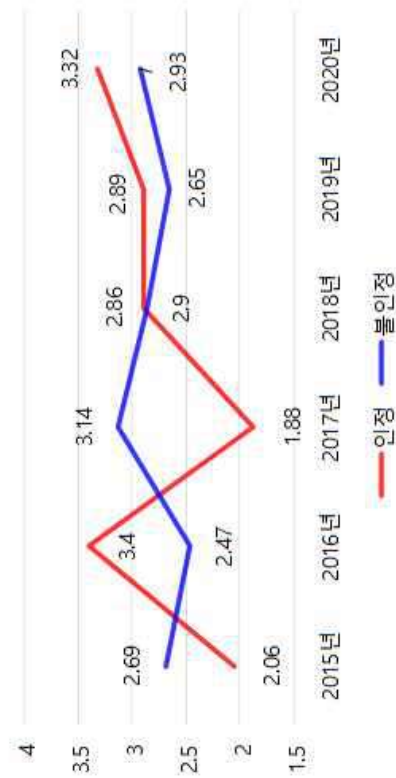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2015년	인정	19.89	2.06	2.06	62.61	19.28	68	21.5	68.73	22.55
	불인정	16.10	5.21	2.69	52.87	9.33	55.83	10.1	56.14	10.33
2016년	인정	15.80	4.80	3.40	51.2	10	56.64	11.5	54.6	10.85
	불인정	12.56	3.78	2.47	49.23	8.67	48.12	8.81	51.87	8.76
2017년	인정	18.86	4.33	1.88	64.4	18.55	69.42	30	70.86	30
	불인정	14.75	5.12	3.14	50.5	10.21	51.52	10.34	46.91	10.49
2018년	인정	17.81	2.60	2.90	58.26	18.17	65.14	20.06	65.72	20.17
	불인정	13.86	5.33	2.86	13.32	7.67	50.22	9.06	8.64	9.59
2019년	인정	17.67	2.44	2.89	63.18	20.08	64.11	21.6	62.36	20.58
	불인정	12.98	4.90	2.65	44.13	11.68	45.72	9.58	46.08	9.10
2020년	인정	16.90	3.42	3.32	60.73	18.06	61.83	18.18	61.43	18.31
	불인정	11.86	5.02	2.93	41.38	9.06	43.79	10.55	44.06	10.90

○ 경비노동자의 파로사가 인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2018년 이후 1일 업무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18.18시간에 비해 17.46시간으로 적어졌고, 1일 수면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3.73시간에 비해 2.82시간으로 적어졌고, 휴게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2.45시간에 비해 3.04시간으로 많아졌다.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에는 인정된 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전에 비해 업무시간이 적어도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수면 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소 증가하여도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1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변화 추이



연도별 인정/불인정 휴게시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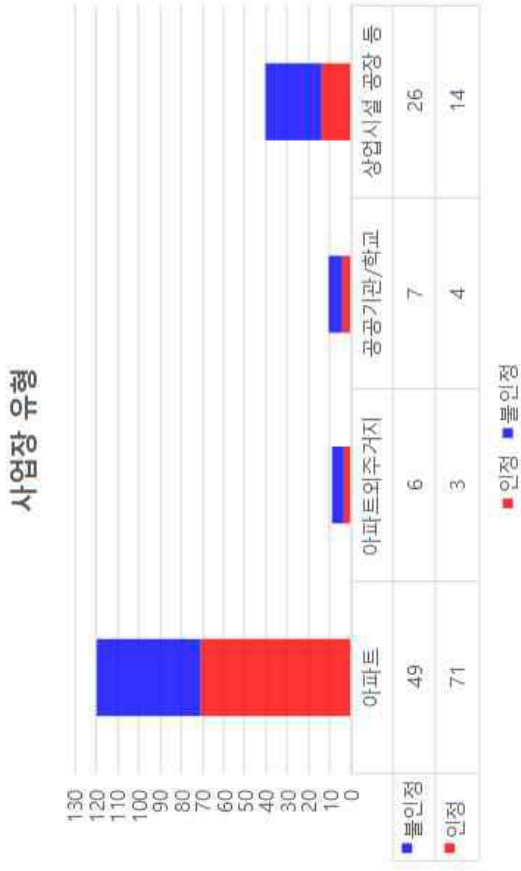
9. 사업장 유형별 분포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학교 등), 상업시설(빌딩, 상가, 공장, 신축공사현장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정·불인정 전체 사건 중 66.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으며, 인정 사건 중 77.17%의 과로사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다. 인정 사건 중 아파트 외 주거지를 포함할 경우 80.43%의 과로사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생 현황을 토대로 사업장 유형 중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사업장 유형	인정	불인정	전체	비고(%)
아파트	71	49	120	66.67
아파트 외 주거지	3	6	9	5.00
공공기관/학교	4	7	11	6.11
상업시설, 공장 등	14	26	40	22.22
계	92	88	180	(100)

<그림IV-1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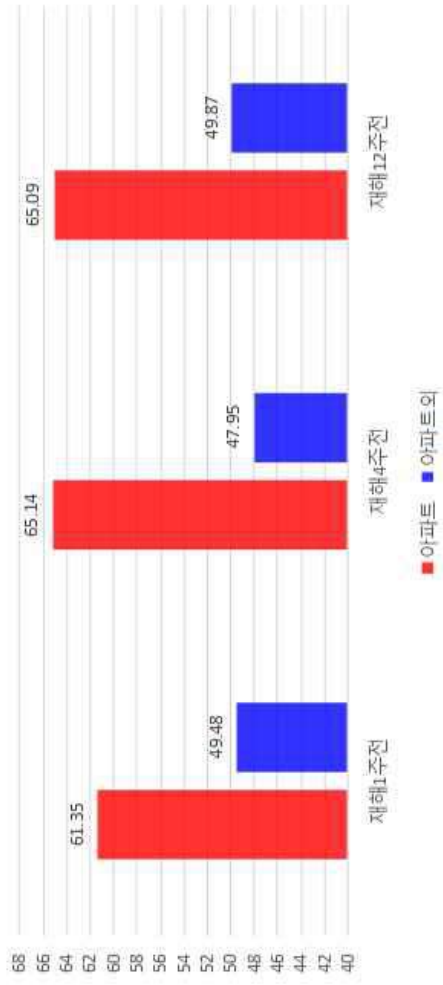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외 시설로 분석한 결과 인정된 사건의 경우 아파트 외 시설의 경비노동자에 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이 많고, 수면시간, 휴게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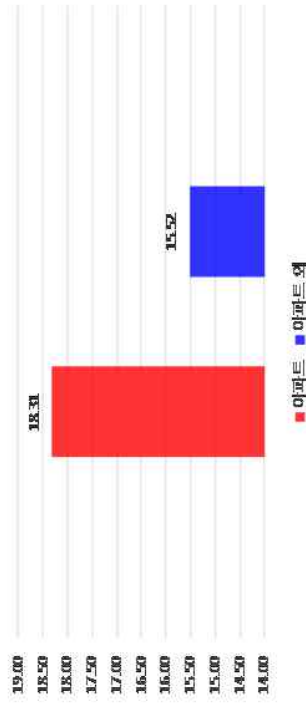
<표IV-7> 사업장 유형별 업무시간, 수면시간, 야간시간 비교 / <그림IV-17> 아파트·아파트 외 사업장 평균 근무시간 비교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아파트	인정	71	18.31	71	2.70	71	3.08	71	61.35	69	19.44	70	65.14	68	20.61	66	65.09	65	20.73
	불인정	49	14.40	49	4.40	49	2.83	49	47.43	40	9.05	47	51.51	41	10.38	44	51.74	38	10.16
아파트 외주거	인정	3	9.33	3	4.30	3	1.00	3	43.40	3	4.63	3	42.71	2	6.62	3	43.44	2	6.94
	불인정	6	14.70	6	6.50	6	3.13	6	50.47	6	6.30	6	50.36	6	6.36	5	49.65	6	6.60
상공	인정	4	14.13	4	3.88	4	2.25	4	57.36	4	14.25	4	59.70	4	15.19	4	58.87	4	14.90
	불인정	7	12.43	7	4.36	7	2.50	7	50.21	4	7.63	7	47.96	4	8.16	5	53.37	3	7.97
시설	인정	14	17.25	14	3.30	14	2.68	14	58.79	12	15.70	14	64.02	12	17.48	12	63.21	10	17.02
	불인정	26	13.25	26	5.40	26	2.63	26	49.05	23	10.49	25	47.36	22	9.36	22	49.13	19	9.71

사업장 유형별 재해 1주, 4주, 12주 평균 근무시간 비교(인정)



사업장 유형별 1일 근무시간 비교(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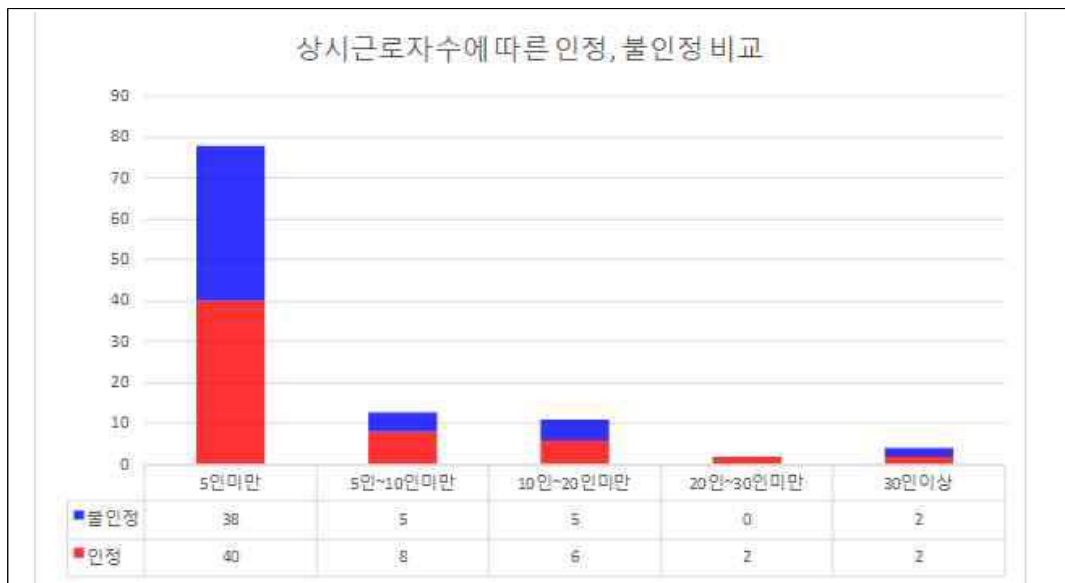
10. 상시 노동자 수 규모별 현황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통해 상시 노동자 수 규모별 현황¹⁷⁾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에 대한 분석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IV-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유형	인정	불인정	전체	비고(%)
5인미만	40	38	78	42.42
5인~10인미만	8	5	13	7.18
10인~20인미만	6	5	11	6.08
20인~30인미만	2	0	2	1.10
30인이상	2	2	4	2.21
미확인	34	39	73	40.33

<그림IV-1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인정 사건 83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4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업무시간은 17.74시간, 수면시간 3.2시간, 휴게시간 2.67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인정 사건 전체 평균 1일 업무시간은 17.81시간, 수면시간은 2.77시간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7) 재해조사서의 경우 전체 사업장 상시 노동자 수를 입력한 경우가 있다.(예:1,000인 이상 등) 재해조사서에 5인 미만으로 입력한 경우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기재된 상시 노동자 수를 비교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였으며, 이외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1. 뇌혈관질병, 심혈관질병 유형별 분포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통해 경비노동자의 질병 유형을 살펴보면, 뇌혈관질병(뇌출혈, 뇌경색), 심혈관 질병, 기타(사인미상 등)로 구분하였을 때, 인정된 사건의 경우 뇌혈관질병은 28.58%, 심혈관질병은 59.52%를 차지하여 심혈관질병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병·심혈관질병 발생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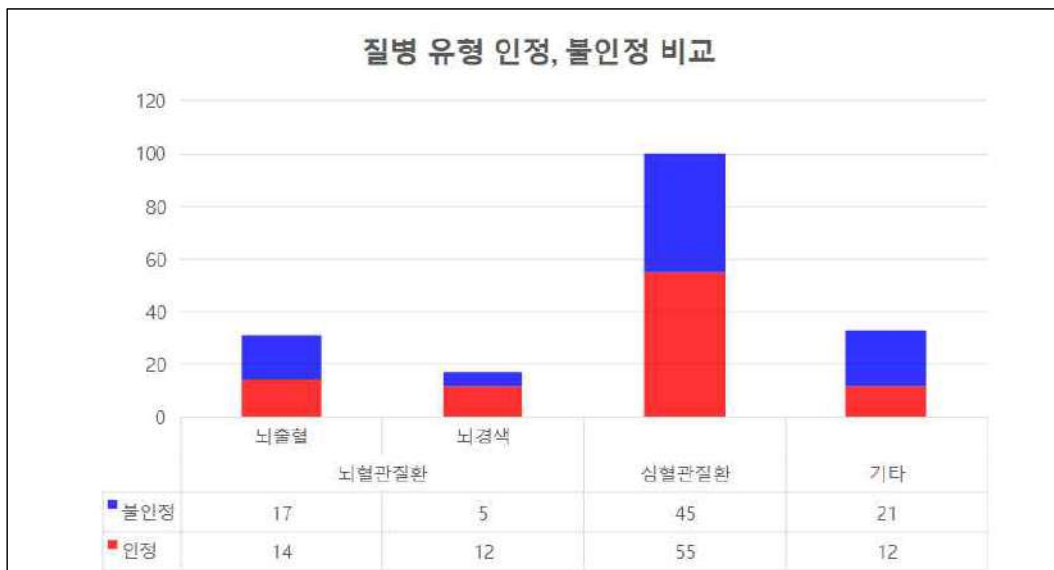
질병유형		인정		불인정	비고
뇌혈관질병	뇌출혈	14	15.05	17	*뇌출혈 중복 1건
	뇌경색	12	12.90	5	
심혈관질병		55	59.14	45	*뇌출혈 중복 1건
기타		12	12.90	21	
계		93	100	88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뇌심혈관 질병 발생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경비노동자의 경우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이 전체 현황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10> 고용노동부 연도별 뇌혈관·심혈관질병 사망재해 발생현황

구분	뇌혈관질병 사망		심혈관질병 사망		계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15	164	57.00	129	43.00	293
2016	161	53.07	139	46.33	300
2017	179	50.56	175	49.44	354
2018	197	43.11	260	56.89	457

<그림IV-1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병·심혈관질병 유형별 비교



12. 경비노동자 과로사 월별 발병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재해발병월(재해발병 이후 사망한 경우 재해발병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의 경우 12월 16.87%, 1월 15.67%, 10월 12.05% 순위로 확인되었다.

<표IV-11> 경비노동자 과로사 월별 발생현황

월	전체		인정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		상업시설	
	전체	비율	인정	비율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1	20	11.17	13	14.13	12	4	0	0	0	0	1	3
2	19	10.61	8	8.70	7	6	0	1	0	0	1	4
3	17	9.50	8	8.70	5	3	1	2	0	0	2	4
4	9	5.03	3	3.26	2	4	0	0	0	0	1	2
5	13	7.26	6	6.52	6	3	0	0	0	2	0	2
6	11	6.15	6	6.52	4	3	1	1	0	0	1	1
7	7	3.91	6	6.52	5	0	0	0	0	0	1	1
8	17	9.50	10	10.87	8	4	0	0	1	1	1	2
9	11	6.15	7	7.61	3	2	1	0	0	0	3	2
10	19	10.61	10	10.87	8	6	0	0	0	1	2	2
11	14	7.82	1	1.09	1	6	0	1	0	3	0	3
12	22	12.29	14	15.22	10	7	0	1	0	0	1	0
전체	179	100.0	92	100	71	48	3	6	3	7	1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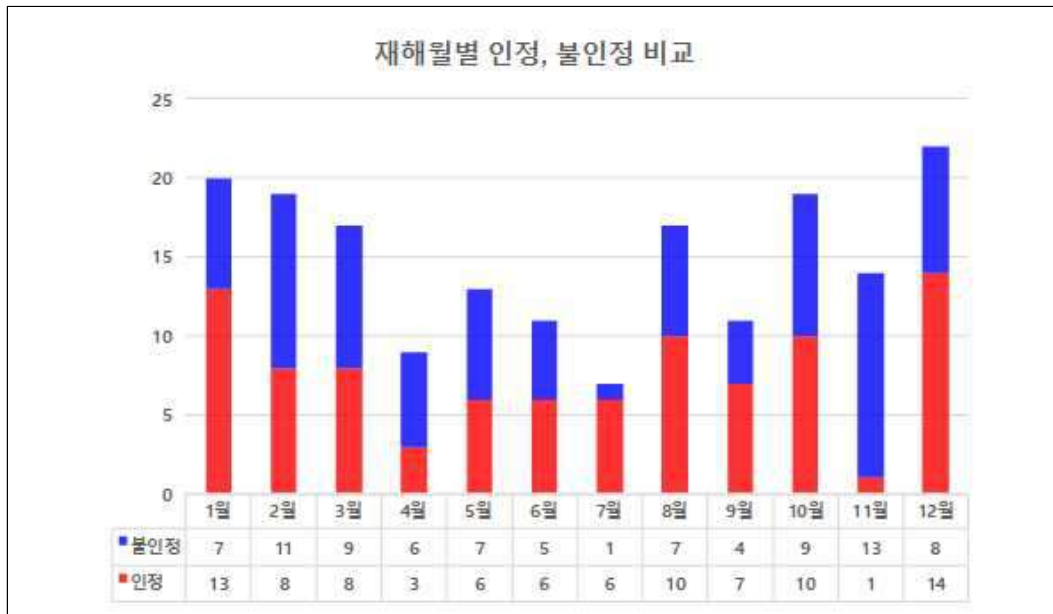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재해발병월(재해발병 이후 사망한 경우 재해발병월)을 기준으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의 경우 겨울(12~2월) 38.05%, 여름(6~8월) 23.91%, 가을(9~11월) 19.57%, 봄(3~5월) 18.48%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는 겨울 38.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2> 경비노동자 과로사 계절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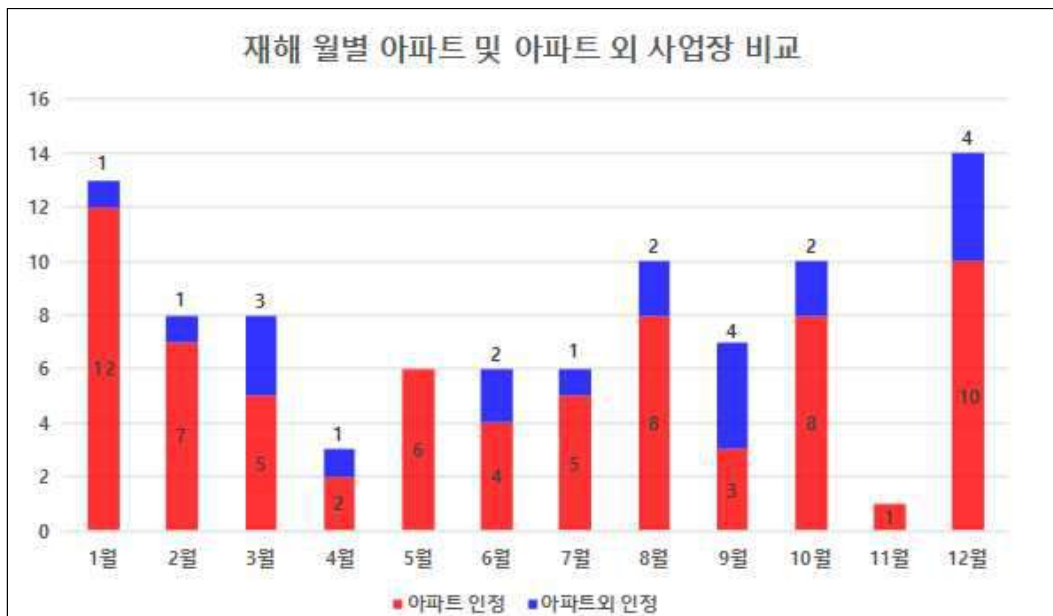
월	전체		인정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		상업시설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봄(03~05)	39	21.79	17	18.48	13	10	1	2	0	2	3	8
여름(06~08)	35	19.55	22	23.91	17	7	1	1	1	1	3	4
가을(09~11)	44	24.58	18	19.57	12	14	1	1	0	4	5	7
겨울(12~02)	61	34.08	35	38.04	29	17	0	2	3	0	3	7
전체	179	100	92	100	71	48	3	6	4	7	14	26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의 경우 아파트에서 78.31%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사업장을 비교하여 월별 발생현황과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 경비노동자(71건)의 현황을 분석하면, 12월 10건, 1월 12건, 2월 7건 등 29건으로 40.85%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IV-20> 경비노동자 월별 인정·불인정 현황 비교



<그림IV-21> 아파트·아파트외 사업장 유형별 월별 발생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을 월별, 계절별, 사업장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경비노동자의 업무수행 장소, 작업환경과 재해발병 사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초소 근무, 경비초소 외 근무(순찰, 환경관리(화단관리, 제초작업, 가지치기, 경비초소 주변 청소, 주차 차량관리, 제설작업 등)로 구분하였을 때, 경비 초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고온·한랭 등 온도변화 등이 경비노동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신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비초소 또는 휴게

(수면)시설의 냉·난방 상태, 시설(간이침대, 침대, 화장실 유무, 책상, 의자 등) 등 작업환경적 요인과 휴게(수면)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도 온전한 휴게(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를 사업장, 자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180건 147건(81.67%)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인정된 사건 중 92건 중 74건(80.43%)이 사업장에 발생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인정된 사건 71건 중 55건(77.46%)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사업장에서 1인이 근무하던 중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 상태 또는 숨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24시간 교대제, 야간 1인 근무 등 업무특성상 상병 발병시 조기발견 및 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려워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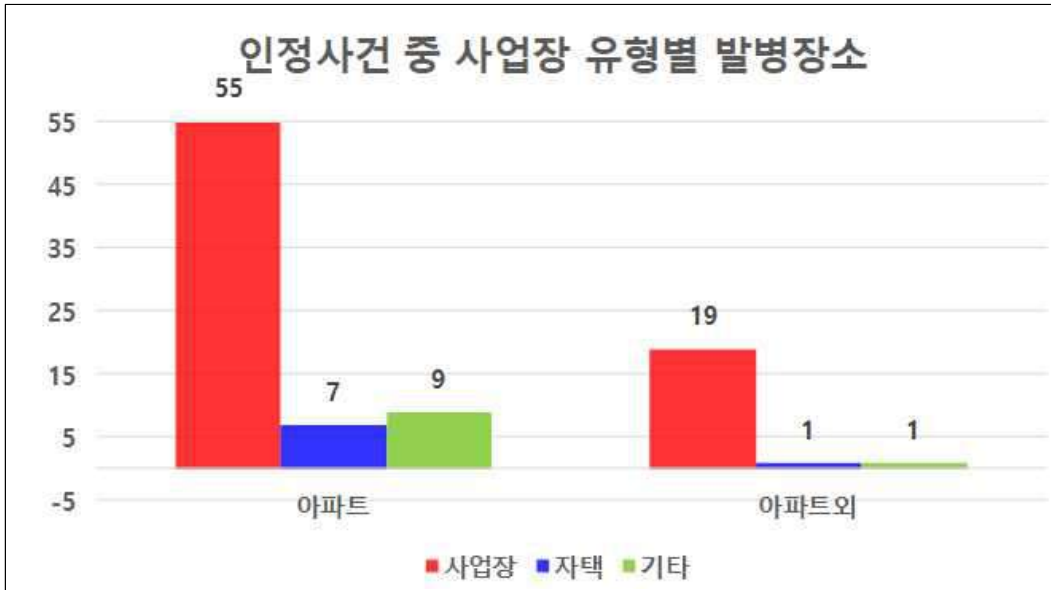
<표IV-13>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구분	전체		인정		불인정		인정된 사건 중 사업장 유형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아파트	아파트외
사업장	147	81.67	74	80.43	73	82.96	55	19
자택	15	8.33	8	8.70	7	7.95	7	1
기타	18	10.00	10	10.87	8	9.09	9	1
계	180	100	92	100	88	100		

<그림IV-22>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그림IV-23>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발병장소 현황



V. 경비노동자 과로사와 감사·단속적근로 승인제도, 최저임금 관계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제도 문제점

-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표 V-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감시·단속적 근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p>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p> <p>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p>	<p>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p> <p>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p>

<p>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p> <p>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¹⁸⁾</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p>
---	--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을 말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은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경비원 등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으로는 임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인 관행 등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2016. 10.)」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고용노동부가 2020. 12. 18. 의원실에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승인률은 2015년 93.4%, 2016년 93.9%, 2017년 94.7%, 2018년 94.6%, 2019년 91.9%이며, 20년(6월말) 92.1%이며, 평균 승인률은 93.7%에 해당한다.**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표VI-3> 감시·단속적 신청건수, 처리건수(의원실 자료)

(단위: 건)

연도	신청건수	처리건수		
		소계	승인	불승인·반려 등
'20년 6월말	7,390	7,390	6,809	581
'19년	14,128	14,128	12,993	1,135
'18년	23,411	23,411	22,141	1,270
'17년	12,688	12,688	12,016	672
'16년	10,959	10,959	10,288	671
'15년	11,152	11,152	10,432	720
계		79,728	74,679	

<제공> 용혜인 의원실

-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 기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직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91호)」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다.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

<p>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p> <p>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p>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 고용노동부는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장 현지출장을 통한 노동조건 실태 확인 의무화(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 명시하는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경비노동자의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 고용노동부는 2021. 2. 18.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 개선, ▲ 근로자의 휴식권의 보장을 강화,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검직 판단기준 마련,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제정(~'21.6월)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실태파악을 통해 「검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공동주책 경비원 중심)」 마련·배포('21.8월), 근무체계 개편 사례 발굴·배포 및 컨설팅 지원('21.4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판단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경비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사용자가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

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 1) 원심은,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에 “24:00~04:00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관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2012. 9. 3. 작성된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순찰조의 조장을 맡은 바 있는 소외인은 ‘24:00~04:00경에 순찰을 돌면서 근무초소(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는지, 경비원이 가면을 하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3) 원심은, 경비원들 중 일부는 2014. 2. 13.경 경비원 휴게실이 설치되기 전에 근무초소(경비실)가 아닌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비원들 일부가 사용한 지하실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공호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점, 2012. 11. 1.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불필요 물자 반입금지: 처리되어야 할 일반물자로 침대, 의자, 빈 화분, 재활용품”을 지적하고 있는 점, 2012. 7. 2.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같은 해 6. 18.~6. 29. 실시한 지하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나무사다리 방치, 비인가 전열기구, 폐품 보관 방치, 침대 설치, 공동식탁(설치)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하여 별점조치를 한 점, 2012. 7. 25.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침대 이용자에 대하여 근무기강 불량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원들 중 일부가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피고의 징계 등을 무릅쓰고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피고는 2014. 2. 6. 비로소 경비직원의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에 관하여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2014. 2. 8. ‘휴게시간’, ‘순찰중’이라고 기재된 팻말을 제작한 후 이를 경비실에 부착하도록 한 점, 2014. 2. 13.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 이전에는 입주민들이 민원제기, 동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경비원

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4. 2. 이전에는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도와 임금 -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의 문제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이 예외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 12. 2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2014.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1. 1.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VI-4>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이

연도	2007	2008~2011	2012~2014	2015
최저임금 지급률	70%	80%	90%	100%

-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2016. 10.)」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92다24509 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법 제53조제3항)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

	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다20548 등) -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

○ 예시로 들고 있는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91다20548, 법무 811-28682, 2000. 10. 25. 근기 68207 -3298 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4.13.)”고 보고 있다.

○ 경비노동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예:06:00~다음날 06:00)의 근무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조식, 중식, 석식, 야간(휴게시간, 수면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휴게공간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 수면시간에 경비실의 간이시설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의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3)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문제점 - 휴게시설,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없음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 없음”이라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예외 승인’을 전제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해조사서 등 재해조사 과정에서

감시단속적 승인 여부에 대한 조사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 재해조사서(예시)>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가. 근로내용 및 직역	
근로시간	1일평균()시간 / 1주평균()일 / 1주평균()시간 / 기타 : 격일 24시간 근무제/ 근로계약서상 실근로시간 : 1일 시간 격일 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분 / 저녁시간()분 / 휴식시간: 1일(1)회, 1회()분
근무내용	- 격일 24시간 근무제, 경비업무 - 점심 및 저녁식사 각각 부여, 취침시간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고정주간근무 <input type="checkbox"/> 고정 저녁/야간근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대근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시간 교대근무)
하루 휴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식사시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 /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해진 휴게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90 분)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을 준수 /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직무 자율성	<input type="checkbox"/>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input type="checkbox"/>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또한 “(아파트 경비) 근무 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서에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산정)된 업무시간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임, 독립된 수면장소가 없고, 연속 5시간 이상 제외고된 경우가 아니어서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 1일 업무시간 20시간, 22시간, 23시간 등)”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지침의 기준을 토대로 재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의원실에 2020. 6.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고 제출하였다. “(주요 판단기준) 근무장소와 분리, 야간에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장비 마련, 냉난방 시설 마련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휴게시설과 ‘근무장소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살펴보면, 휴게시설과 근무장소의 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휴게시설을 근무장소와의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온전한 휴게, 수면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노동조건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수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Ⅶ. 종합 분석

1.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변화 추이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업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업무상 질병 전체 인정률은 2015년 44.9%, 2016년 44.1%, 2017년 52.9%, 2018년 63.0%, 2019년 64.6%, 2020년 63.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정률은 2018년 이후 63~64%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업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2015년 23.5%, 2016년 22.0%, 2017년 32.6%,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 및 지침 변경 후 인정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6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¹⁹⁾>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2015년 27.8%, 2016년 13.9%, 2017년 23.1%, 2018년 63.6%, 2019년 47.8%, 2020년6월 76.0%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인정률 21.4%인 반면, 2018~2020.6월 평균 인정률은 59.6%로 2018. 1. 1. 지침 개정 후 인정률은 2.79배 증가하였다. 신청건 수는 2015~2017년 98건에서 2018~2020.6. 104건으로 1.06배 증가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230건 중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을 분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인정률 기준은 '최초 1회차 결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채심의 사건 14건(2018년 13건, 2019년 1건)을 제외한 166건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전체 인정률은 48.8%(인정 81건, 불인정 85건)이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0.0%, 2016년 23.8%, 2017년 22.2%, 2018년 70.0%, 2019년 53.1%, 2020년 71.43%으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인정률 24.6%인 반면, 2018~2020년 평균 인정률은 64.95%로 2018. 1. 1. 지침 개정 후 인정률은

19)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노동자' 산재 현황으로 제출한 사건에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포함되는 경비노동자 외 관리소장, 청소, 시설관리, 조경, 주차원 등 다른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2.64배 증가하였다. 신청건 수는 2015~2017년 69건에서 2018~2020년 97건으로 1.41배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2019.11.30.)」에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 승인률(2018.상반기.~2019.하반기.)에 대하여 “세부 직종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신청건수는 총 157건, 승인률은 61.8%로 전체 신청건수의 승인률인 41.3%에 비하면 ‘경비원 및 검표원’의 승인률의 유의하게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18. 1. 1.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재심의 사건은 14건이며, 2018년 13건 중 10건이 인정되었고, 2019년 1건 중 1건이 인정되었다. 재심의 사건 14건 중 인정 11건, 불인정 3건으로 인정률은 78.57%이다. 2018년 지침 개정 사항을 통해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경비노동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인정한 것과 업무시간 산정 기준(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어 12주 공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 등)을 적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전체 인정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환 인정률,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질환(사망) 인정률,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 인정률을 비교하면, 2015~2017년까지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29.9%, 2018~2020년 40.20%로 1.34배 증가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인정률은 2015~2017년에 비해 2.6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부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경비노동자 과로사 규모, 연령, 업종비교 : 60세 이상 남성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 모두 남성이며, 인정 92건 중 60세 미만 인정 사건은 4건으로 4.35%를 차지하였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95.65%가 60대 남성 노동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8.22세이다.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를 중심으로)>과 경비노동자 과로사(업무상질병판정서)를 비교 분석하면, 연도별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 과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7%(293명 중 9명), 2016년 1.67%(287명 중 5명), 2017년 1.13%(354명 중 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4.60%(457명 중 21명), 2019년 3.38%(503명 중 17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장 규모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1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5~9인 미만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0.0%, 2016년 57.16%, 2017년 34.62%, 2018년 50.0%, 2019년 53.63%를 차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00%, 2016년 42.87%, 2017년 11.54%, 2018년 18.75%, 2019년 27.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뇌심혈관 사망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24%, 2016년 7.0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로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0%, 2016년 23.81%, 2017년 15.38%, 2018년 43.75%, 2019년 53.10%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 1. 1. 경비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시 및 지침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뇌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중 ‘60세 이상 남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45%, 2016년 19.91%, 2017년 21.35%, 2018년 25.78%, 2019년 3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중 60대 이상 남성노동자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2015년 14.29%, 2016년 7.25%, 2017년 5.80%, 2018년 18.18%, 2019년 10.0%로 분석되었다. 2018~2019년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 중 60대 이상 남성의 사망 사건에서 경비노동자가 1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을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10.24%, 2016년 7.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뇌심혈관 질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5년 3순위(10.24%), 2016년 3순위(7.0%), 2016년 4순위(7.0%), 2017년 3순위(7.34%), 2018년 1순위(10.50%), 2019년 1순위(1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인정률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사망 사건을 종합하여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업종별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망자 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①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환 사망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6, ② 0.41이며,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만인률 대비 2.56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27로 1.69배 높고, 2017년 ① 0.19, ② 0.32로 1.69배 높고, 2018년 ① 0.24, ② 0.58로 2.42배 높고, 2019년 ① 0.27, ② 0.72로 2.6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환 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뇌심혈관질환 발생 현황을 토대로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환 재해자 수, 업종별 재해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자 수를 토대로 ① 전체 뇌심혈관질환 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환 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9, ② 0.25이며 전체 뇌심혈관질환 만인률 대비 1.32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12로 0.75배 높고, 2017년 ① 0.23, ② 0.40로 1.74배 높고, 2018년 ① 0.36, ② 1.00로 2.78배 높고, 2019년 ① 0.51, ② 1.25로 2.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만인률, 뇌심혈관질환 만인률과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사망 만인률, 뇌심혈관질환 만인률의 변화 추이 및 2018년 이후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 모두 남성이며, 전체 평균 연령은 67.94세, 최소 50세, 최대 85세이다. 인정 사건 인정 92건의 평균 연령은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이다. 인정 사건 중 65~69세가 36명(39.1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를 고정주간, 고정저녁·고정야간,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기타(3조2교대, 4조3교대 등)로 구분하였고, 중복 체크한 결과 전체 사건 중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81.87%를 차지하였다. 인정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시간 교대제(격일제) 88.78%, 고정저녁·고정야간 4.08%, 기타 4.08%, 고정주간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1일 평균 업무시간(수면시간, 휴게시간 제외)은 인정 17.67시간, 불인정 13.9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3.75시간 업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인정 2.89시간, 불인정 4.8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93시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0.21시간, 불인정 48.3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1.85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8.19시간, 불인정 10.0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8.97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3.99시간, 불인정 49.3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4.07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9.20시간, 불인정 9.6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9.98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3.77시간, 불인정 50.95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2.82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9.64시간, 불인정 9.6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9.98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2018년 이전·이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업무시간은 1일 평균 18.53시간, 1주 평균 59.84시간, 4주 평균 64.91시간, 12주 평균 65.0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은 1일 평균 17.47시간, 1주 평균 60.29시간, 4주 평균 63.77시간, 12주 평균 63.53시간으로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살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수면시간, 휴게시간은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수면시간은 1일 평균 3.08시간, 휴게시간은 1일 평균 2.39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수면시간은 1일 평균 2.84시간, 휴게시간은 1일 평균 3.0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후 1일 평균 수면시간 0.24시간 낮아졌고, 1일 평균 휴게시간은 0.65시간 증가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수면시간이 낮아진 것은 지침 개정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수면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이 증가한 것은 업무시간이 낮아진 것과 같은 이유로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살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야간시간은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야간시간은 1주 평균 16.28시간, 4주 평균 18.73시간, 12주 평균 19.53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야간시간은 1주 평균 18.61

시간, 4주 평균 19.78시간, 12주 평균 19.66시간으로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 야간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수면시간이 낮아진 이유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의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야간시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18년 이전 4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2018년 이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명시하였고,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의 사업장 유형을 아파트, 아파트외 주거지, 공공기관(연구소, 학교 등), 상업시설(신축공사, 공장, 빌딩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92건 중 아파트 71건(77.17%), 상업시설 14건(15.22%), 공공기관 등 4건(4.35%), 아파트외 주거지 3건(3.26%)로 분석되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장 유형을 아파트와 아파트 외로 구분하여 인정된 사건의 업무시간을 비교하면 아파트의 경우 1일 평균 업무시간 18.31시간, 아파트 외 15.52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아파트 61.35시간, 아파트 외 49.48시간, 4주 평균 아파트 65.14시간, 아파트 외 47.95시간, 12주 평균 아파트 65.09시간, 아파트 외 49.87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교대제(격일제), 수면시간·휴게시간의 보장 여부, 독립된 공간에서 수면(휴게)시설 확보 여부, 경비 및 순찰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관리(화단관리, 제초작업, 제설작업, 낙엽치우기 등), 주차관리, 택배관리, 입주민 민원 등 부가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아파트 외 사업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5인 미만, 5~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3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경비노동자 수가 명시된 경우 경비노동자의 수, 재해조사서에 명시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 중 5인 미만, 5~10인 미만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확인되었다. 인정 사건의 경우 5인 미만 40건(43.48%), 5~10인 미만 8건(8.70%)으로 52.17%를 차지하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현황을 분석한 것과 같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비노동자의 2018년 50.0%, 2019년 53.63%로 분석되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면(중복) 심혈관질환 55건(59.14%), 뇌혈관질환 26건(27.95%/ 뇌출혈 14건(15.05%), 뇌경색 12건(12.90%)), 기타(심정지, 급성심장사, 사인미상 등) 12건(12.90%)으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교대제 등이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경비노동자의 24시간 교대제(격일제)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생 월별 현황을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 92건 중 12월 14건(15.22%), 1월 13건(14.13%), 8월 10건(10.87%), 10월 10건(10.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절별로 구분하면 겨울(12~2월) 35건(38.04%), 여름(6~8월) 22건(23.91%), 가을(9~11월) 18건(19.57%), 봄(3~5월) 17건(18.48%)를 차지하여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1건 중 겨울철(12~2월) 29건(40.85%), 여름철(6~8월) 17건(23.94%)를 차지하였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초소 근무, 경비초소 외 근무(순찰, 환경관리(화단정비, 제초작업, 제설작업, 낙엽치우기 등),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로 구분하였을 때, 경비초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고온·한랭 등 온도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경비초소 또는 수면(휴게)시설의 냉·난방 상태, 시설(간이침대, 침대, 화장실 유무, 책상, 의자 등) 등 작업환경적 요인과 수면(휴게)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도 온전한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등 업무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발생장소를 사업장, 자택, 기타(도로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0건 중 147건(81.67%)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경우 사업장에서 74건(80.43%)이 발생하였고,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71건 중 55건(77.46%)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사업장에서 1인이 근무하던 중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24시간 교대제(격일제), 야간에 1인 근무 등 업무특성상 상병 발병시 조기 발견 및 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려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파트에서 24시간 교대제(격일제)로 근무하는 60대 이상 남성이며, 10인 미만 규모, 야간에 1인 근무시 겨울철(12~2월)에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수면(휴게)시설 미확보, 수면(휴게)시간 미보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2019.11.)」 특정 직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아파트 경비종사자-아파트 경비종사자 뿐만 아니라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 적용하되, 야간 업무 중 경비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야간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업무시간 산정 근거, 산정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이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계시물 부착(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등) 진술에 터잡아 업무시간이 산정된 경

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교대제근무’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각각 사업장별 경비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보다 폭넓게 판단하기 위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업무시간 산정근거, 산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중요한 수면(휴게)시간 보장 여부, 수면(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공단 지침 등에 수면(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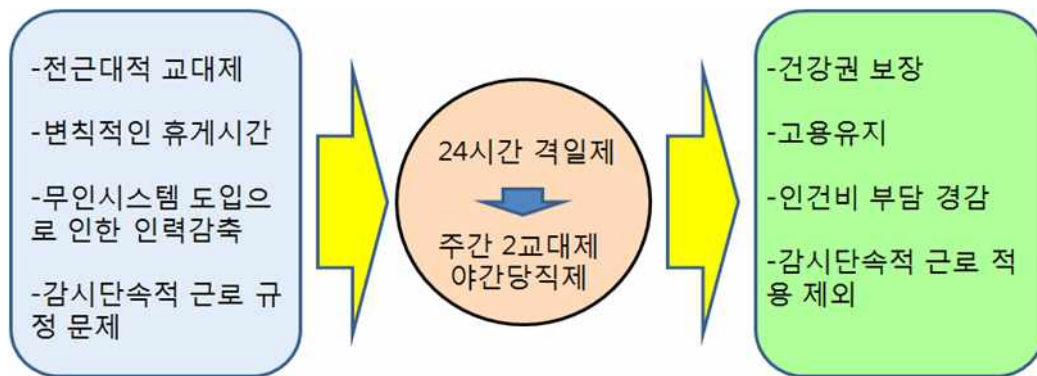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1. 경비노동자 교대근무제 개선 관련

○ 과로사의 원인인 장시간 교대근무제

- 발제문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듯이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는 24시간 격일교대제라는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서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제도와 연관된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축소 등 교대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경비업법 위반 논란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2020년 초 경찰청에서는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경비업법을 적용하기 위한 계도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여기서의 경비업무는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함.
- 경비업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작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경비원이 방범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음.
- 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상의 경비원의 업무범위 설정,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0월로 정했음.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10. 21.]

- 경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법규정이 시행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대체로 70% 이상 관리업무(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단 승인 효력에 대한 다툼은 잠재하고 있었고, 법 개정과 조직화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환경변화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어 있음. 감단 승인 효력에 대한 다툼은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인원을 줄이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법적 다툼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이 그 대안이 될 것임.

2. 휴게시설 설치 기준 관련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모든 사업주	제39조 (보건조치)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제167조 제168조 (벌칙) 법칙 없음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도급 사업의 원청	제64조 (도급시의 조치)	제172조 (벌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0조(의자비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2조(구급용구)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81조(위생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를 갖는 원칙적인 조항이고,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없음.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사업이 도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 용역 등)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휴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 역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장소 제공이나 이용 협조에 대한 의무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없음

- 법규정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조항이 없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음.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인 최소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상 가장 낮은 벌칙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법의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시 휴게시설의 설치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 휴게시설과 관리사무소를 합산한 면적은 최소 10㎡ 이상 최대 100㎡, ▲ 휴게시설에 구비되어야 할 세부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휴게시설에 대한 독자적 기준이 없어 관리사무소의 크기에 따라 휴게시설이 좁아질 수 있음. 또한 이 규정은 영 시행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음.

○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발의는 21대 국회에서 현재 4건이 있음.

- 4건 모두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 ▲ 휴게시설 실태 점검, ▲ 휴게시설 미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담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 경기도

- 경기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함.
- 개정 건의안의 내용은 ▲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면적을 분리해서 규정, ▲ 설치하는 가급적 지상에 하고, ▲ 환기, 유해물질 이격거리 및 비상시의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냄.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적용 시 불리함을 해소.

※ 참고 : 경비원 교대제 개편(안)¹⁾

○ 교대제 개편의 기본 방향

- 감단 승인 효력, 휴게시간 등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
- 현재의 고용을 유지
- 임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관리비 인상 요인 억제

1) 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

- 서울시 ○○구 8단지, 동아에코빌 등

□ 현황(A단지 예시)

- 단지 현황 : 입주년도 2003년, 1,253세대, 15개동
- 경비원 수 : 16명
- 기존 근무방식 : 24시간 격일교대제
 - 근무시간 : 14.5시간
 - 휴게시간 : 9.5시간(주간 3.5시간, 야간 6시간)
 - 월 임금 : 2,024,914원(기본급 1,894,274원, 야간수당 130,640원)

□ 개편안

- 근무방식 : 24시간 격번 퇴근제
 - 격일제 A, B조로 근무할 때 각조 절반의 인원은 22시 퇴근

□ 근무시간 및 임금 비교

- 근무시간
 - 1근무일 : 06시~06시(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 2근무일 : 06시~22시(휴게시간 주간 3시간)

○ 월 임금 비교

- 변경 전 : 2,024,914원
(기본급 1,894,274원, 야간수당 130,640원)
- 변경 후 : 2,090,233원
(기본급 : 1,959,594원, 야간수당 : 130,640원)

□ 개편 전후 비교

1)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현장 간담회 자료(2021. 1.)

구분	기존	개편안
직무	경비원	경비원
업무	방법, 관리업무	방법, 관리업무
감단 적용 여부	적용	적용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 교대제	24시간 격일 교대제 (격변 퇴근제)
인원	16명	16명
근무 시간	1일 : 14.5시간 - 주간근로 : 12.5시간 - 야간근로 : 2시간	1일 : 17시간 - 주간근로 : 13시간 - 야간근로 : 4시간 2일 : 13시간(주간만)
휴게 시간	9.5 시간 - 주간휴게 : 3.5시간 - 야간휴게 : 6시간	1일 : 7시간 - 주간휴게 : 3시간 - 야간휴게 : 4시간 2일 : 3시간(주간만)
1개월 임금	합계 : 2,024,914원 기본급 : 1,894,274원 야간수당 : 130,640원	합계 : 2,090,233원 기본급 : 1,959,594원 야간수당 : 130,640원

□ 비고

○ 장점

- 총고용 유지, 관리비 인상요인 최소화
- 야간 근무횟수 단축으로 경비원의 육체적 부담 경감
- 휴게시간 현실화(9.5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
(기존 주간 3.5시간, 야간 6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으로 변경)
- 기존 근무체계를 유지한 채 야간 체류인원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변화 폭이 작고, 입주민과 경비원의 수용성이 높음.

○ 단점

- 경비원 업무(방법 및 관리업무)를 유지한 채 야간근무시간만 단축했기 때문에 감단 관련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2)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

- 서울시 ○○구 창신두산, 前 ○○시 주공2단지, ○○시 수정한양 등

□ 현황(B단지 예시)

- 단지 현황 : 입주년도 1991년, 1,870세대, 38개동
- 경비원 수 : 24명
- 기존 근무방식 : 24시간 격일교대제
 - 근무시간 : 14.5시간
 - 휴게시간 : 9.5시간(주간 3.5시간, 야간 6시간)
 - 월 임금 : 2,025,000원
(기본급 1,894,300원, 야간수당 130,700원)

□ 개편안

- 근무방식
 - 경비원 8명(24시간 격일교대제)
 - 관리원 16명(주간 2교대제, 5.5일 근무)

□ 근무시간 및 임금 비교

○ 근무시간

- 경비원 8명 : 기존과 동일(근무시간 14.5시간, 휴게시간 9.5시간)
- 관리원 16명 : 평일 근무시간 7.5시간, 주말(토 또는 일) 격주 출근 7.5시간 근무
 오전조 : 06시~14시 30분(1시간 휴게 포함)
 오후조 : 13시 30분~22시(1시간 휴게 포함)

○ 월 임금 비교

<변경 전>

- 경비원 : 2,025,000원(기본급 1,894,300원, 야간수당 130,700원)

<변경 후>

- 경비원 : 2,025,000원(기존과 동일)
- 관리원 : 1,870,860원(기본급 1,730,885원, 휴일수당 139,975원)
 총 인건비 월 247만원 감소

□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편안	
		경비원	관리원
직무	경비원	경비원	관리원
업무	방법, 관리업무	방법	관리업무
감단 적용	적용	적용	비적용

여부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 교대제	24시간 격일 교대제	주간 2교대제
인원	24명	8명	16명
근무 시간	1일 : 14.5 시간 - 주간근로 : 12.5시간 - 야간근로 : 2시간	1일 : 14.5 시간 - 주간근로 : 12.5시간 - 야간근로 : 2시간	주중 5일, 주말 격주 7.5시간
휴게 시간	9.5 시간 - 주간휴게 : 3.5시간 - 야간휴게 : 6시간	9.5 시간 - 주간휴게 : 3.5시간 - 야간휴게 : 6시간	1시간
1개월 임금	합 계 : 2,025,000원 기 본 급 : 1,894,300원 야간수당 : 130,700원	합 계 : 2,025,000원 기 본 급 : 1,894,300원 야간수당 : 130,700원	합 계 : 1,870,860원 기 본 급 : 1,730,885원 주말근무 : 139,975원

□ 비교

○ 장점

- 총고용 유지, 관리비 인상요인 최소화
- 경비원은 방법업무만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 경감
- 관리원은 야간근무가 없어서 건강권 보장
-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 하기 때문에 경비원은 감단 적용, 관리원은 감단 비적용으로 법적 시비가 없음.

○ 단점

- 경비원과 관리원의 임금 차이, 업무범위 차이로 인해 상호 불만 소지가 있음.
- 야간 체류인원 최소화(기존 대비 1/3)로 인한 입주민 불편 가능성
- 관리원의 경우 매일 출퇴근으로 인한 노동자 부담 발생

3)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

- 前 ○○시 크로바 등

□ 현황(C단지 예시)

- 단지 현황 : 입주년도 2010년, 1,497세대, 24개동
- 경비원 수 : 14명
- 기존 근무방식 : 24시간 격일교대제
- 근무시간 : 14시간

- 휴게시간 : 10시간(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 월 임금 : 1,959,594원
(기본급 1,828,954원, 야간수당 130,640원)

□ 개편안

- 근무방식 : 주간 연속 2교대제
 - 관리원으로 전일 개편
 - 오전근무조와 오후근무조로 나눠서 주간 연속 2교대제
 - 오전, 오후 근무조 교대는 2주 간격
 - 주 6일 근무(토일은 1개조에서 절반씩 나눠서 근무)
 - 오후근무조는 1주 중 2일은 야간 당직

□ 근무시간 및 임금 비교

○ 근무시간

- 오전근무조 : 07시~14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주6일 근무
- 오후근무조 : 14시 30분~22시(휴게 1시간 포함), 주6일 근무
- 오후근무조 야간당직 : 22시~07시(휴게 4시간 포함), 주2일 근무

○ 월 임금 비교

<변경 전>

- 경비원 : 1,959,594원(기본급 1,828,954원, 야간수당 130,640원)

<변경 전>

- 관리원 : 1,959,594원(기본급 1,884,943원, 야간수당 74,651원)

□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편안
직무	경비원	관리원
업무	방법, 관리업무	방법은 최소화, 관리업무
감단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 교대제	주간 연속 2교대제 (야간 당직제)
인원	14명	14명
근무	1일 : 14시간	1일 : 6.5시간(주6일 근무)

시간	- 주간근로 : 12시간 - 야간근로 : 2시간	- 오전조 : 07시 ~ 14시30분 - 오후조 : 14시30분 ~ 22시 오후조는 1주 2일 야간당직 (22시 ~ 07시)
휴게 시간	10시간 (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 오전조 : 1시간 - 오후조 : 1시간 - 야간당직 : 4시간
1개월 임금	합계 : 1,959,594원 기본급 : 1,828,954원 야간수당 : 130,640원	합계 : 1,959,594원 기본급 : 1,884,943원 야간수당 : 74,651원

□ 비고

○ 장점

- 총고용 유지, 관리비 인상요인 최소화
- 야간근무시간 대폭 축소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
- 전월 관리원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감단 관련 법적 시비 해소

○ 단점

- 야간 체류인원 최소화(기존 대비 1/4 이하)로 인한 입주민 불편 가능성
- 매일 출퇴근으로 인한 노동자 부담 발생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보상을 넘어서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김형렬

1. 경비 노동에 대한 이해

- 고령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함
- 단속감시 업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움. 매우 다양한 내용의 노동을 수행함.
- 감정노동 수행
- 교대근무 다수 (야간노동 포함)
- 저임금 구조
- 장시간 노동
- 아파트 관리 업체 (위탁 업체), 아파트 입주인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속성을 갖는 다수 존재
- 고용불안

2. 직업적 위험요인

- 육체적 부담 높은 작업을 수행, 다양한 건물, 환경관리 업무, 근골격계질환 등의 위험 높음
- 야간노동, 교대근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위험,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 높음, 혈당조절의 어려움, 천식의 악화,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
- 감정노동과 폭력 경험 빈도 높음 (정신건강, 심장질환)

3.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병 기전

- 과로사의 의학적 진단명은 주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질병임.
- 이들 질환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운동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음. 이들 질환이나 행태의 기여도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음
- 또한 업무관련 요인도 잘 알려져 있어서, 장시간노동, 야간노동, 직무스트레스 등과의 관련성도 비교적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개인요인과 업무요인이 독립적으로 이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위험의 크기를 높이기도 하고, 개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적인 요인이 위 질병을 발생을 촉발하여 발생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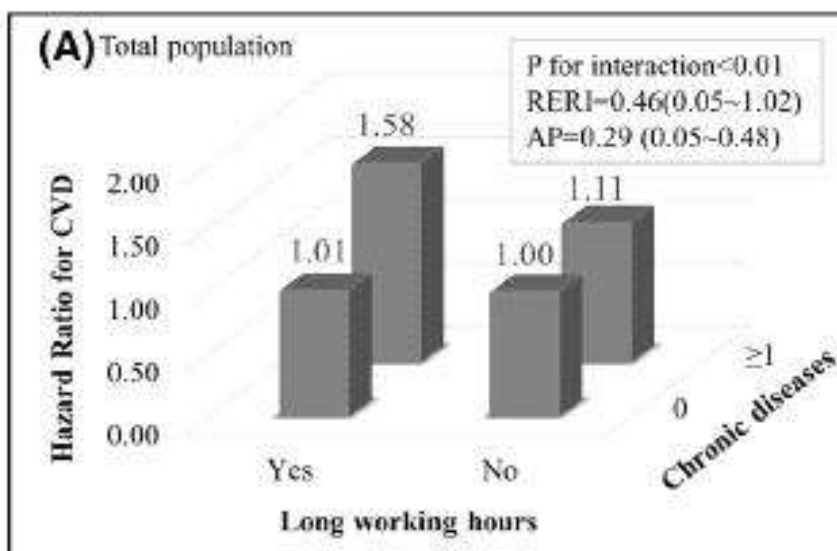
○ 개인위험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요인의 기여가 없다거나, 기여 정도를 낮게 볼 근거는 없음.

4. 뇌혈관, 심장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의 세가지 주요 쟁점

1) 개인요인에 대한 과대한 고려

The combined effect of long working hours and individual risk factors on cardiovascular disease: An interaction analysis

Wanhyung Lee¹ | Jongin Lee² | Hyoung-Ryoul Kim² | Yu Min Lee² | Dong-Wook Lee³ | Mo-Yeol Kang²



○ 만성질환만 있는 경우, 11% 위험 증가, 장시간 노동만 증가하면 1% 증가

거의 미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위험의 증가 58%.

○ 결국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다른 업무요인이 결합되어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병이 생긴다는 의미임.

○ 즉,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하게 되면, 두 위험요인이 상호작용을 해 각각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합친 것보다 약 46% 정도 추가된 위험도 상승 효과를 보였다는 것.

2) 노동시간 계산의 객관성 확보 가능한가?

○ 노동시간계산이 계약서 내용, 사업주의 진술 중심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도 제대로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최저임금 적용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감하거나 무임금 노동 형태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음.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가 있음. 활동 일지 등을 적지 못하게 하거나, 적더라도 은폐되기 쉬움.

○ 대기 형태의 노동이 있는 한, 노동시간 은폐 가능한 상황. 2인 1조 당직 형태의 근무 등의 대안 마련 필요함.

3) 가중요인에 대한 해석

○ 7가지 가중요인은 예시적 기준임. 이러한 예시적 기준에 준하는 가중요인을 다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신적 긴장 업무에 대한 가중 요인 인정이 잘 되지 않음. 조사시 신청인 의견 조사 강화, 다양한 가중요인 고려할 필요 있음.

5. 세부 분석 결과와 근로의 보상관련 지침

○ 업무시간 계산이 산재 승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인정의 갈림길이었음.

○ 아파트외 시설, 건물관리 인정 비율 낮음. 밤시간 노동과 관련됨.

○ 뇌출혈, 수행성, 급격한 변화 등이 반영되어 비교적 인정율이 높음. 심혈관 질환도 비슷함. 뇌경색, 고연령 반영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승인을 상대적으로 낮음.

○ 겨울, 여름 인정 비율 높음 => 중요 관리 지점, 예방 지점 마련 필요

- 공단 조사에서 지침 적용 잘 안 하고 있음. 독립된 수면장소, 시간 등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음.
- 경비업무 관련 근복 지침,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음. 독립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면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이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으면 업무시간으로 간주 => 조사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6. 산재승인의 증가가 노동조건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맞교대 근무, 여전히 가장 많은 형태임. 고정야간만 수행하는 경비 업무도 많음.
- 고용유지와 관련된 어려움 발생, 고용유지를 위해 장시간노동과 실제 노동 시간보다 적게 계약하는 경우, 휴식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많음
- 주간근무와 당직체계 (2인 1조 당직) 등 표준 노동조건 마련
- 보건관리 업무, 업무적합성 평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 고용과 안전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노동안전 인증 아파트” 같은 주민 참여형 방식. 중고령 노동자 고용을 장려하고, 노동안전보건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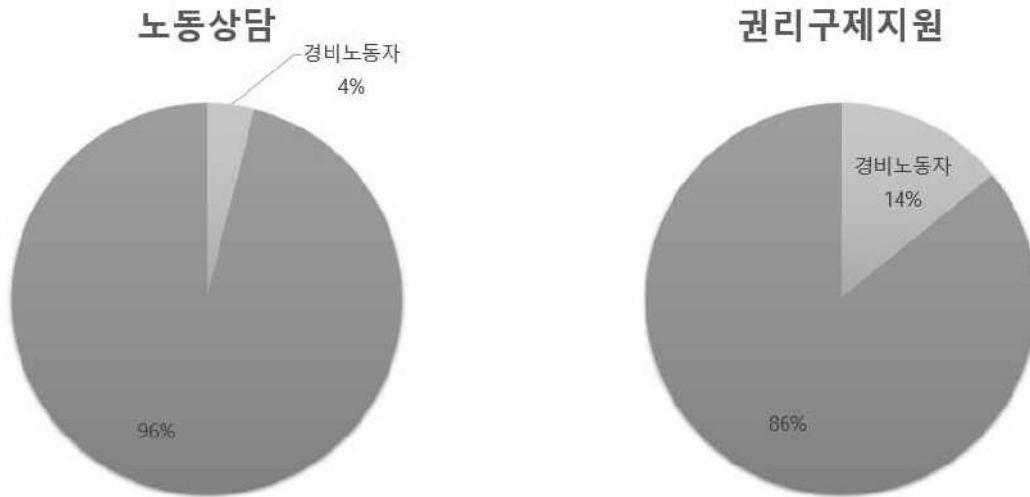
토론문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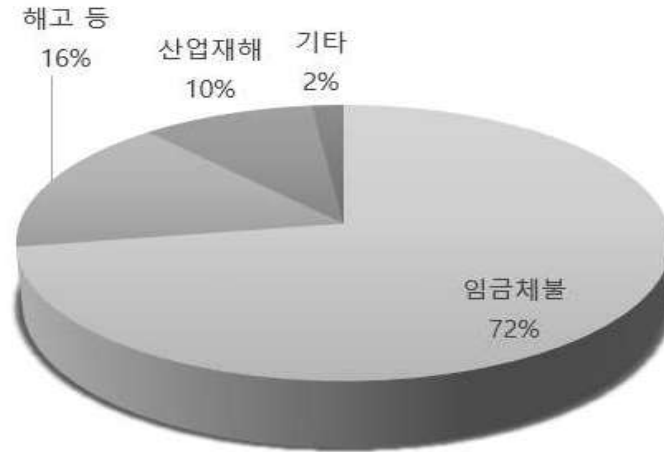
1. 서론

2015년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상담 총 79,371건 중 경비노동자 노동상담은 3,149건(약 4%)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권리구제지원이 이루어진 총 793건 중에서 경비노동자 권리구제지원이 112건(14%)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경비노동 직종에서 노동관계의 제 문제들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비노동자 권리구제지원은 주로 노동청 임금체불 및 기타 진정,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과 소송지원 등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권리구제지원 통계자료를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전체 권리구제지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지원



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비노동의 법적인 문제(해고 등, 임금체불, 산업재해)들이 몇 가지 경비노동자의 공통된 조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교대제 근무와 장시간 노동 2)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미부여 3) 이중사용자성에서 비롯된 계약상 불리한 지위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노동관계의 조건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경비노동자를 가장 극단으로 몰고 갔을 때 과로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에서 해당 상병을 산업재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사례를 통해 피재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있어 존재하는 장애물과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진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담사례를 통해 보는 산재신청의 장애물

1) 산업재해라는 일반의 인식 부족

뇌심혈관계의 경우 업무상사고와 같이 인지 가능한 특정한 사고가 없어 피상담자 스스로 상병의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병한 경우나 퇴직 후 발병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를 추단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학생의 아버님이 경비 근무 도중 쓰러져 있는 것이 늦게 발견되어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검결과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평소 담배를 안 피시던 분이 그날은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고,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2018.7)

OO APT 24시간 교대제 경비노동자로 3-4년 전부터 근무해왔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여 익 일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총 9시간이고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재해근로자가 작업 도중,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그때쯤부터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사인미상인 상황이지만 특정한 다른 질병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소지가 없어 보이고 추석연휴동안 쌓인 쓰레기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었습니다. 업무상 질병(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2020.10)

60대입니다. 지난 달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고 퇴원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회사와 협상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조정 또는 휴직은 어렵다고 거부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0.3)

2) 입증의 어려움

피재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병이 퇴직 이 후에 발생하는 경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 재해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무경력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수집이 난망합니다. 현장조사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경비근무 도중 뇌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2일부터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OO구 XX동 소재 빌딩, 24시간 교대근무, 근무도중 어지러워서 실신하고 병원에 호송되었습니다. 최근에 동료가 휴가를 가서 4일 연속 근무한 적이 있고, 업무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요양신

청을 하고 싶은데, 상담한 전문가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2016.2)

경비원인 아버님이 뇌질환으로 현재 의식불명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니 대다수 어렵다고 합니다. 관리실 동료 진술도 업무일지도 주지 않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6.10)

3) 2차 사고로 이어진 경우

뇌졸중 등으로 정신을 잃고 주변의 사물과 부딪혀 골절이나, 파열, 염좌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사고로 문의하는 경우에도, 사고의 1차적 원인을 파악하여 산재신청시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65세 아파트 경비원,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는데 의사가 엉뚱하게 뇌경색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산재가 되나요?(2020.3)

4) 고령요소와 기왕의 병력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에 해당하고, 고혈압 등 기존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판단시 신청인의 연령과 병력을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 등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 대비가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60대 친척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는데 5년 정도 일했습니다. 작년 12월 24시간 맞교대하고 새벽 교대후 퇴근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심근경색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17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고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 왔는데, 산재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2017.1)

외삼촌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용직 경비로 근무하였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어지러워 넘어졌고, 20분정도 계속 누워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인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고관절이 다쳐 수술을 하였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산재 관련해서는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2017.11)

5) 소극적인 사업장의 태도

과로 산재에 있어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관한 근무일지 등의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신청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산재신청에 협조적인 사업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무자이고 월급을 150만원 남짓 받았습니다.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2019.1)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퇴근하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2016.10)

6) 해고의 위협

근로기준법에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재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당해 해고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아서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3개월 계약을 맺고 경비로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및 장애등급 인정을 받아 휴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한 달 후에 해고할 거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2017.3)

서울 소재 경비업무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정년퇴직 후 올해부터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산재를 당하여 요양 중인데 요양기간이 연장되자 기간만료로 해고되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 (2018.7)

3. 경비노동자 뇌심혈관계 업무상질병 권리구제 지원 사례

#1 2017년 돌발과로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 직전 행적과 피해자의 병력이 산재승인의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행적을 분단위로 조사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기존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받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 2017년 심각한 과로가 9개월 이상 지속되어 급성심근경색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비인원이 감축되어서, 주차관리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의 특성상 언제 입출차를 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상태였고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곳이었지만 휴게장소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자료 구비로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3 격일제 경비노동자로 경비원수가 감소하여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피해자가 출근 중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두가지 가중요인(교대제로 일해온 점과 휴게공간이 매우 열악했음)을 강조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돌발과로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기왕증(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 약을 장복하며 관리해 온 점 등을 설명했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4 아파트 직고용 경비노동자로 근무하여오던 중 휴무일에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2개동 157세대를 담당하였고 야간 휴게시간 중 순찰로 충분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초소에서 불을 켜놓고 수면을 하였습니다.

새벽 1시까지 택배 응대를 하고 주차 관리 관련 마찰도 잦았습니다. 고혈압이 있었으나 꾸준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별도 휴게공간이 없고 야간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가중요인으로 하여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4. 과로사를 부추기는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1)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의 부재

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장시간근로로 인한 만성과로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업무공간과 독립된 휴게공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06:00~17:00 (휴게 5시간)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2020.12)
- 휴게시간이 10시간이지만, 중간 순찰 및 입주민 대응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019.7)
-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고, 격일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나 분리수거를 휴게시간인데도 지시하고 있습니다(2020.10)
- 몇몇 입주자들이 경비원들이 휴게공간에서 휴게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2019.1)
-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이 없어 경비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휴게공간을 마련해주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든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2017.5)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늘렸는데 자유롭게 사용은 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법으로 위반 요소가 없나요?(2018.1)

(2) 감시·단속적 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경비원들은 순찰 등의 방법 업무뿐만 아니라 주차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조경업무, 택배보관 등과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여 실질은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설 장소가 없음에도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맞교대제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측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2017.6)

-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다. 화단 관리, 주차관리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시·단속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2017.6)

- 방법업무를 하는 경비노동자입니다. 경비업무에 해당되지 업무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8.2)

-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회사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 노동부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안 되면 경비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016.10)

(3)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

경비노동자가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요구나 주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

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경비노동자와 1개월에서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초단기로 가져가며 계약갱신이라는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나 불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경비원입니다. 경비실에 있는데 낮에 누가 와서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가서 나가서 항의하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대표였고 업체에 이야기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2017.3)

- 3개월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점에 대표자가 인사를 안했다며 쫓아 다니며 욕설을 했습니다. 참다가 항의를 했는데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각각 벌금 5만원 납부했고 재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2015.5)

- 과중한 업무로 관리사무소와 대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용역회사에서 시말서를 요구하였고 거부하였더니 12월 말로 계약 만료니 나가달라고 합니다.(2020.11)

(4) 과중한 업무

아파트 등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경감을 위해 경비노동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한 명의 경비노동자가 담당하는 호수가 늘어 업무부담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경비원이 총 20명이었는데 4명이 퇴사하여 현재는 16명입니다. 이러한 인력 변동사항과 코로나 국면이라는 상황 하에서 원래 담당이었던 1동 뿐 아니라 2동까지 맡게 되어 분리수거, 청소, 경비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과다해졌을뿐 아니라, 그에 따라 업무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휴게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2020.11)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 90세대 정도를 경비하는데, 인원감축으로 저와 다른 1명이 270세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2018.2)

- 입주민입니다. 총 26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 절반의 인원을 감원한다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는데 게시판 구석에만 붙여놓아서 늦게 알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2017.12)

- 경비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경비 업무만이 아니라, 조경이나 보도블럭 수리 등 관리 업무를 지시하고 있고, 아파트가 너무 커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용역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계약상 업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관리소장은 본인이 시키는 것이 업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는 여러번 가봤으나, 사용자 편을 드는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2016.5)

(5) 입주민들의 민원

경비노동자들은 아파트 입주민이 수시로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의 민원 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야간에 별도의 휴게 공간이 아닌 근무 장소(경비 초소)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대에 인터폰 응대를 해야하며, 입주민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020.10)

- 경비노동자입니다. 휴게시간에 독립된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근무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해야만 하는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2021.1)

5.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본 개선점

(1) 경비노동자 휴식권 보장

경비노동자의 경우 업무와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휴게시간에 수시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업무가 주어져 쉬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편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업무장소와 독립적으로 경비노

동자가 설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1일 8시간 이상 사업장에 상주하는 교대제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들의 경우 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한 과로의 위험성이 큼니다. 업무로부터 독립된 휴게실이나 이에 준하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규정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2) 감시·단속적 승인 과정에서 근로감독 강화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2021.2.)]을 내놓았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신청내용을 구체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감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부 지청 등 실무 단위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현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경비노동자가 고령의 노동자라거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등 신청인이 독립적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현장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료제공, 현장 조사 방문 등을 거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 내용의 보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내용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건강검진 주기 단축

산안법상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경비노동자의 경우 통상 짧게는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비노동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이고 고령이라는 점, 야간근로와 장시간근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여 과로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참고 자료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망
(뇌·심혈관계 질병) 사건(최종) 보고서(2015-2020),
분석 최종 보고서**

본 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임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망(뇌·심혈관계 질병) 사건 분석 (2015~2020)

(최종) 보고서

2021. 02.



목 차

I. 사업개요	7
II. 업무상 질병(사망) 인정기준 및 사건 조사 절차	8
III.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분석	23
IV.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59
V. 업무상질병판정 인정사실 및 판정결과 분석	83
VI.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제도	112
VII. 경비노동자 관련 의원실 입수 자료	121
VIII. 종합 분석	124
붙임1.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재해조사시트	131

표 목 차

II. 업무상 질병(사망) 인정기준 및 사건 조사 절차	8
<표II-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9
<표II-2> 고용노동부 고시 :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1
<표II-3> 근로복지공단 지침 :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변화	14
<표II-4> 근로복지공단 지침 : 직종별 판단요령(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20
III.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분석	23
<표III-1> 2015~2020.6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	23
<표III-2>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분석 현황	24
<표III-3> 공단 제출 인정률 및 판정서 분석 인정률 비교	24
<표III-4> 뇌심혈관계질환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 승인률	25
<표III-5> 2018~2019년 재신청 사건 분석 현황	26
<표III-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인정률 현황	27
<표III-7> 2015~2019년 뇌심혈관질환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29
<표III-8> 2016~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업종별 판정 현황 비교	30
<표III-9> 2015~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판정 현황 비교	30
<표III-10> 고용노동부 업종별 산업재해(질병, 사고) 발생 현황(2015~2020.9.) 비교	32
<표III-11>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및 기타의 사업 사망자 수 비교	33
<표III-12>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연령별)	39
<표III-13>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사망 재해, 업종별·규모별 발생 현황	41
<표III-14> 뇌심혈관 질환 건물등종합관리사업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42
<표III-15> 업무상질병판정서 경비노동자 연령별 인정 현황	43
<표III-16> 고용노동부 연령별, 성별 뇌심혈관 질환, 사망재해 발생 현황	43
<표III-17>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44
<표III-18>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46
<표III-19> (세부 업종별/연도별) 뇌심혈관 사망재해 업종별 순위	46
<표III-20>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대비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47
<표III-21>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대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49

<표Ⅲ-22>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 및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재해 현황	52
<표Ⅲ-23>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연령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53
<표Ⅲ-24>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종류별 현황	54
<표Ⅲ-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세부분류 현황	55
<표Ⅲ-26> 업무상질병 재해 규모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56
<표Ⅲ-27> 뇌심혈관질병 구분 및 연령별 발생 현황	57
<표Ⅲ-28>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재해발생 현황	58
<표Ⅲ-29> 산재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재해발생 현황	58
IV.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59
<표Ⅳ-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59
<표Ⅳ-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60
<표Ⅳ-3>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 현황	61
<표Ⅳ-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71
<표Ⅳ-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등 비교	73
<표Ⅳ-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75
<표Ⅳ-7> 사업장 유형별 업무시간, 수면시간, 야간시간 등 비교	76
<표Ⅳ-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77
<표Ⅳ-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병·심혈관질병 발생현황 비교	78
<표Ⅳ-10> 고용노동부 연도별 뇌혈관·심혈관질병 사망재해 발생현황	78
<표Ⅳ-11> 경비노동자 과로사 월별 발생현황	79
<표Ⅳ-12> 경비노동자 과로사 계절별 발생현황	79
<표Ⅳ-13>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발생현황	81
V. 업무상질병판정서 인정사실 및 판정결과 분석	83
<표Ⅴ-1> 근로시간과 뇌심혈관질병 관련 기존 연구 내용(보고서 표2-1)	107
<표Ⅴ-2> 장시간노동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2)	108
<표Ⅴ-3>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 관련 기존연구 내용(보고서 표2-3)	109
<표Ⅴ-4>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4)	110
<표Ⅴ-5> 교대근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5)	110

VI.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제도	112
<표VI-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감시·단속적 근로)	112
<표VI-2>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신청 및 승인 추이(고용노동부)	113
<표VI-3> 감시·단속적 신청건수, 처리건수(의원실 자료)	114
<표VI-4>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이	118
VII. 경비노동자 관련 의원실 입수 자료	121
<표VII-1>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제한) 위반 사건 현황	122
<표VII-2> 2015~2020년 상반기 임금체불 신고 현황	123

그림 목 차

II. 업무상 질병(사망) 인정기준 및 사건 조사 절차	8
<그림II-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	22
III.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분석	23
<그림III-1> 2015~2019년 뇌심혈관질환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29
<그림III-2>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현황(업종별)	33
<그림III-3>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현황(질병 종류별)	35
<그림III-4>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현황(규모별)	37
<그림III-5>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45
<그림III-6>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환 사망만인률 비교	48
<그림III-7> 2010~2019년 업무상질병 사망만인률 비교	48
<그림III-8>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환 만인률 비교	50
<그림III-9> 2010~2019년 업무상질병 만인률 비교	50
IV.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59
<그림IV-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발생 현황	60
<그림IV-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61

<그림IV-3>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62
<그림IV-4>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업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63
<그림IV-5>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수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64
<그림IV-6>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65
<그림IV-7>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66
<그림IV-8>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67
<그림IV-9>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68
<그림IV-10>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69
<그림IV-11>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70
<그림IV-12>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71
<그림IV-13>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수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72
<그림IV-1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인정·불인정)	72
<그림IV-1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변화 추이	74
<그림IV-1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75
<그림IV-17> 아파트·아파트외 사업장 평균 업무시간 비교	76
<그림IV-1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77
<그림IV-1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유형별 비교	78
<그림IV-20> 경비노동자 월별 인정·불인정 현황	80
<그림IV-21> 아파트·아파트외 사업장 유형별 월별 발생현황	80
<그림IV-22>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 장소 현황	82
<그림IV-23> 경비노동자 과로사 유형별 발병장소 현황	82

VI. 감사·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제도 112

<그림VI-1> 감사·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절차	114
-------------------------------------	-----

1. 목적 및 분석 방법

- KBS탐사보도국(이하 ‘KBS’),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이하 ‘의원실’), 노무법인필(이하 ‘노무법인’)은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2020년까지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업무상 사망(이하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요약본(항목별 제출 자료)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의 업무상 사망 사건 분석을 통해 KBS는 ‘과로로 죽는 경비원들(가제)’에 대한 탐사보도를 진행하고, 의원실은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위한 토론회, 정책 방안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과 연도별 전체, 업종별 과로사 사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연도별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 사건 가운데 경비노동자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특징 및 노동실태 파악,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8.1.1.)」 개정 전·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인정·불인정률 및 인정사실, 판정 내용에 등에 대하여 항목별 비교 분석,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산업재해 전반에 걸친 자문, 입수 자료 제공 등 분석 연구를 2020. 12~2021. 2.까지 진행하였다.
- 분석기관은 노무법인필이 수행하였으며, 연구원은 유상철 노무사(책임), 김재광 노무사, 김재민 노무사, 박경환 노무사가 수행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는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25.0.0”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인정, 불인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비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및 재해발생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수 및 사업장 유형별 분석, 연도별 업무시간 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정, 불인정 사건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사고로 인해 발병된 “사고성 질병”과 노동계약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거가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 특정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판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의 법률판단을 함에 있어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며, 그 인정이 의학적 소견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학적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정도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내재하는 각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들 유해요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업무수행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병원인과의 인과관계 및 그 발병원인과 결과로서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로 보고 있다.
- **(2008.7.~2013.7)** 산재법 및 하위 법령은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은 1982년 노동부 예규로 마련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08. 7. 1.**부터 개정·시행된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과거에 시행규칙에 있었던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인정기준’ 등을 삭제하였다. 단기간 업무상 부담과 만성 과중업무의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종래 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던 방식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인 지역본부별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¹⁾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 **(2013. 7.~2017. 12.)** **2013. 7. 1.**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 속에서 직업성 암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이 추가됨으로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확대되었다. 특히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만성과로 판단 기준에 업무시간 기준을 도입하였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아지는 점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불규칙적인 근무형태, 고온저온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등을 말하며, 특히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서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량·업무강도·책임 등 업무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2018. 1. 1.~현재) 2017. 12.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제시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만성과로 기준의 다양화, 근로시간에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구체화, 야간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할증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개인 질병이라는 확실한 반대근거가 없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추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요령과 기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8.1.1.)」에 명시하였다.

<표II-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p>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p> <p>2. 업무상 질병</p>	<p>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p>

<p>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p> <p>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p> <p>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액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p> <p>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p> <p>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p>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	---

○ 산재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

<p>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p> <p>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은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
--

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편 시행령 [별표3] 제13호에서는 포괄 규정을 두어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병이거나 명시된 노출기준과 노출수준 등 양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 특성과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업무상 질병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량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2013년, 2017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표Ⅱ-2> 고용노동부 고시 :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비고
제2009-38호	<p>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u>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u>”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u>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u>”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p> <p>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u>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u>”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p> <p>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u>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u>” 및 “<u>만성적인</u>”</p>	시행일 2009. 09.25.

	<p>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p> <p>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p> <p>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p> <p>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p> <p>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p>	
<p>제2013-32호</p>	<p>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p> <p>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p> <p>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p> <p>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p>	<p>시행일 2013. 07.01</p>

제2017-117호	<p>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p> <p>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p> <p>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p> <p>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p>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행일 2018. 01.01.
------------	---	------------------------

	<p>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p> <p>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요령과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시의 개정에 맞춰 2013. 7. 31.과 2018. 1. 1. 지침을 개정하였다. 현재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2018. 1. 1. 개정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표II-3> 근로복지공단 지침 :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변화

구분 (판단기준)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3. 07. 31.)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8. 01. 01.)
돌발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성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질병 발생(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구증상 포함)이 만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이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p>-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시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에 따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p>좌동</p>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p>-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p>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p>-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p>	<p>좌동</p>

<p>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단기과로)</p>	<p><종합검토 원칙></p> <p>※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p> <p>○ 뇌심혈관질환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p> <p>○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평가</p> <p>-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전 업무량과 비교</p> <p>-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업무시간과 비교</p>	<p><종합검토 원칙></p> <p>※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p> <p>※ 업무시간에서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평가</p> <p>※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평가</p> <p>-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p> <p>-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p> <p>-다만,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 업무량 해당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장시간 근로한 날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p> <p>-만약 해당 업무 종사시간이 짧아 12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p>
-------------------------------------	--	--

<p>○ “<u>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u>”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p> <p>-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p> <p>-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와 <u>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및 업무에 따른 부담 정도, 업무부담의 변화 등과 비교</u></p> <p>○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되</p> <p>-해당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체질 등을 고려하여 발병 영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p>	<p>간을 기준으로 발생 전 1주와 발생 전 2주부터 산정 가능 기간까지를 비교하여 평가</p> <p>○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p> <p>-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음</p> <p>○ “<u>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u>”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u>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u></p> <p>○ 특정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p> <p>-<u>고온순화*</u>의 경우 노출 후 4~7일부터 시작되어 12~14일에 완성되며, 고온 노출이 중지되더라도 고온순화에 의한 효과는 약 2주 정도 지속되며 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짐</p> <p><u>*고온순화 : 고온 환경에 적응해가는 생리학적인 단계</u></p> <p>-<u>급성스트레스반응은 보통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 해결 후 6개월 이내에 보통 증상이 좋아짐</u></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	---

<p>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만성과로)</p>	<p><종합검토 원칙>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p> <p>○ 육체적·정신적 부담 요인의 누적을 가져온 업무적인 부담 요인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단</p> <p>○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시 그 이외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량, 강도 등)을 고려</p> <p>○ 업무시간 평가는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확인한 후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평가</p>	<p><종합검토 원칙> ※ <u>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u> ※ <u>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u> ※ <u>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u> ※ <u>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u></p> <p><업무시간> ○ <u>“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u> ○ <u>“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u>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u>그 이외의 업무부담가중요인(교대제, 휴일, 근무일정, 작업환경, 작업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고려</u> ○ 업무시간 평가는 재해조사서에 따라 발병부터 12주전까지 매일 하루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차례대로 평가</p>
-----------------------------------	---	--

○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아지는 점과 업무부담 과중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업무부담 과중 요인은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불규칙적인 근무형태, 고온·저온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등을 말하며

-특히,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서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량·업무강도·책임 등 업무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산입

○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함.

○ 발병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 없음

좌동

○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2주 미만)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근무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휴일 :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p>○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p> <p>-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노동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p> <p>*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직업군 분류</p> <p>-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p> <p>○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p> <p>-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p> <p>*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면서 출장 기간이 매우 짧아 시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생리학적 부담을 함께 고려</p> <p>○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p> <p>-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도,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검토하여 평가할 것</p>
--	--

○ 경비노동자에 대한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3. 7. 1. 지침은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라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공단은 2018. 1. 1. 지침을 개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종별 판단요령 :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였다. 실무적으로 아파트경비노동자뿐 아니라 아파트 외 주거지(빌라, 오피스텔 등), 공공기관(학교, 연구소 등), 상업시설(상가, 건물, 공장, 신축건설현장 등)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지침의 판단요령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표II-4> 근로복지공단 지침 : 직종별 판단요령(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구분	직종별 판단요령(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성과로)	<p>(1)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p> <p>○ 아파트 주민과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이후 사태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충격만을 기준으로 판단</p> <p>○ 육체적으로 무리 힘의 급격한 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의 제설작업 - 가을철 낙엽치우기 등 청소 - 봄과 여름철의 화단과 정원수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돌쌓기 등 시설물 수리업무 - 택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p>○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겨울철 야간 순찰업무 수행시의 한랭의 정도, 경비실의 연속작업 시간 중의 난방의 상황 등</p>
단기 과로	<p>(2) 단기 과로</p> <p>○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는 강도가 30% 이상 증가 여부와 복합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중개업무 - 가을의 낙엽청소 및 겨울철의 제설작업 - 봄여름가을의 화단 가꾸기와 정원수 가꾸기 -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의 직접 운반업무 - 주차관리를 위하여 정차된 차량 밀기 등
만성 과로	<p>(3) 만성적인 과중 업무</p> <p>○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 <u>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u> - <u>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으로 간주</u> <p>○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어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판단</p> <p>○ <u>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판단</u></p> <p>○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p>

○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에 따른 재해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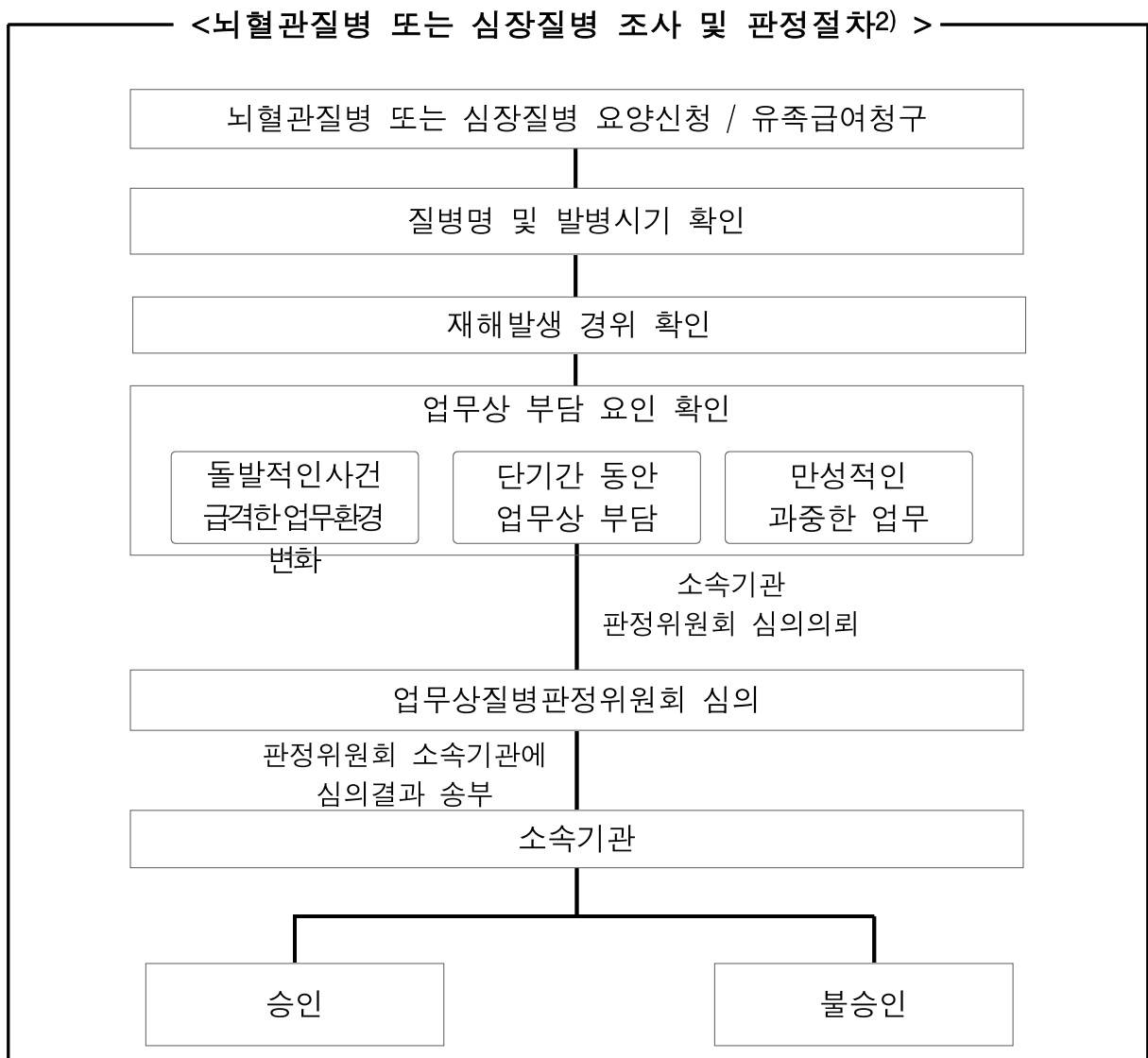
2. 업무상 질병(사망) 사건 조사 및 판정 절차

○ 업무상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이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사 재활보상부 담당자가 지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재해조사시트’에 근거하여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재해조사를 마치면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에 심의 의뢰를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담당자는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심의 결과가 소속지사에 통보되면, 지사 담당자는 유족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재해 조사는 ① 질병명·발병(사망)시기·발병(사망)원인 확인, 기존질병 확인, ② 재해발생 경위 확인, ③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확인, ④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발병 당일, 발병 전 1주,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근무경력, 직전 타 직장 경력, 담당직 책 및 책임 정도, 업무시간강도,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 근무시간, 교대제근무 여부, 작업 방법·강도, 육체·정신 노동 등 노무형태, 내·외근 및 출장 여부, 휴게시간 등을 조사, ⑤ 의학적 자문, 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를 통해 업무상 질병(사망)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Ⅱ-1>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18.1.1.)」 인용

1.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인정률

(1)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2015~2020)

○ 근로복지공단이 2020. 12. 22. 및 2021. 2. 19.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사건)³⁾ 산재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과 로 사	신청	36	36	26	33	46	45	222
	인정	10	5	6	21	22	31	95
	인정률	27.8%	13.9%	23.1%	63.6%	47.8%	68.9%	(전체평균) 42.8%
		(평균) 21.4%			(평균) 59.7%			

* 통계기준

- 근로복지공단 최초 1회차 결재건 기준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또는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중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자료
- 과로사는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건

<제공> 용혜인 의원실(2020. 12.), 용혜인 의원실(2021. 2.)

-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노동자'로 분류하여 제출한 현황은 경비노동자 외 관리소장, 청소, 시설 유지관리, 주차원, 조경 등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현황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업무상질병판정서 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5~2017년까지 신청건 수 98건 중 승인건 수 21건으로 승인률 21.4%이며, 2018~2020년까지 신청건 수 124건 중 승인건 수 74건으로 승인률 59.7%이다. 2015~2020년까지 평균 승인률은 42.8%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8. 1. 1.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후 승인률은 2.79배 증가하였다.
- 신청건 수는 2015년~2017년까지 98건, 2018~2020년까지 124건으로 1.27배 증가하였다.

3)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과로사'로 표기하였다.

(2) (업무상질병판정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2015~2020년)

- 근로복지공단이 2020. 11. 24. 및 2021. 1. 22.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230건 (판정서 미제공 1건, 자살 3건 제외) 중 다른 직종을 제외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을 분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인정률 기준은 ‘최초 1회차 결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심의 사건(14건, 2018년 13건, 2019년 1건)의 인정률과 구분하여 166건의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분석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서를 통해 미확인되는 사항 및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2015~2020년까지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재해조사서를 요청하였고, 2020. 12. 22. 및 2021. 1. 22.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⁴⁾

<표Ⅲ-2>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분석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과 로 사	사건	30	21	18	30	32	35	166
	인정	9	5	4	21	17	25	81
	인정률	30.0	23.8	22.2	70.0	53.1	71.43	(전체평균)
		(평균) 24.6%			(평균) 64.95%			48.80

- 2015~2017년까지 사건 수 69건 중 승인건 수 18건으로 인정률 24.6%이며, 2018~2020년까지 사건 수 97건 중 승인건 수 63건으로 인정률은 64.95%이며, 2015~2020년까지 평균 승인률은 48.80%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평균 인정률은 24.6%, 2018~2020년 평균 인정률은 64.95%로 분석되었다. 2018. 1. 1.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후 2.64배 인정률이 증가하였다.
- 신청건 수는 2015년~2017년까지 69건, 2018~2020.6월까지 97건으로 1.41배 증가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사건 산재현황>과 <2015~2020년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Ⅲ-3> 공단 제출 인정률 및 판정서 분석 인정률 비교

구분	2015	2016	2017	평균	2018	2019	2020	평균	전체 평균
공단 자료	27.8	13.9	23.1	21.4	63.6	47.8	76.0	59.6	42.80
판정서분석	30.0	23.8	22.2	22.2	70.0	53.1	71.43	64.95	48.80

4)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실에서 요청한 필요 항목에 한하여 제출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15~2020.6월 경비노동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사건) 산재현황>의 경우 업종분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경비노동자 외 다른 직종(관리소장, 시설관리, 조경, 청소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의 신청건 수, 인정률은 본 연구사업을 통해 분석한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현황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경우 2018년 이후 신청건수는 1.41배 증가하였고, 인정률은 2018년 이후 2.6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2019.11.30.)」에서 “전체 신청건의 직종별 빈도는 관리자 525건(1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1건(6.4%), 사무 종사자 157건(5.2%), 서비스 종사자 216건(7.2%), 판매 종사자 90건(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건(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1건(1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76건(15.9%), 단순 노무 종사자 948건(31.7%), 특수고용 노동자 17건(0.6%)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세부 직종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신청건수는 총 157건, 승인률은 61.8%로, 전체 신청건수의 승인률인 41.3%에 비하면, ‘경비원 및 검표원’의 승인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기별 승인률은 <표 V-26>과 같음”**이라고 분석하였다.

<표Ⅲ-4> 2018.1.~2019.6. 뇌심혈관계질병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 승인률

<표 V-26> 2018년 1월-2019년 6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질병 최초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반기별 승인률

반기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2018년 상반기	45	25	55.6
2018년 하반기	53	35	66.0
2019년 상반기	59	37	62.7
전체	157	97	61.8

(3) 경비노동자 과로사 재신청 사건 분석 현황(2018~2019)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인정률은 ‘최초 1회차 결재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 뇌·심혈관계질병 과로 인정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이전 3년간 불승인 사건을 대상으로 재신청⁵⁾을 통해 재심의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경비노동자의 재신청 사건은 14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석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보도자료)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2018.4.16.) 참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뇌심혈관계 질병 과로 인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3건, 2019년 1건을 재심의하였으며, **2018년 13건 중 10건 인정되어 인정률 76.92%, 2019년 1건 중 1건 인정되어 인정률 100%이며, 평균 78.57%의 인정률을 보였다.**

<표Ⅲ-5> 2018~2019년 재신청 사건 분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재 신 청	(최초)사건	1	10	3			14
	인정	0	0	0			0.00
	재신청				13	1	14
	인정				10	1	11
	인정률				76.92%	100%	78.57

- 2015~2017년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던 사건이 2018년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개정 후 인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에 대한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경비노동자의 만성과로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적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 인정률⁶⁾과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비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분류(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u>경비업무</u>

6)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6~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종합

○ 근로복지공단의 <2015~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6> 2015~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인정률 현황 (단위: 건, %, %p)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계	9,781	4,387	44.9	9,479	4,182	44.1	8,715	4,607	52.9
뇌심혈관질병	1,970	462	23.5	1,911	421	22.0	1,809	589	32.6
근골격계질병	5,833	3,155	54.1	5,345	2,885	54.0	5,201	3,199	61.5
기타질병	1,978	770	38.9	2,223	876	39.4	1,705	819	48.0
(COPD)	669	303	45.3	1,177	456	38.7	739	327	44.2
(레이노증후군)	480	171	35.6	129	13	10.1	59	10	16.9
(직업성 암)	188	91	48.9	228	134	58.8	303	190	62.7
(정신질병)	150	46	30.7	169	70	41.4	186	104	55.9
(세균성질병)	72	36	50.0	109	56	51.4	75	50	66.7
(간질병)	53	18	34.0	52	25	48.1	14	3	21.4
(기타)	366	105	28.7	359	122	34.0	329	135	41.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계	10,006	6,306	63.0	14,206	9,173	64.6	14,422	9,085	63.0
뇌심혈관질병	2,241	925	41.3	3,077	1,265	41.1	2,429	929	38.2
근골격계질병	6,375	4,416	70.0	9,524	6,844	71.9	10,000	6,827	68.3
기타질병	1,390	920	66.2	1,605	1,064	66.3	-	-	-
(COPD)	338	308	91.1	319	278	87.1	-	-	-
(레이노증후군)	35	10	28.6	2	1	50.0	-	-	-
(직업성 암)	302	220	72.8	386	286	74.1	477	335	70.2
(정신질병)	226	166	73.5	325	225	69.2	558	375	67.2
(세균성질병)	81	51	63.0	75	52	69.3	54	40	74.1
(간질병)	22	4	18.2	17	3	17.6	27	12	44.4
(기타)	386	161	41.7	481	219	45.5	877	567	64.7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 수는 2015년 9,781건에서 2016년 9,479건, 2017년 8,71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0,006건, 2019년 14,206건, 2020년 14,42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심의건 수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체 인정률은 2015년 44.9%, 2016년 44.1%, 2017년 52.9%, 2018년 63.0%, 2019년 64.6%, 2020년 63%로 상승하였다. 뇌심혈관 질병의 인정률은 2015년 23.5%, 2016년 22.0%, 2017년 32.6%이었으며,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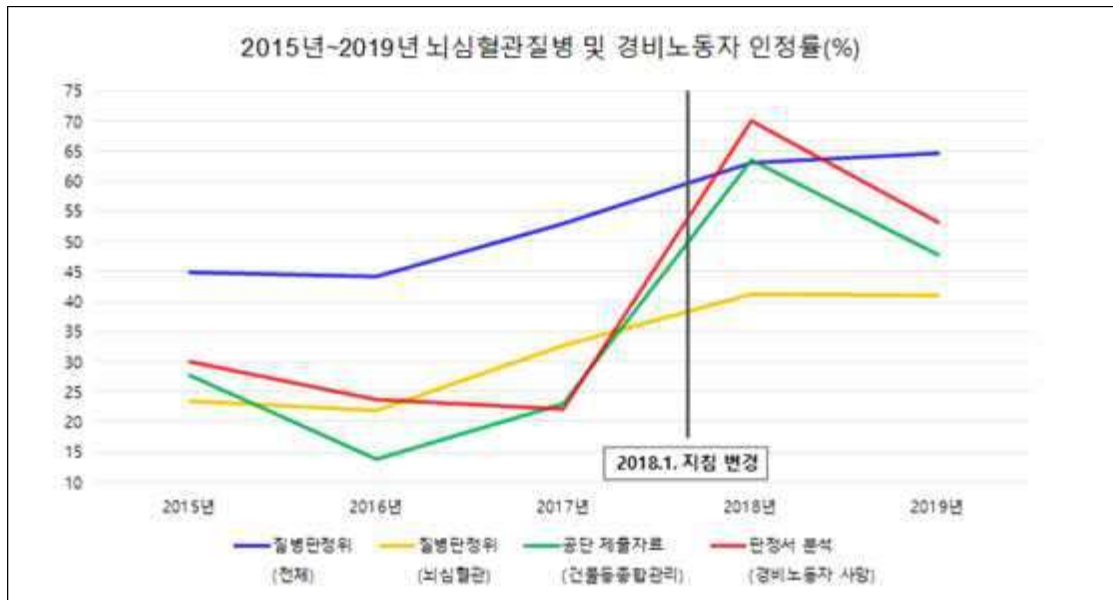
- 2015~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건 수,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판정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정률을 분석하면, 2018년 이후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개정 후 전체적으로 인정률이 상승한 경향을 보이며,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뇌심혈관질병 전체 인정률 대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체 판정건 수는 2018년에 비해 14,206건으로 전년 동기 10,006건 대비 4,200건(42.0%) 증가하였고, 인정률도 64.6%로 전년 동기 63.0% 대비 1.6%p 상승하였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3,077건으로 836건(37.3%) 증가, 인정률 41.1%(△0.2%p)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 판정건 수, 인정률, 뇌심혈관질병 인정률은 질병 사건과 사망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전체 인정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병 인정률,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질병(사망) 인정률,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인정률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15~2017년까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은 23.5%, 22.0%, 32.6%로 평균 29.9%였던 반면,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로 평균 40.20%를 보여 2018년 이후 1.34배 증가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 인정률은 2.64배 상승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부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7> 2015~2019년 뇌심혈관질병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단위 : 사건수, %)

뇌심혈관 질병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정 ⁷⁾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질병판정위(전체)	9,781	4,387	44.9	9,479	4,182	44.1	8,715	4,607	52.9	10,006	6,306	63.0	14,206	9,173	64.6
질병판정위(뇌심)	1,970	462	23.5	1,911	421	22.0	1,809	589	32.6	2,241	925	41.3	3,077	1,265	41.1
공단 제출자료(건물등)	36	10	27.8	36	5	13.9	26	6	23.1	33	21	63.6	46	22	47.8
판정서 분석(경비)	30	9	30.0	21	5	23.8	18	4	22.2	30	21	70.0	32	17	53.1

<그림Ⅲ-1> 2015~2019년 뇌심혈관질병 및 경비노동자 인정률 비교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건 수, 공단제출 자료 신청건 수, 판정서 분석자료는 사건 수 기준

2. 뇌심혈관 사망 재해 업종별 현황⁸⁾과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현황

(1)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종별 판정 현황(2015~2019)

○ 근로복지공단의 2016년, 2017년, 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자료는 업종 분류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종분류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내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Ⅲ-8> 2016~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업종별 판정 현황 비교 (단위: 건, %)

연도	구분		업종별 구성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보 험업
2016	판정	9,479	15.3	36.3	0.2	8.8	6.2	0.5	0.1	0.3	31.7	0.6
	인정률	44.1	38.6	52.8	40.0	53.9	32.4	57.8	60.0	46.9	36.3	34.4
2017	판정	8,715	12.6	38.3	0.3	9.8	5.4	0.4	0.0	0.4	31.8	0.9
	인정률	52.9	51.9	60.2	39.1	60.8	42.2	63.9	100	52.6	43.9	46.3
2018	판정	10,006	7.3	40.8	0.2	10.5	6.4	0.2	0.1	0.5	33.4	0.5
	인정률	63.0	81.1	67.6	57.9	69.4	53.7	60.9	83.3	63.0	53.4	59.3
2019	판정	14,206	4.3	38.2	0.1	13.1	6.3	0.3	0.0	0.3	36.8	0.6
	인정률	64.6	84.5	69.8	50.0	70.5	56.3	59.5	50.0	54.3	56.7	38.6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주요 질병 인정률은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내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Ⅲ-9> 2015~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판정 현황 비교

구분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제조업		기타의사업		제조업		기타의사업	
	인정률	증감	인정률	증감	인정률	증감	인정률	증감
2015	28.3	-	22.0	-	59.5	-	44.3	-
2016	27.6	△0.7	19.9	△2.1	59.8	0.3	45.2	0.9
2017	37.5	9.9	30.7	10.8	66.1	6.3	51.1	5.9
2018	41.9	4.4	41.3	10.6	73.3	7.2	39.1	△12.0
2019	41.0	△0.9	41.3	0.0	75.6	2.3	43.7	4.6

8)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6~20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종합

-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업종분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자료 중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또는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출하였으나, 직종에 따른 현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2015~2020.9.)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의 산출 대상 재해는 매년 1~12월까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현황 자료이다.
-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 및 사망 재해의 현황과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경비노동자 과로사(사망) 사건 현황을 비교하여,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의 업종별 비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①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현황(질병 및 사고) : 업종별(재해자 수, 사망자 수)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 기타(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2015~2020.9월까지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의 재해자 수, 사망자 수는 질병,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업종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기타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8.4%, 2016년 49.8%, 2017년 48.4%, 2018년 52.7%, 2019년 54.7%, 2020년 56.8%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내 경비노동자의 질병 사망자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질병 사망자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Ⅲ-10> 고용노동부 업종별 산업재해(질병, 사고) 발생 현황(2015~2020.9.) 비교

(단위 : 명, %, ‰, ‰p, ‰)

구 분	2015. 1~12월			2016. 1~12월			2017. 1~12월			2018. 1~12월			2019. 1~12월			2020. 1~9월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총 계	17,968 ,931	7,919	0.04	18,431 ,716	7,876	0.04	17,968, 931	9,183	0.05	19,073 ,438	11,473	0.06	18,725, 160	15,195	0.08	18,818 ,236	80,299	0.43
		855	0.48		808	0.44		993	0.54		1,171	0.61		1,165	0.62		1,571	0.83
광 업	11,615	1,324	11.40	11,153	1,368	12.27	11,615	1,739	15.53	11,697	2,030	17.35	11,108	2,357	21.22	10,729	2,074	19.33
		413	355.57		349	312.92		447	399.14		465	397.54		389	350.20		331	308.51
제 조 업	4,161, 536	3,071	0.07	4,236 ,653	2,992	0.07	4,161 ,536	3,657	0.09	4,152, 058	4,419	0.11	4,045, 048	5,590	0.14	4,030, 232	21,686	0.54
		177	0.43		176	0.42		224	0.54		255	0.61		286	0.71		346	0.86
건 설 업	3,358, 813	845	0.03	3,152, 859	869	0.03	3,358, 813	931	0.03	2,943, 742	1,200	0.04	2,487, 807	1,913	0.08	2,114, 105	19,365	0.92
		56	0.17		55	0.17		73	0.24		85	0.29		89	0.36		435	2.06
전기·가스 수 도 업	64,244	10	0.02	72,940	9	0.01	64,244	13	0.02	76,967	12	0.02	76,687	14	0.02	78,938	73	0.09
		3	0.47		3	0.41		2	0.26		4	0.52		4	0.52		6	0.76
운수·창고 통 신 업	805, 403	324	0.04	836, 471	349	0.04	805, 403	340	0.04	873, 232	514	0.06	910, 585	709	0.08	931,560	5,437	0.58
		43	0.53		47	0.56		50	0.60		77	0.88		94	1.03		116	1.25
임 업	86,565	34	0.04	93,493	44	0.05	86,565	31	0.04	89,751	23	0.03	91,682	32	0.03	98,948	758	0.77
		1	0.12		4	0.43		3	0.36		3	0.33		1	0.11		12	1.21
기타의 사업	8,701, 072	2,244	0.03	9,180, 379	2,182	0.02	8,701 ,072	2,367	0.02	10,058, 930	3,166	0.03	10,239, 876	4,472	0.04	10,685, 789	30,178	0.28
		151	0.17		166	0.18		174	0.18		262	0.26		288	0.28		308	0.29
기 타 ⁹⁾	779,683	67	0.01	847,768	63	0.01	779,683	105	0.01	867,061	109	0.01	862,367	108	0.01	867,935	728	0.08
		11	0.14		8	0.09		20	0.24		20	0.23		14	0.16		17	0.20

p)

9) 기타는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임

②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현황 : '뇌심혈관질병', '기타의 사업'(질병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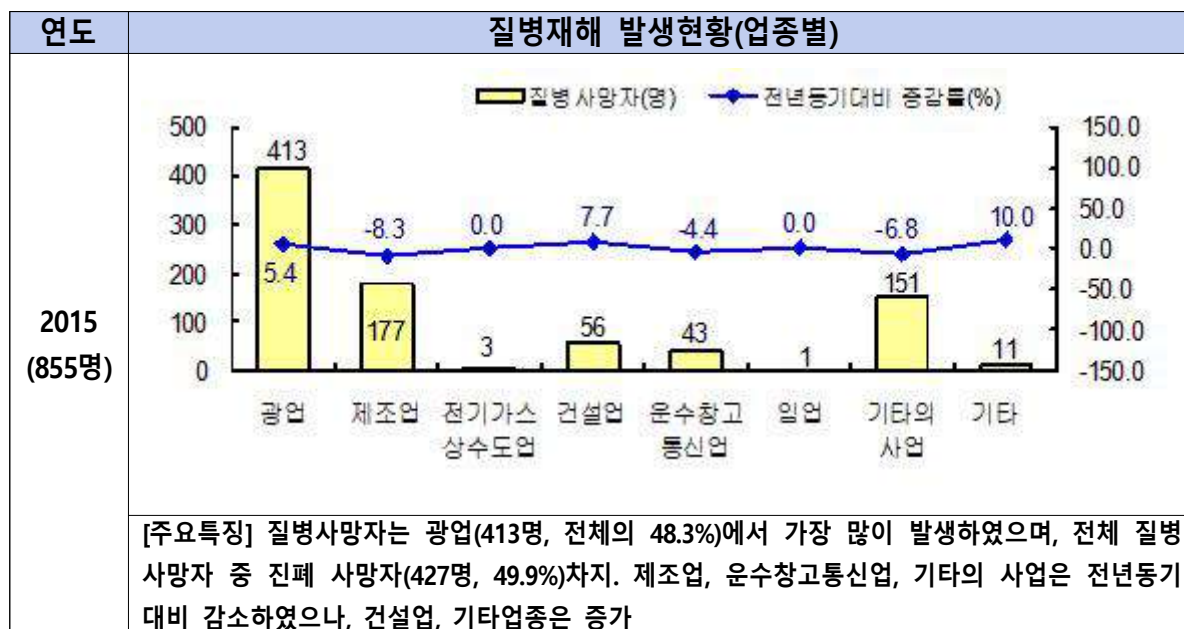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질병재해 발생현황을 업종별 사망자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뇌심혈관 질병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9월 기준 전체 질병 사망자 911명 중 뇌심혈관 질병 사망자는 369명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다. 2020.9월 기준 '기타의 사업'은 전체 질병 사망자 911명 중 216명으로 23.71%를 차지하고 있다. 2020. 10~12월까지 현황을 추가하면 2020.9월 기준보다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11>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및 기타의 사업 사망자 수 비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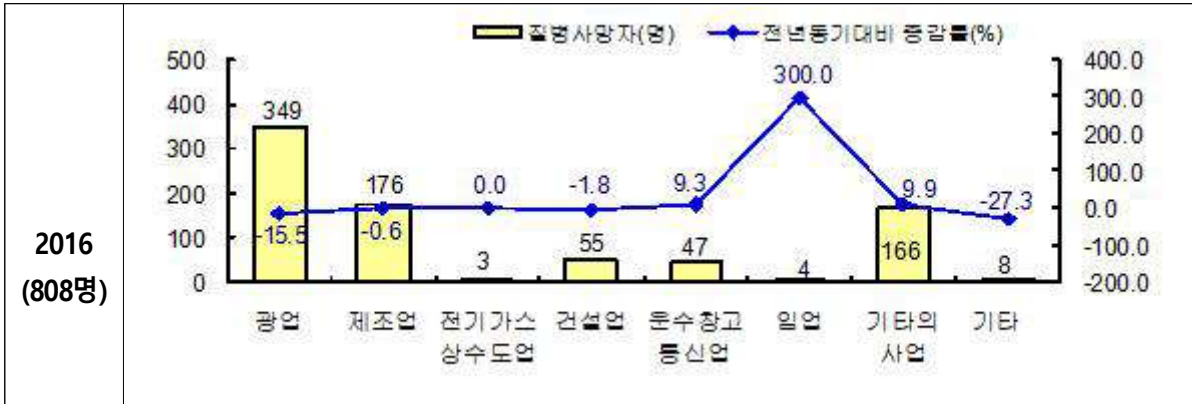
구분	질병 사망자	뇌심혈관 질병 사망자 수			기타의 사업 사망자 수		
		사망자 수	비율	증감	사망자 수	비율	증감
2015	855	293	34.27	-	151	17.66	-
2016	808	300	37.13	2.86	166	20.54	2.88
2017	993	354	35.65	△1.48	174	17.52	△3.02
2018	1,171	457	39.03	3.38	262	22.37	4.85
2019	1,165	503	43.25	4.22	288	24.72	2.35
2020.9.10)	911	369	40.50	△2.75	216	23.71	△1.01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통해 확인되는 업종별 질병 사망자, 질병별 사망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자료 중 업종별, 질병종류별 사망자 현황을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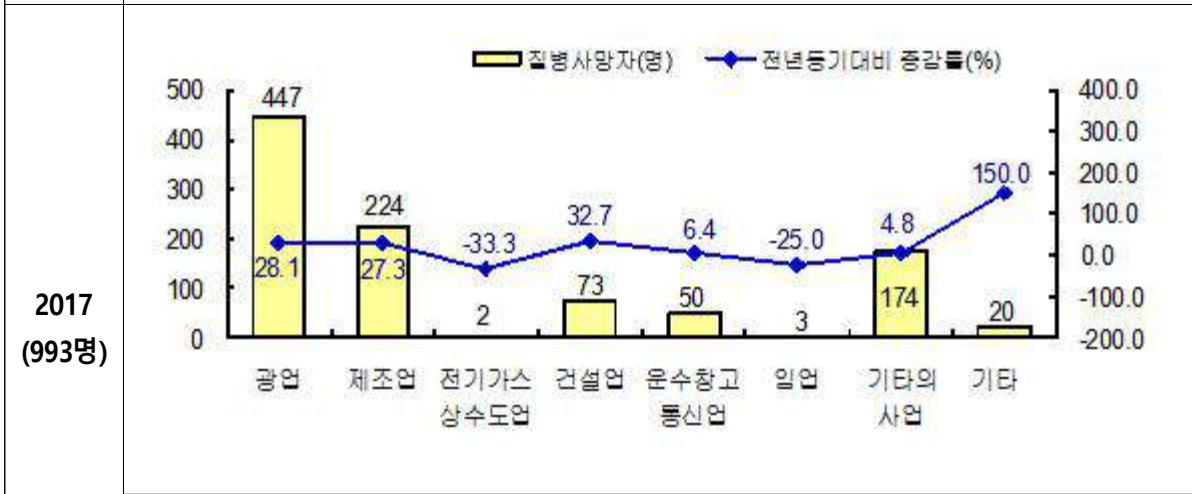
<그림Ⅲ-2>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현황(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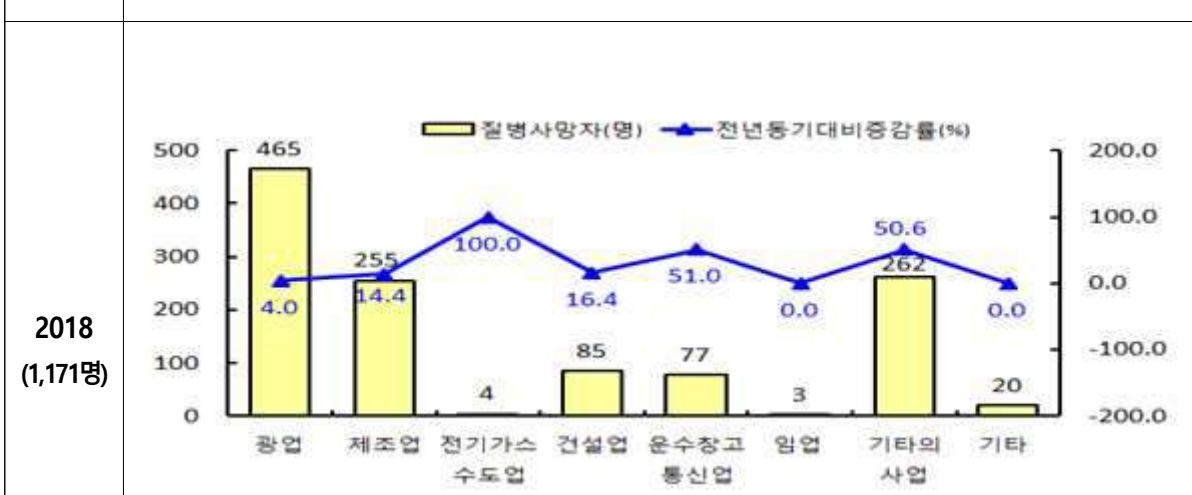
10) 2020.9월까지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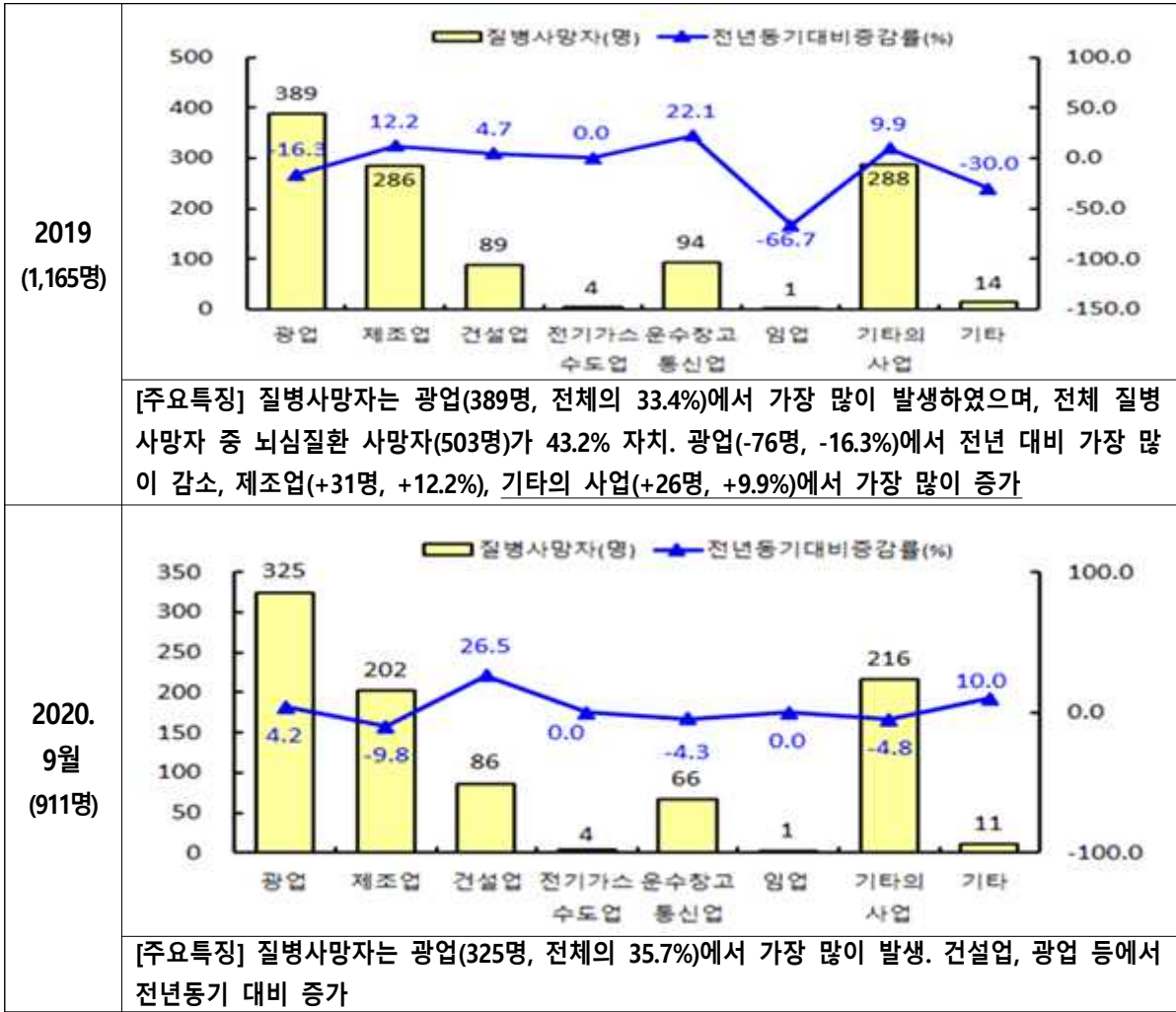
[주요특징] 질병사망자는 광업(349명, 전체의 4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질병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368명, 45.5%)가 차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 임업, 기타의 사업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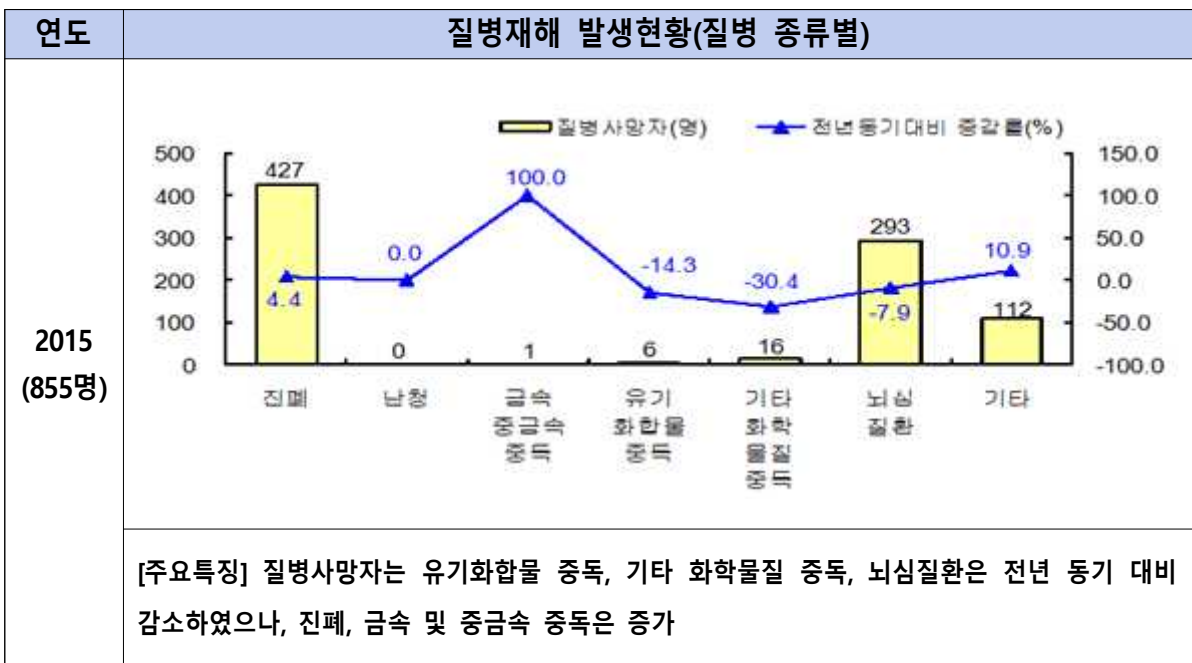
[주요특징] 질병 사망자는 광업(447명, 전체의 45.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질병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439명, 44.2%)가 차지. 전기가스수도업, 임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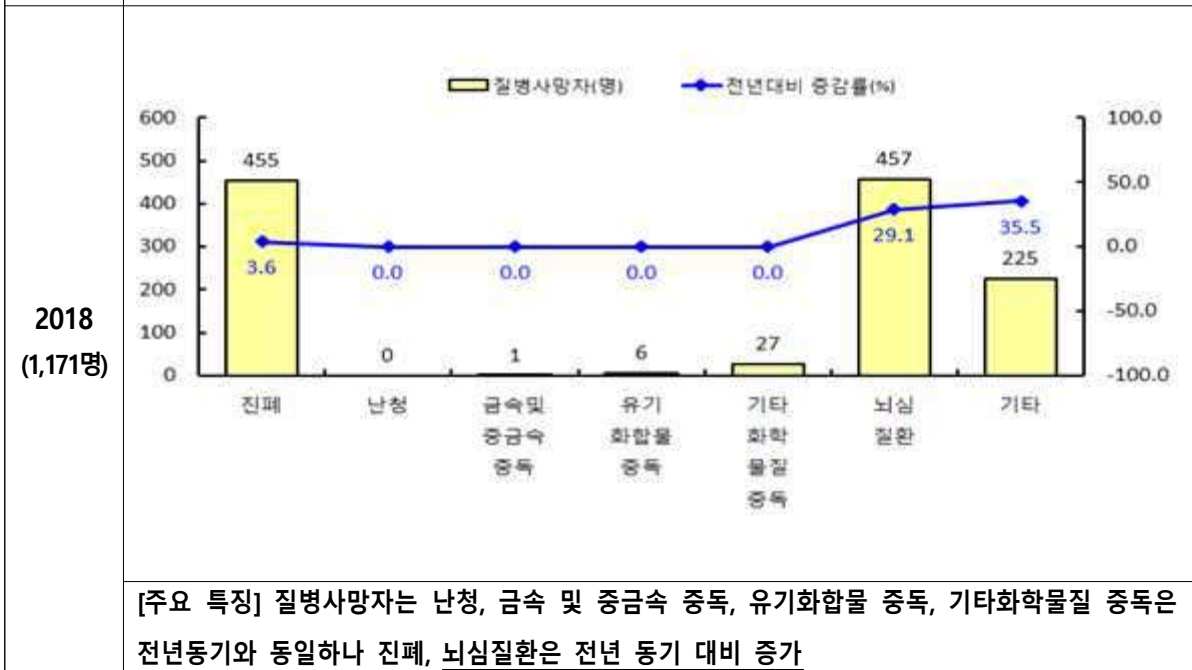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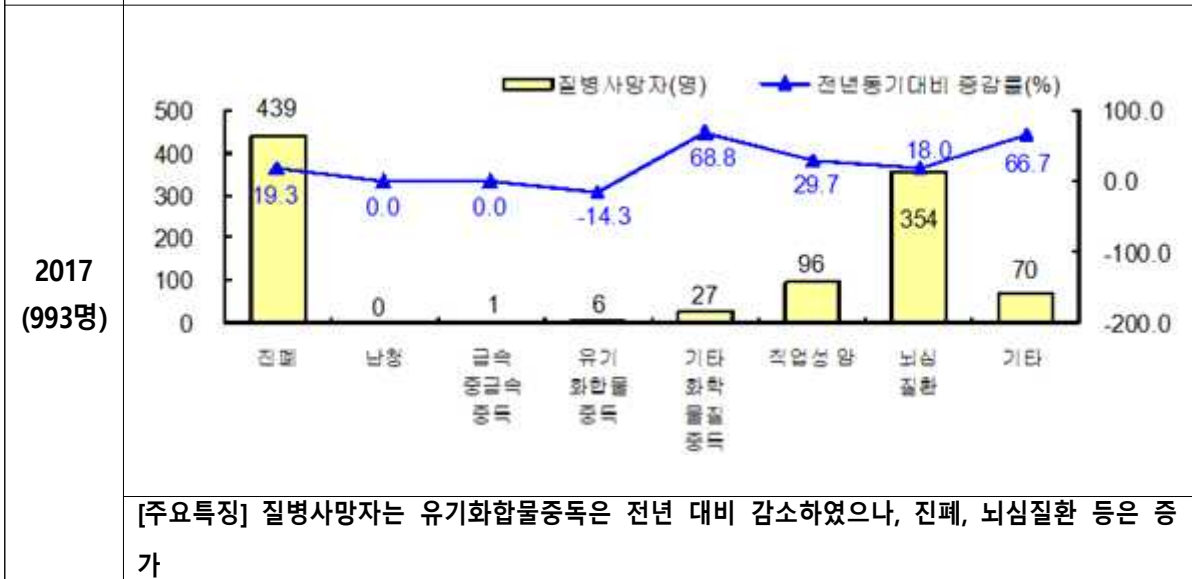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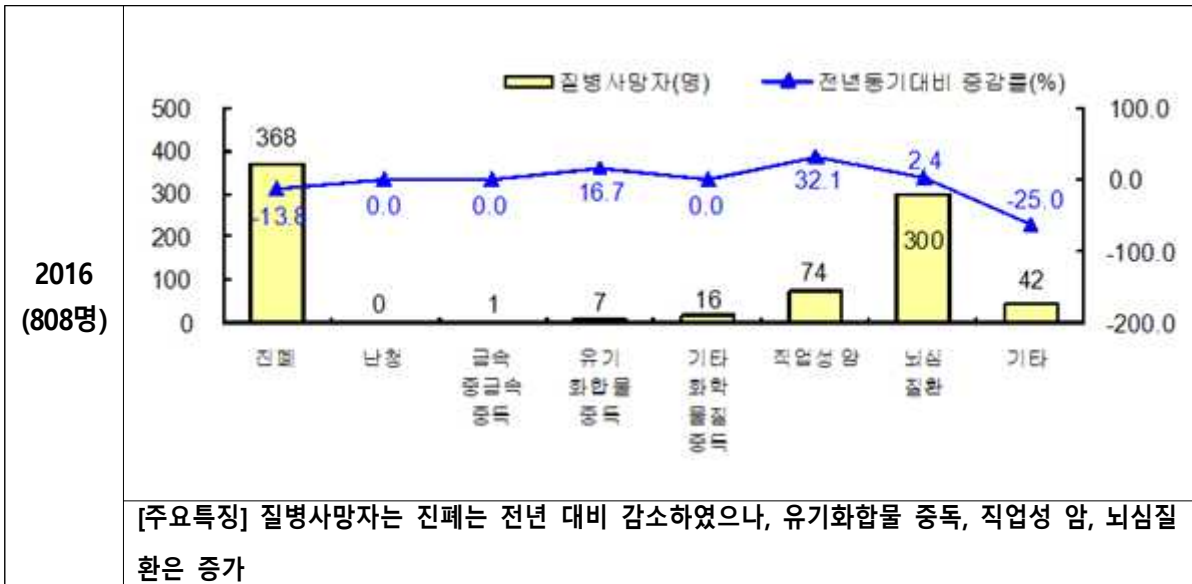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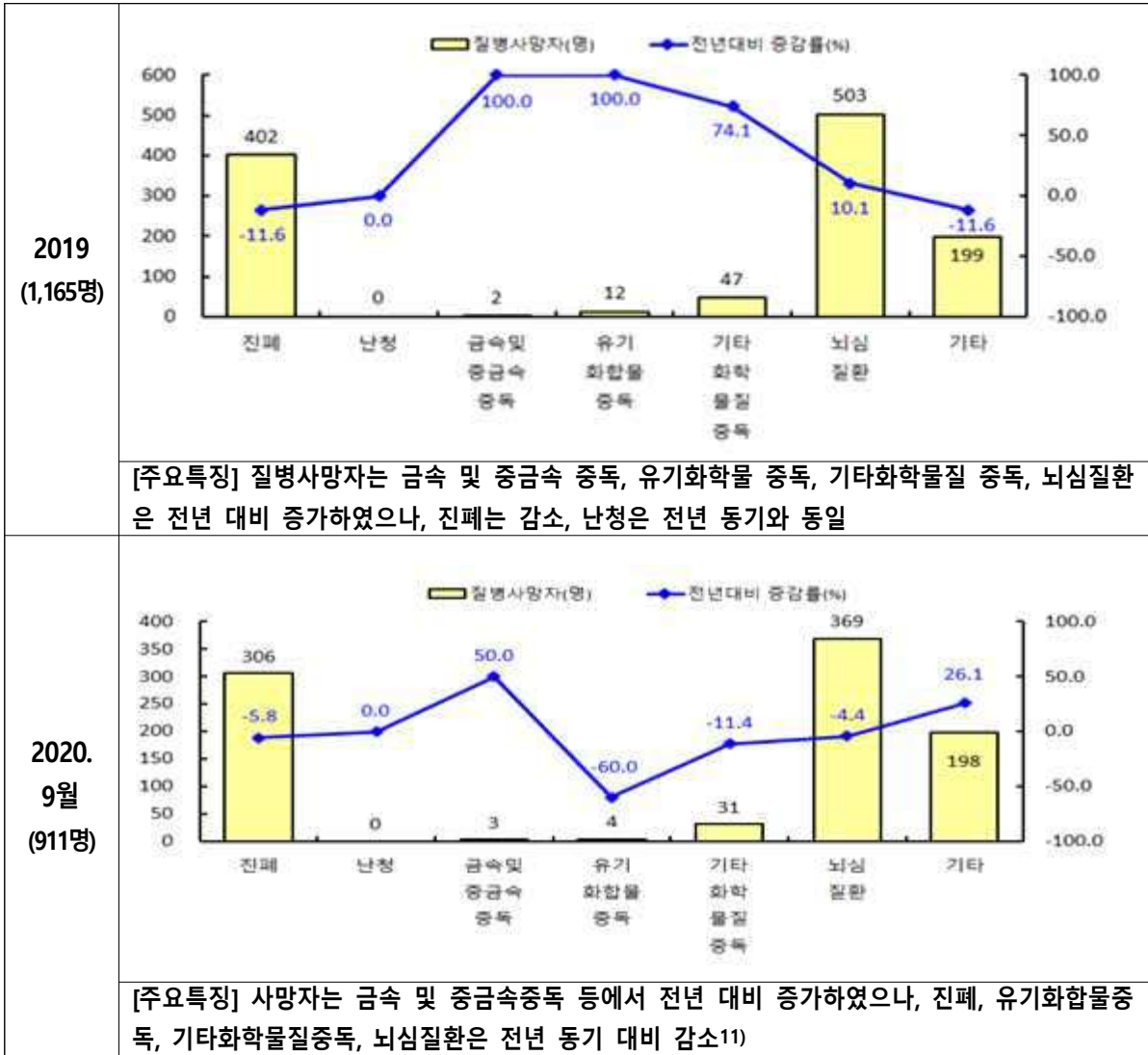
[주요특징] 질병 사망자는 광업(465명, 전체의 39.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질병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455명)가 38.9% 차지. 임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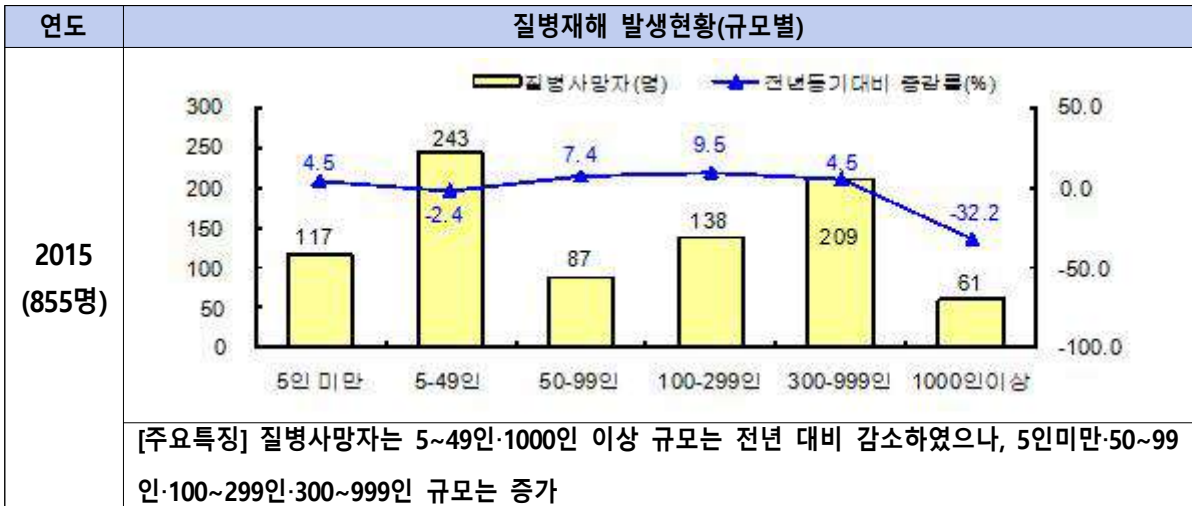
<그림표-3>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 현황(질병 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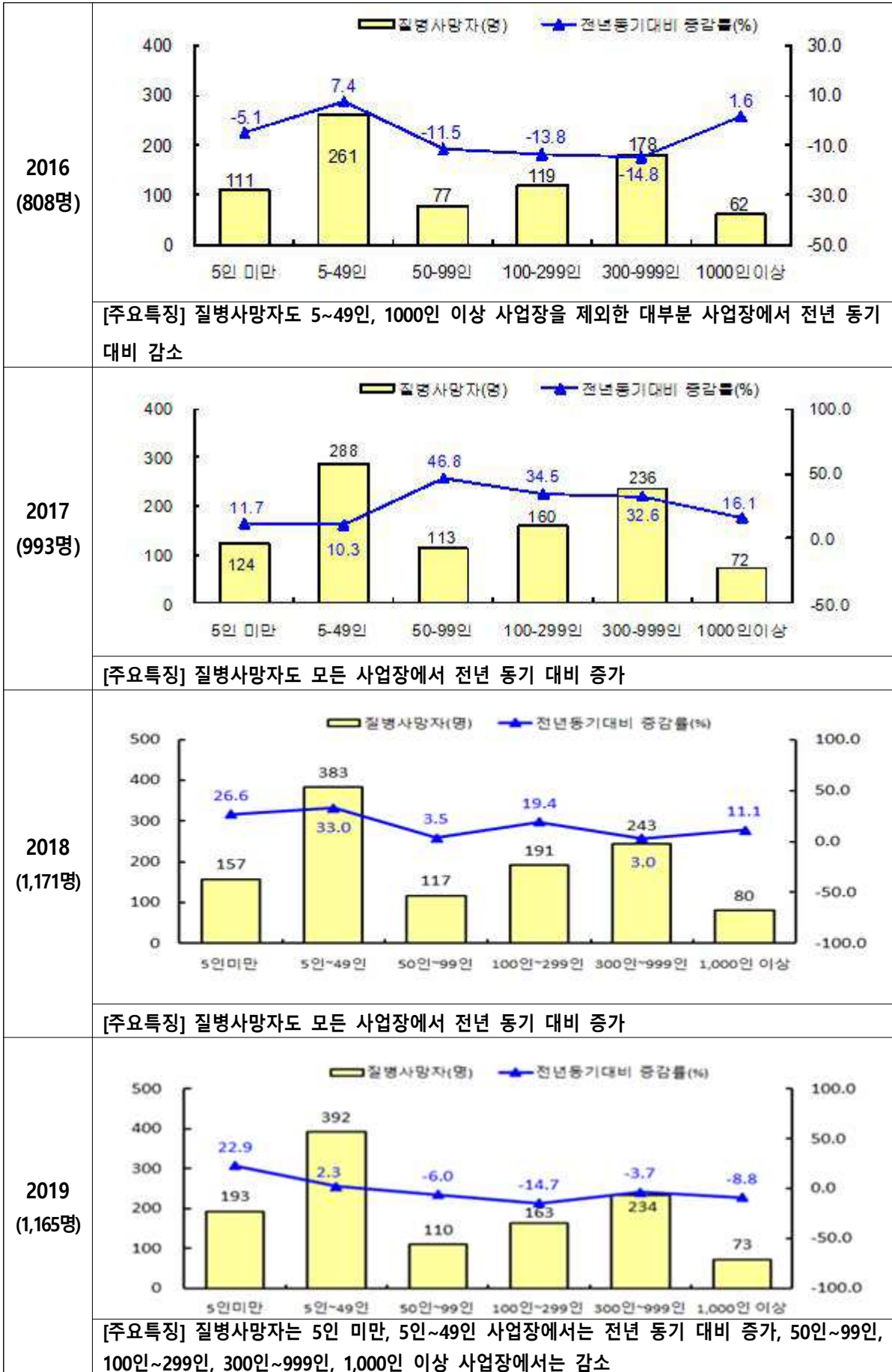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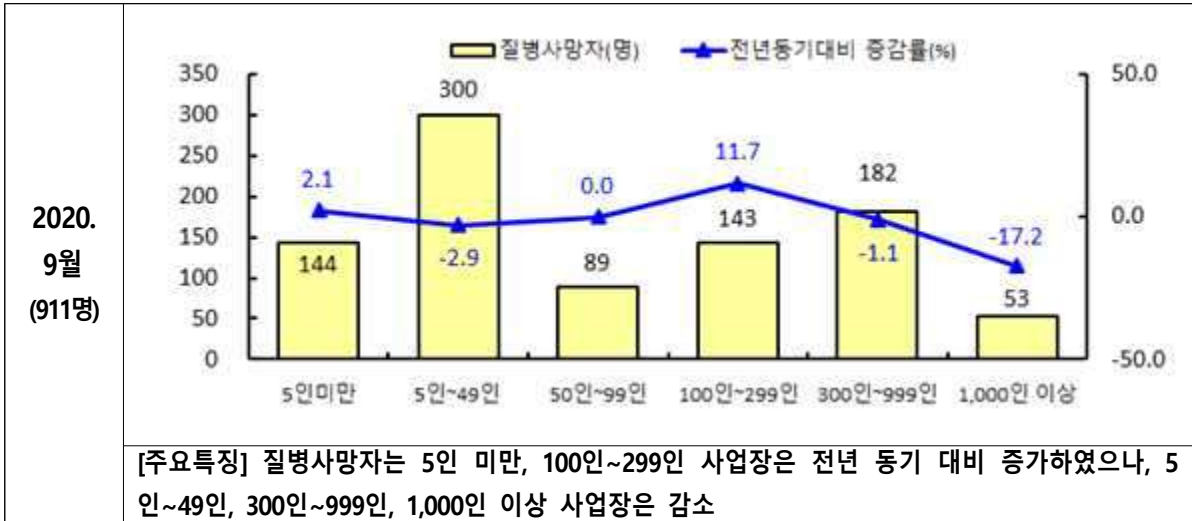


<그림Ⅲ-4> 고용노동부 질병 사망자 발생 현황(규모별)



11) 기타는 직업성 암, 세균·바이러스, 정신질환 등임





③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현황 : 연령별(50세이상) 질병 재해자, 사망자

○ 고용노동부의 2015~2020.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질병 재해자 수 및 질병 사망자 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2>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사망 발생현황(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전체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2015	명	7,919	855	1,113	122	1,362	124	2,102	323
	비율	100	100	14.1	14.3	17.2	14.5	26.5	37.8
2016	명	7,876	808	1,105	125	1,257	118	2,522	307
	비율	100	100	14.0	15.5	15.9	14.6	32.0	38.0
2017	명	9,183	993	1,079	137	1,533	142	3,564	398
	비율	100	100	11.7	13.8	16.7	14.3	38.8	40.1
2018	명	11,473	1,171	1,440	171	1,910	194	4,445	475
	비율	100	100	12.6	14.6	16.6	16.6	38.7	40.6
2019	명	15,195	1,165	1,948	135	2,361	174	6,185	542
	비율	100	100	12.8	11.6	15.5	14.9	40.7	46.5
2020.9월	명	12,107	911	1,443	116	1,792	132	5,335	453
	비율	100	100	11.9	12.7	14.8	14.5	44.1	49.7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60세 이상의 질병 재해자 수 및 질병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 9월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질병 재해자 수는 5,335명으로 44.1%, 질병 사망자 수는 453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다.

소결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은 모두 남성이며, 180건을 기준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건 92건 중 60세 미만 인정 사건은 4건¹²⁾으로 4.35%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비율은 95.6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질병 사망자 현황 중 기타의 사업 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질병 사망자 수와 60세 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비교하여 전체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2월에 발간하는 2015~201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를 중심으로)>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현황(2015~2019)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 책자의 통계 산출 대상 재해는 매년 1~12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이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질병 사망자, 뇌심혈관 질병 사망자 현황을 규모별, 업종별, 질병종류별, 연령별로 분석하였고, 참고용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의 규모별, 업종별, 질병종류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①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재해 발생현황(2015~2019. 8) :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 질병종류별

가. (규모별, 업종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 재해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뇌심혈관 사망자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 2015~2019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하면, 뇌심혈관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뇌심혈관 사망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¹³⁾은 2015년 3.07(293명 중 9명)%, 2016년 1.67%(287명 중 5명), 2017년 1.13%(354명 중 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4.60%(457명 중 21명), 2019년 3.38%(503명 중 17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변화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2018년 뇌심혈관 과로 인정기준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12) 60세 미만 인정 사건 : 2015년 52세 1건, 2018년 57세 1건, 2019년 59세 1건, 2020년 58세 1건

13)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수는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Ⅲ-13> 고용노동부 뇌·심혈관 사망 재해, 업종별·규모별 발생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 이상	
2015	뇌심 질병 (5.28%)	총계	341 (100)	88 25.81	42 12.32	79 23.17	29 8.50	31 9.09	42 12.32	10 2.93	5 1.47	15 4.40	
		건물등 종합관리	18 (100)	6 33.33	5 27.78	4 22.22 ¹⁴⁾	3 16.6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뇌심 사망 (10.24%)	총계	293 (100)	61 20.82	41 13.99	50 17.06	37 12.63	31 10.58	39 13.31	10 3.41	8 2.73	16 5.46	
		건물등 종합관리	30 (100)	9 30.00	9 30.00	4 13.33	3 10.00	4 13.33	0 0.00	1 3.34	0 0.00	0 0.00	
2016	뇌심 질병 (3.14%)	총계	287 (100)	69 24.04	53 18.47	32 11.15	20 6.97	30 10.45	18 6.27	34 11.85	12 4.18	7 2.44	12 4.18
		건물등 종합관리	9 (100)	4 44.45	3 33.33	1 11.11	1 11.1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뇌심 사망 (7.00%)	총계	300 (100)	62 20.67	46 15.33	37 12.33	37 12.33	27 9.00	28 9.33	29 9.67	12 4.00	6 2.00	16 5.33
		건물등 종합관리	21 (100)	9 42.87	3 14.29	2 9.52	2 9.52	1 4.76	1 4.76	2 9.52	0 0.00	0 0.00	1 4.76
2017	뇌심 질병 (7.60%)	총계	421 (100)	107 25.42	62 14.73	71 16.86	22 5.23	50 11.88	37 8.79	38 9.03	14 3.33	5 1.19	15 3.56
		건물등 종합관리	32 (100)	8 25.00	9 28.13	8 25.00	0 0.00	3 9.37	2 6.25	2 6.25	0 0.00	0 0.00	0 0.00
	뇌심 사망 (7.34%)	총계	354 (100)	69 19.49	46 12.99	47 13.28	26 7.34	28 7.91	42 11.86	50 14.21	16 4.52	11 3.11	19 5.37
		건물등 종합관리	26 (100)	3 11.54	6 23.08	6 23.08	2 7.69	3 11.54	2 7.69	2 7.69	1 3.85	1 3.85	0 0.00
2018	뇌심 질병 (11.93%)	총계	696 (100)	166 23.85	115 16.52	114 16.38	50 7.18	57 8.19	77 11.06	63 9.05	20 2.87	15 2.16	19 2.73
		건물등 종합관리	83 (100)	24 28.92	24 28.92	26 31.33	4 4.82	2 2.41	2 2.41	1 1.19	0 0.00	0 0.00	0 0.00
	뇌심 사망 (10.50%)	총계	457 (100)	81 17.72	58 12.69	69 15.10	42 9.19	48 10.50	43 9.41	68 14.88	14 3.06	15 3.28	19 4.16
		건물등 종합관리	48 (100)	9 18.75	15 31.25	14 29.17	5 10.42	3 6.25	0 0.00	0 0.00	2 4.16	0 0.00	0 0.00
2019	뇌심 질병 (12.43%)	총계	957 (100)	261 27.27	122 12.75	128 13.38	80 8.36	70 7.31	99 10.34	136 14.21	23 2.40	20 2.09	18 1.88
		건물등 종합관리	119 (100)	38 31.93	29 24.37	24 20.17	10 8.40	12 10.08	4 3.37	1 0.84	0 0.00	1 0.84	0 0.00
	뇌심 사망 (13.72%)	총계	503 (100)	122 24.25	68 13.52	67 13.32	34 6.76	45 8.95	57 11.33	63 12.52	14 2.78	18 3.58	15 2.98
		건물등 종합관리	69 (100)	19 27.54	18 26.09	15 21.73	7 10.14	6 8.70	4 5.80	0 0.00	0 0.00	0 0.00	0 0.00

- 뇌심혈관 사망자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규모별 현황을 분석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0.0%, 2016년 57.16%, 2017년 34.62%, 2018년 50.0%, 2019년 53.63%를 차지하였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 사망망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14> 뇌심혈관 질병 건물등종합관리사업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단위:명, %)

구분	전체 질병사망 및 뇌심혈관 사망재해				건물등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재해		경비노동자 사망재해			전체 뇌심사망자 경비노동자 과로사	
	전체 사망자	뇌심 사망자	뇌심 비율	전년대비 증감	사망자	건물등 업종비율	인정 사건	경비 비율	전년대비 증감	비율	전년대비 증감
2015	855	293	34.27	-	30	10.24	9	30.00	-	3.07	-
2016	808	300	37.13	2.89	21	7.00	5	23.81	△6.19	1.67	△1.40
2017	993	354	35.65	△1.48	26	7.34	4	15.38	△8.34	1.13	△0.54
2018	1,171	457	39.03	3.38	48	10.50	21	43.75	28.37	4.60	3.47
2019	1,165	503	43.18	4.15	69	13.72	17	53.10	9.35	3.38	△1.22

- 2015~2019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뇌심혈관 사망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24%, 2016년 7.0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2019년 평균 12.11%로 분석되었다.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 2016년 23.81%, 2017년 15.38%, 2018년 43.75%, 2019년 53.10%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23.06%에 불과하였으나, 2018~2019년 평균 48.43%로 분석되었다. 전체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변화는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2018년 뇌심혈관 과로 인정기준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나. (연령별, 성별) 뇌심혈관 질병 및 사망 발생현황

-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인정 사건 92건 중 60세 미만 4건, 60~64세 이하 18건, 65~69세 이하 36건, 70~74세 이하 23건, 75~79세 이하 9건, 80세 이상 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로 분석되었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14) 2015년의 규모별 현황을 10~29인으로 구분하였으며, 2016년 이후 10~19인, 20~29인으로 구분하였다.

<표Ⅲ-15> 업무상질병판정서 경비노동자 연령별 인정 현황

구분	60세 미만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합계
인정	4	18	36	23	9	2	92
비율	4.35	19.57	39.13	25.00	9.78	2.17	100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연령별, 성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6> 고용노동부 연령별, 성별 뇌심혈관 질병, 사망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18세 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5	뇌심 질병	총계	341 (100)	0	1	3	11	27	41	60	76	68	54
		(남)	296 (100)	0	1	2	11	24	37	55	65	60	41
		86.80%	0.00	0.34	0.68	3.72	8.11	12.50	18.58	21.96	20.27	13.84	
	(여)	45 (100)	0	0	1	0	3	4	5	11	8	13	
	13.20%	0.00	0.00	2.22	0.00	6.67	8.89	11.11	24.44	17.78	28.89		
	뇌심 사망	총계	293 (100)	0	1	4	12	18	38	52	63	46	59
(남)		274 (100)	0	1	4	11	18	36	47	60	41	56	
93.52%		0.00	0.36	1.46	4.01	6.57	13.14	17.15	21.90	14.96	20.45		
(여)	19 (100)	0	0	0	1	0	2	5	3	5	3		
6.48%	0.00	0.00	0.00	5.27	0.00	10.53	26.32	15.78	26.32	15.78			
2016	뇌심 질병	총계	287 (100)	0	1	2	9	24	30	52	63	51	55
		(남)	249 (100)	0	1	2	8	23	28	46	55	40	46
		86.76%	0.00	0.40	0.80	3.21	9.24	11.24	18.47	22.11	16.06	18.47	
	(여)	38 (100)	0	0	0	1	1	2	6	8	11	9	
	13.24%	0.00	0.00	0.00	2.63	2.63	5.26	15.79	21.05	28.95	23.69		
	뇌심 사망	총계	300 (100)	0	0	3	7	28	47	46	59	45	65
(남)		271 (100)	0	0	3	7	25	44	42	55	41	54	
90.33%		0.00	0.00	1.11	2.58	9.23	16.24	15.50	20.30	15.13	19.91		
(여)	29 (100)	0	0	0	0	3	3	4	4	4	11		
9.67%	0.00	0.00	0.00	0.00	10.34	10.34	13.79	13.79	13.79	13.79	37.95		
2017	뇌심 질병	총계	421 (100)	0	0	5	9	27	40	68	83	93	96
		15)	0.00	0.00	1.19	2.14	6.41	9.50	16.15	19.71	22.09	22.80	
	뇌심 사망	총계	354 (100)	0	0	4	7	32	52	53	64	62	80
		(남)	323 (100)	0	0	3	7	31	49	50	59	55	69
91.24%	0.00	0.00	0.93	2.17	9.60	15.17	15.48	18.27	17.03	21.35			
(여)	30 (100)	0	0	1	0	1	3	3	5	7	11		
8.76%	0.00	0.00	3.33	0.00	3.33	10.00	10.00	16.67	23.33	33.34			
2018	뇌심 질병	총계	696 (100)	0	0	6	14	24	60	91	145	132	224
		(남)	600 (100)	0	0	4	12	22	53	78	120	112	199
		86.21%	0.00	0.00	0.67	2.00	3.67	8.83	13.00	20.00	18.67	33.16	
(여)	96	0	0	2	2	2	7	13	25	20	25		

	뇌심 사망	13.79%	(100)	0.00	0.00	2.08	2.08	2.08	7.30	13.54	26.04	20.84	26.04
		총계	457	0	0	5	10	28	59	64	77	99	115
		(남)	427	0	0	2	10	27	59	59	71	89	110
		93.44%	(100)	0.00	0.00	0.47	2.34	6.30	13.82	13.82	16.63	20.84	25.78
		(여)	30	0	0	3	0	1	0	5	6	10	5
6.56%	(100)	0.00	0.00	10.0	0.00	3.33	0.00	16.67	20.00	33.33	16.67		
2019	뇌심 질병	총계	957	0	4	7	18	27	89	114	162	189	347
		(남)	846	0	3	6	14	26	78	102	138	171	308
		88.40%	(100)	0.00	0.35	0.71	1.65	3.07	9.22	12.06	16.31	20.21	36.42
		(여)	111	0	1	1	4	1	11	12	24	18	39
		11.60%	(100)	0.00	0.90	0.90	3.60	0.90	9.91	10.81	21.62	16.22	35.14
	뇌심 사망	총계	503	0	2	4	14	30	39	77	78	90	169
		(남)	471	0	2	4	13	26	39	72	73	82	160
		93.64%	(100)	0.00	0.42	0.85	2.76	5.52	8.28	15.29	15.50	17.41	33.97
		(여)	32	0	0	0	1	4	0	5	5	8	9
		6.36%	(100)	0.00	0.00	0.00	3.13	12.50	0.00	15.63	15.63	25.00	31.24

○ 업무상질병판정서 인정사건 92건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한 60세 이상 남성노동자가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45%, 2016년 19.91%, 2017년 21.35%, 2018년 25.78%, 2019년 33.97%로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17>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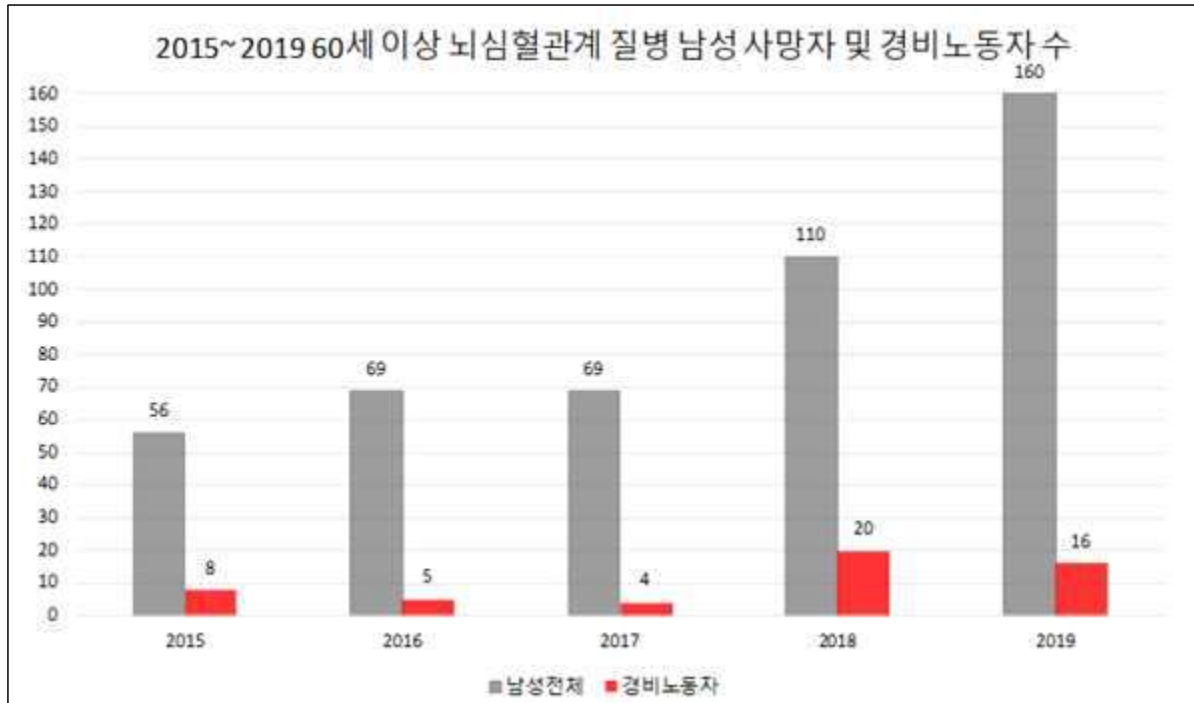
구분	전체 뇌심혈관 사망재해			(남성)연령 구분			경비노동자 인정 사건			
	전체 사망자	남성	여성	50~54세	55~59세	60세이상	50~54세	55~59세	60세이상	60세이상 경비비중 16)
2015	293	274	19	60	41	56	1	0	8	8
	(100)	86.80	13.20	21.90	14.96	20.45	11.11	0	88.89	14.29
2016	300	271	29	59	55	69	0	0	5	5
	(100)	90.33	9.67	18.27	17.03	21.35	0.00	0.00	100	7.25
2017	354	320	30	59	55	69	0	0	4	4
	(100)	91.24	8.76	18.27	17.03	21.35	0.00	0.00	100	5.80
2018	457	427	30	71	89	110	0	1	20	20
	(100)	93.44	6.56	16.63	20.84	25.78	0.00	5.00	95.00	18.18
2019	503	471	32	73	82	160	0	1	16	16
	(100)	93.64	6.36	15.50	17.41	33.97	0.00	6.25	93.75	10.00

15)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3. 뇌심혈관 요양재해 현황 중 나. 연령 및 성별 항목에서 성별 미표기

소결

- 60대 이상 남성 뇌심혈관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29%, 2016년 7.25%, 2017년 5.80%이며, 2015~2017년 평균 9.11%를 차지하는 반면, 2018년 18.18%, 2019년 10.00%이며, 2018~2019년 평균 14.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뇌심혈관 질병 사망 사건 중 60대 이상 남성 경비노동자가 14.09% 가량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Ⅲ-5> 60대 이상 사망재해 및 경비노동자 과로사 현황 비교



다.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자는 경비노동자가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경우 2015년 10.34%, 2016년 7.00%, 2017년 7.34%이며, 2015~2017년 평균 8.2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0.50%, 2019년 13.72%이며, 2018~2019년 평균 12.1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인정 사건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세부 업종별 뇌심혈관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5~2017년 사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3순위, 4순위를 차지한 반면, 2018년 1순위, 2019년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정률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연도별 60세 이상 경비노동자 사망자 수/ 연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표Ⅲ-18>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구분	총계	광업 17)	제조업 1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9)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 ²¹⁾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15	293	3	86	1	36	37	1	0	2	5	92	30
	(100)	1.02	29.35	0.34	12.29	12.63	0.34	0.00	0.68	1.71	31.4	10.24
2016	300	1	83	3	33	37	2	0	1	4	115	21
	(100)	0.33	27.67	1.00	11.00	12.33	0.67	0.00	0.33	1.34	38.33	7.00
2017	354	3	122	1	33	45	2	0	0	10	112	26
	(100)	0.85	34.47	0.28	9.32	12.72	0.56	0.00	0.00	2.82	31.64	7.34
2018	457	3	125	2	46	65	1	0	3	6	158	48
	(100)	0.66	27.35	0.44	10.07	14.22	0.22	0.00	0.66	1.31	34.57	10.50
2019	503	0	133	3	47	84	0	0	2	6	159	69
	(100)	0.00	26.44	0.60	9.34	16.70	0.00	0.00	0.40	1.19	31.61	13.72

<표Ⅲ-19> (세부 업종별/연도별) 뇌심혈관 사망재해 업종별 순위

구분	1	2	3	4	5
2015	건설업	기타의 각종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여객자동차 운수업
	36(12.29%)	32(10.92%)	30(10.24%)	25(8.53%)	24(8.19%)
2016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전문기술서비스업
	41(13.67%)	36(12.00%)	33(11.00%)	21(7.00%)	18(6.00%)
2017	기타의 각종사업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건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54(15.25%)	34(9.60%)	33(9.32%)	26(7.34%)	24(6.78%)
2018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48(10.50%)	48(10.50%)	46(10.07)	42(9.19%)	41(8.97%)
2019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육상 및 수상 운수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기타의 각종사업	건설업
	69(13.72%)	69(13.72%)	62(12.33%)	57(11.33%)	47(9.34%)

- 1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광업'은 석탄광업 및 석회석·비금속광업및기타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제조업'은 식료품제조업,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유리제조업,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도금업,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모터사이클수리업, 수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 섬유또는서유제품제조업(을),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은 세부 업종분류를 하지 않았다.
-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창고업, 통신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2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업종구분 '기타의 사업'은 건물의종합관리사업, 위생및위사서비스업, 기타의 각종사업, 해외과건자,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사업서비스업, 주한미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건물 등의종합관리사업'을 제외한 전체 현황을 합산한 내역이다.

<표Ⅲ-20>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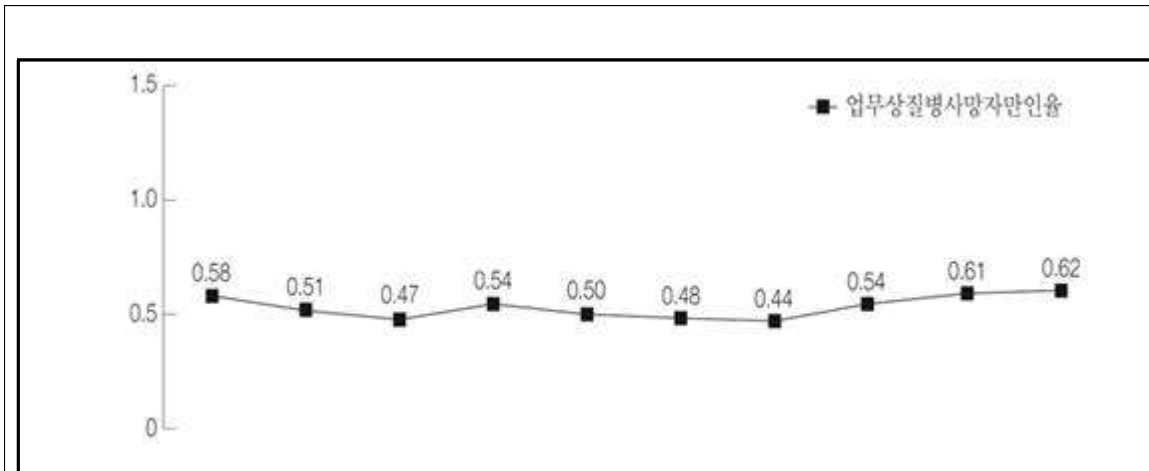
연도	구분	총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의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뇌심혈관 사망만인률 (사망자수/ 근로자수) 22)
2015	근로자수	17,968,931	11,615	4,161,536	64,244	3,358,813	805,403	86,565	5,357	68,697	705,629	7,975,826	725,246	0.16
	업종 분포	100	0.06	23.16	0.36	18.69	4.48	0.48	0.03	0.38	3.93	44.39	4.04	
	사망자수	293	3	86	1	36	37	1	0	2	5	92	30	0.41
	사망자분포	100	1.02	29.35	0.34	12.29	12.63	0.34	0.00	0.68	1.71	31.4	10.24	
2016	근로자수	18,431,716	11,153	4,236,653	72,940	3,152,859	836,471	93,493	5,591	80,990	761,187	8,406,101	774,278	0.16
	업종비율	100	0.06	22.98	0.40	17.11	4.54	0.50	0.03	0.44	4.13	45.61	4.20	
	사망자수	300	1	83	3	33	37	2	0	1	4	115	21	0.27
	사망자분포	100	0.33	27.67	1.00	11.00	12.33	0.67	0.00	0.33	1.34	38.33	7.00	
2017	근로자수	18,560,142	11,199	4,149,966	75,496	3,046,523	838,006	82,773	5,289	76,033	764,141	8,705,683	805,033	0.19
	업종 분포	100	0.06	22.35	0.41	16.41	4.52	0.45	0.03	0.41	4.12	46.90	4.34	
	사망자수	354	3	122	1	33	45	2	0	0	10	112	26	0.32
	사망자분포	100	0.85	34.47	0.28	9.32	12.72	0.56	0.00	0.00	2.82	31.64	7.34	
2018	근로자수	19,073,438	11,697	4,152,058	76,967	2,943,742	873,232	89,751	5,416	83,540	778,105	9,232,552	826,378	0.24
	업종 분포	100	0.06	21.77	0.40	15.43	4.58	0.47	0.03	0.44	4.08	48.41	4.33	
	사망자수	457	3	125	2	46	65	1	0	3	6	158	48	0.58
	사망자분포	100	0.66	27.35	0.44	10.07	14.22	0.22	0.00	0.66	1.31	34.57	10.50	
2019	근로자수	18,725,160	11,108	4,045,048	76,687	2,487,807	910,585	91,682	5,121	79,482	777,764	9,285,889	953,987	0.27
	업종 분포	100	0.06	21.60	0.41	13.29	4.86	0.49	0.03	0.42	4.15	49.60	5.09	
	사망자수	503	0	133	3	47	84	0	0	2	6	159	69	0.72
	사망자분포	100	0.00	26.44	0.60	9.34	16.70	0.00	0.00	0.40	1.19	31.61	13.72	

22) 사망만인률(%) =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전체 근로자 수,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근로자 수

<그림Ⅲ-6>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비교



<그림Ⅲ-7> 2010~2019년 업무상질병 사망만인률 비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근로자수(명)		14,198,748	14,362,372	15,548,423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18,560,142	19,073,438	18,725,160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¹⁾ (명)		817	731	730	839	858	855	808	993	1,171	1,165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²⁾ (‰)		0.58	0.51	0.47	0.54	0.50	0.48	0.44	0.54	0.61	0.62

1)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 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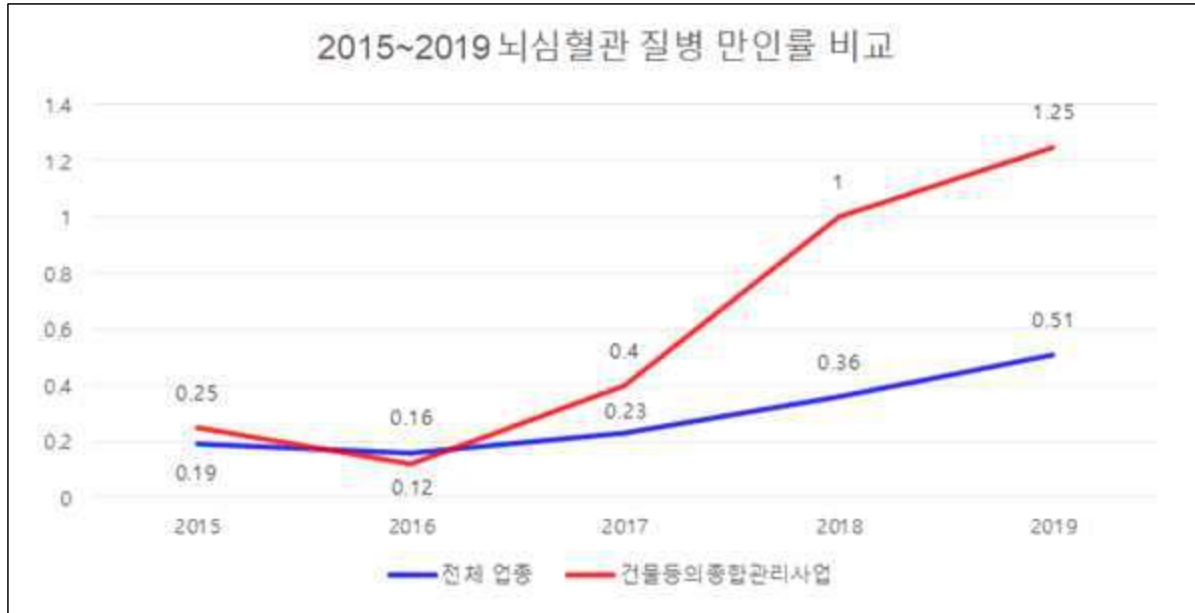
2)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 $\frac{\text{업무상질병 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표Ⅲ-21>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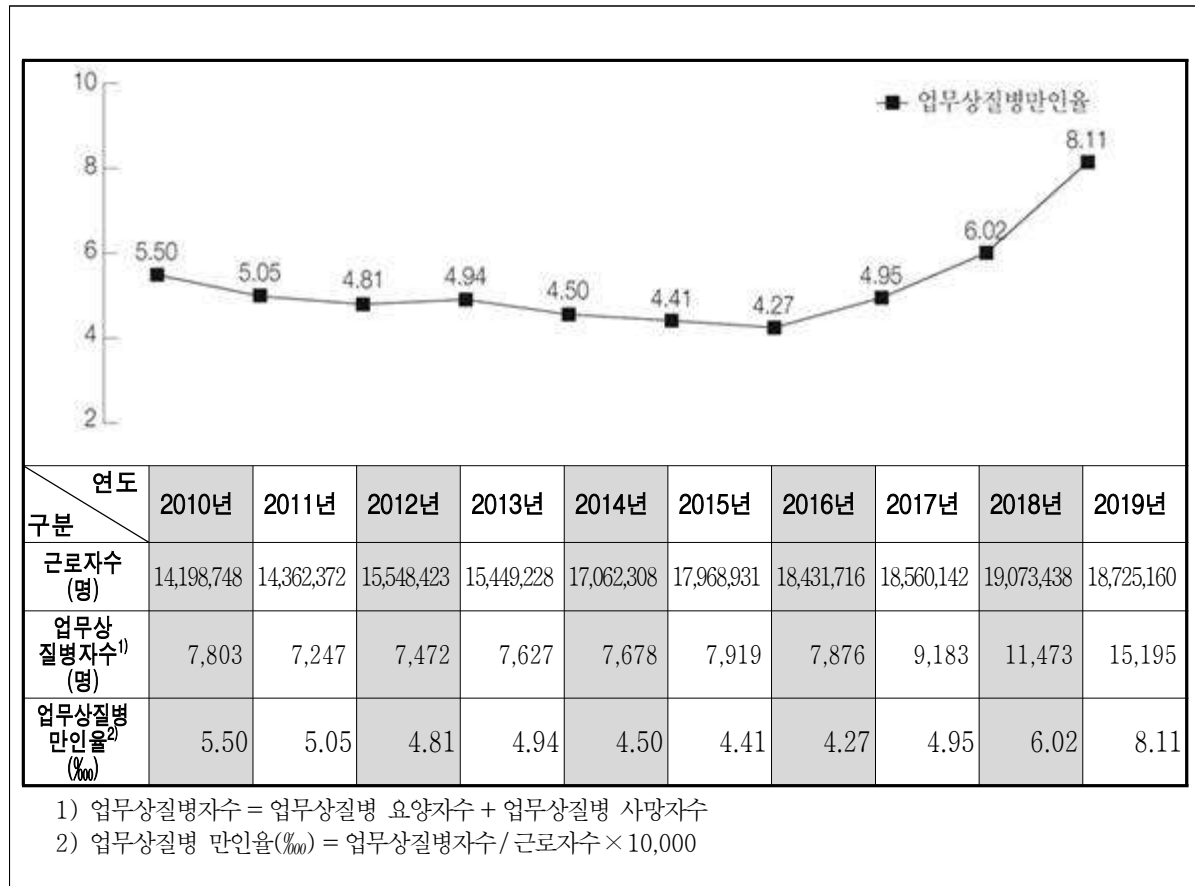
연도	구분	총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뇌심혈병 만인률 (재해자수/ 근로자수) 23)
2015	근로자수	17,968,931	11,615	4,161,536	64,244	3,358,813	805,403	86,565	5,357	68,697	705,629	7,975,826	725,246	0.19
	업종 분포	100	0.06	23.16	0.36	18.69	4.48	0.48	0.03	0.38	3.93	44.39	4.04	
	재해자수	341	1	113	2	32	39	0	0	1	9	126	18	
	재해자분포	100	0.29	33.14	0.59	9.38	11.44	0.00	0.00	0.29	2.64	36.95	5.28	
2016	근로자수	18,431,716	11,153	4,236,653	72,940	3,152,859	836,471	93,493	5,591	80,990	761,187	8,406,101	774,278	0.16
	업종비율	100	0.06	22.98	0.40	17.11	4.54	0.50	0.03	0.44	4.13	45.61	4.20	
	재해자수	287	1	95	0	30	40	0	1	1	2	108	9	
	재해자분포	100	0.35	33.10	0.00	10.45	13.94	0.00	0.35	0.35	0.70	37.63	3.14	
2017	근로자수	18,560,142	11,199	4,149,966	75,496	3,046,523	838,006	82,773	5,289	76,033	764,141	8,705,683	805,033	0.23
	업종 분포	100	0.06	22.35	0.41	16.41	4.52	0.45	0.03	0.41	4.12	46.90	4.34	
	재해자수	421	1	116	1	38	54	0	2	0	12	165	32	
	재해자분포	100	0.24	27.55	0.24	9.03	12.83	0.00	0.48	0.00	2.85	39.19	7.60	
2018	근로자수	19,073,438	11,697	4,152,058	76,967	2,943,742	873,232	89,751	5,416	83,540	778,105	9,232,552	826,378	0.36
	업종 분포	100	0.06	21.77	0.40	15.43	4.58	0.47	0.03	0.44	4.08	48.41	4.33	
	재해자수	696	2	198	1	65	90	1	0	1	8	247	83	
	재해자분포	100	0.29	28.45	0.14	9.34	12.93	0.14	0.00	0.14	1.15	35.48	11.93	
2019	근로자수	18,725,160	11,108	4,045,048	76,687	2,487,807	910,585	91,682	5,121	79,482	777,764	9,285,889	953,987	0.51
	업종 분포	100	0.06	21.60	0.41	13.29	4.86	0.49	0.03	0.42	4.15	49.60	5.09	
	재해자수	957	5	216	2	95	164	1	0	7	8	340	119	
	재해자분포	100	0.52	22.57	0.21	9.93	17.14	0.10	0.00	0.73	0.84	35.53	12.43	

23) 업무상질병만인율(‰) = $\frac{\text{업무상질병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뇌심혈관질병 재해자 수/전체 근로자 수, 뇌심혈관질병 재해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근로자 수

<그림Ⅲ-8>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비교



<그림Ⅲ-9> 2010~2019년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비교



- 업종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을 종합하여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업종별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망자 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6, ② 0.41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대비 2.56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27로 1.69배 높고, 2017년 ① 0.19, ② 0.32로 1.69배 높고, 2018년 ① 0.24, ② 0.58로 2.42배 높고, 2019년 ① 0.27, ② 0.72로 2.6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뇌심혈관질병 발생 현황을 토대로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병 재해자 수, 업종별 재해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자 수를 토대로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9, ② 0.25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대비 1.32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12로 0.75배 높고, 2017년 ① 0.23, ② 0.40로 1.74배 높고, 2018년 ① 0.36, ② 1.00로 2.78배 높고, 2019년 ① 0.51, ② 1.25로 2.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뇌심혈관질병 만인률과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질병 사망 만인율,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의 변화 추이 및 2018년 이후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발생현황(2015~2019) : 규모별, 업종별, 질병종류별, 연령별

○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모별, 업종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발생현황²⁴⁾

○ 전체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재해의 발생현황과 같이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발생 현황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24%, 2016년 2.43%, 2017년 2.19%이며, 2015~2017년 평균 2.29%를 차지하였고, 2018년 2.76%, 2019년 3.68%이며, 2018~2019년 평균 3.22%를 차지하였다.

<표Ⅲ-22>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 및 건물등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재해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 이상
2015	총계	7,064 (100)	1,366 19.34	842 11.92	1,288 18.23	544 7.7	629 8.9	734 10.39	346 4.9	410 5.8	905 12.81	
	건물등	158 (2.24)	36 22.78	41 25.95	42 26.58	17 10.76	17 10.76	4 2.54	1 0.63	0 0	0 0.00	
2016	총계	7,068 (100)	1,323 18.72	815 11.53	855 12.10	442 6.25	631 8.93	585 8.28	720 10.19	347 4.91	435 6.15	915 12.95
	건물등	172 (2.43)	40 23.26	38 22.09	45 26.16	4 2.33	15 8.72	19 11.04	7 4.07	0 0	4 2.33	0 0.00
2017	총계	8,190 (100)	1,457 17.79	902 11.01	914 11.16	517 6.31	689 8.41	588 7.18	844 10.31	318 3.88	678 8.28	1,283 15.67
	건물등	179 (2.19)	43 24.02	40 22.35	36 20.11	19 10.61	18 10.05	9 5.03	10 5.59	2 1.12	2 1.12	0 0.00
2018	총계	10,302 (100)	1,787 17.35	1,117 10.84	1,162 11.28	592 5.75	815 7.81	814 7.90	1,169 11.35	611 5.93	865 8.40	1,370 13.30
	건물등	284 (2.76)	71 25.00	79 27.82	57 20.07	25 8.80	23 8.10	14 4.93	11 3.87	1 0.35	3 1.06	0 0.00
2019	총계	14,030 (100)	2,458 17.52	1,445 10.30	1,579 11.25	976 6.96	1,044 7.44	1,165 8.30	1,658 11.82	880 6.27	1,061 7.56	1,764 12.57
	건물등	517 (3.68)	104 20.12	95 18.38	101 19.54	45 8.70	82 15.86	46 8.90	29 5.61	9 1.74	5 0.97	1 0.18

② (연령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뇌심혈관 질병재해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44.94%, 2016년 60.47%, 2017년 59.79%이며,

24)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 수치에 차이가 있어 각각 자료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2015~2017년 평균 55.07%를 차지하였고, 2018년 69.53%, 2019년 54.35이며, 2018~2019년 평균 6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심혈관질병 사망 재해의 현황과 유사하게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 질병은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3>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연령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18세 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5	총계	7,064 (100)	0	59	216	451	688	762	880	991	1,238	1,779
	건물등	158 (2.24)	0	0	2	5	9	12	10	14	35	71
2016	총계	7,068 (100)	0	79	219	354	607	679	799	980	1,139	2,215
	건물등	172 (2.43)	0	1	0	1	5	5	10	16	30	104
2017	총계	8,190 (100)	0	84	226	365	575	638	803	942	1,391	3,166
	건물등	179 (2.19)	0	0	4	0	6	8	13	12	29	107
2018	총계	10,302 (100)	0	85	270	385	701	864	1,042	1,269	1,716	3,970
	건물등	284 (2.76)	0	0	3	1	6	6	8	18	38	204
2019	총계	14,030 (100)	0	115	371	539	886	1,069	1,407	1,813	2,187	5,643
	건물등	517 (3.68)	0	3	1	9	17	23	34	54	95	281

③ (질병종류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을 진폐증, 소음성난청, 급속 및 중급속, 유기 화합물, 기타화학물질,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사고성)요통, 기타로 구분하였을 때, 2015년 ① 요통, ② 신체부담작업, ③ **뇌심혈관질병** 순위, 2016년부터 ① 요통, ② 신체부담작업, ③ **뇌심혈관질병**의 순위를 보였다. 2017년 ① 요통, ② **뇌심혈관질병**, ③ 신체부담작업, 2018년 ① 신체부담작업, ② **뇌심혈관질병**, ③ 신체부담작업, 2019년 ① 요통, ② 신체부담작업, ③ **뇌심혈관질병**의 순위로 나타났다.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발생한 뇌심혈관질병 재해의 비중은 2015년 11.39%, 2016년 5.23%, 2017년 17.88%이며, 2015~2017년 평균 11.50%인 반면, **2018년 29.23%, 2019년 23.02%**를 차지하였고, **2018~2019년 평균 26.13%**로 증가하여, **1.8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4>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종류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진폐증	소음성 난청	금속및 중금속	유기 화합물	기타 화학 물질	뇌 심혈관 질병	신체 부담 작업	요통	기타
2015	총계	7,064	698	372	13	0	19	341	2,321	2,892	408
		(100)	9.88	5.27	0.18	0.00	0.27	4.83	32.86	40.94	5.78
2015	건물등	158	1	0	0	0	1	18	34	103	1
		(2.24)	0.63	0.00	0.00	0.00	0.63	11.39	21.52	65.20	0.63
2016	총계	7,068	1,050	472	0	1	14	287	2,098	2,737	409
		(100)	14.86	6.68	0.00	0.01	0.20	4.06	29.68	38.72	5.79
2016	건물등	172	3	0	0	0	0	9	25	123	12
		(2.43)	1.74	0.00	0.00	0.00	0.00	5.23	14.53	71.51	6.99
2017	총계	8,190	1,114	1,051	18	10	42	421	2,436	2,638	460
		(100)	13.60	12.83	0.22	0.12	0.51	5.14	29.74	32.21	5.62
2017	건물등	179	0	1	0	0	0	32	30	101	15
		(2.19)	0.00	0.56	0.00	0.00	0.00	17.88	16.76	56.42	8.38
2018	총계	10,302	996	1,414	1	6	57	696	3,322	3,281	529
		(100)	9.67	13.73	0.01	0.06	0.55	6.76	32.25	31.85	5.13
2018	건물등	284	2	7	0	1	1	83	54	115	21
		(2.76)	0.70	2.46	0	0.35	0.35	29.23	19.01	40.49	7.41
2019	총계	14,030	1,065	1,986	7	7	81	957	4,988	4,276	663
		(100)	7.59	14.16	0.05	0.05	0.58	6.82	35.55	30.48	4.73
2019	건물등	517	3	6	0	0	3	119	161	201	24
		(3.68)	0.58	1.16	0.00	0.00	0.58	23.02	31.14	38.88	4.64

④ (세부질병 종류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보다 세분화 하였을 때, 뇌혈관 질병재해의 경우 2015년 7.59%, 2016년 4.65%, 2017년 16.20%를 차지하며, 2018년 25.7%, 2019년 21.08%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질병재해의 경우 2015년 3.80%, 2016년 0.58%, 2017년 1.68%, 2018년 3.52%, 2019년 1.93%를 차지하고 있다.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발생한 뇌심혈관질병의 연도별 현황은 2015년 11.39%, 2016년 5.23%, 2017년 17.88%, 2018년 29.22%, 2019년 23.73%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뇌혈관질병과 심혈관질병으로 구분하면, 심혈관질병에 비해 뇌혈관질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상질병 세부분류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직업병															
			소계	진폐증	소음성난청	이상기압	진동장애	물리적인자기타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기타유기화합물	벤젠	타르	염화비닐	다이소시아네이트	직업성천식	석면	기타화학물질
2015	총계	7,064 (100)	1,445 20.44	698 9.88	372 5.27	10 0.14	176 2.49	8 0.11	0 0.00	0 0.00	0 0.00	4 0.06	0 0.00	0 0.00	0 0.00	4 0.06	8 0.11	3 0.04
	건물등	158 (2/24)	3 1.89	1 0.6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6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16	총계	7,068 (100)	1,756 24.84	1,050 14.86	472 6.68	11 0.16	14 0.20	18 0.25	0 0.00	0 0.00	1 0.01	1 0.01	0 0.00	0 0.00	0 0.00	0 0.00	12 0.17	1 0.01
	건물등	172 (2.43)	12 6.98	3 1.74	0 0.00	0 0.00	0 0.00	2 1.1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17	총계	8,190 (100)	2,472 30.18	1,114 13.60	1,051 12.83	6 0.07	13 0.16	25 0.31	0 0.00	0 0.00	10 0.12	4 0.05	0 0.00	0 0.00	1 0.01	0 0.00	30 0.37	70 0.09
	건물등	179 (2.19)	3 1.68	0 0.00	1 0.5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18	총계	10,302 (100)	2,740 26.60	996 9.67	1,414 13.73	5 0.05	13 0.13	48 0.47	0 0.00	0 0.00	6 0.06	6 0.06	0 0.00	0 0.00	0 0.00	0 0.00	49 0.48	2 0.02
	건물등	284 (2.76)	22 7.75	2 0.70	7 2.46	0 0.00	0 0.00	3 1.06	0 0.00	0 0.00	1 0.3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35	0 0.00
2019	총계	14,030 (100)	3,428 24.43	1,065 7.59	1,986 14.16	3 0.02	4 0.03	50 0.36	0 0.00	0 0.00	7 0.05	5 0.04	0 0.00	0 0.00	1 0.01	0 0.00	68 0.48	7 0.05
	건물등	517 (3.68)	22 4.26	3 0.58	6 1.16	0 0.00	0 0.00	1 0.1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0.58	0 0.00

연도	구분	직업병										직업관련성 질병								
		연	수은	크롬	카드뮴	망간	감염성질환	직업성피부질환	직업성암	직업병기타	소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요통	사고성요통	수근관증후군	간질환	정신질환	직업관련성기타
2015	총계	0 0.00	12 0.17	0 0.00	1 0.01	0 0.00	74 1.05	18 0.25	42 0.59	15 0.21	5,619 79.55	314 4.45	27 0.38	2,180 30.86	1,009 14.08	1,883 26.66	141 2.00	3 0.04	41 0.56	21 0.30
	건물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63	0 0.00	0 0.00	155 98.11	12 7.59	6 3.80	33 20.89	14 8.87	89 56.33	1 0.63	0 0.00	0 0.00	0 0.00
2016	총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3 1.03	15 0.21	63 0.89	25 0.35	5,312 75.16	262 3.71	25 0.35	2,098 29.68	575 8.14	2,162 30.59	112 1.58	6 0.08	65 0.92	7 0.10
	건물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 2.91	0 0.00	1 0.58	1 0.58	160 93.02	8 4.65	1 0.58	25 14.53	7 4.08	116 67.44	1 0.58	0 0.00	2 1.16	0 0.00
2017	총계	0 0.00	0 0.00	3 0.04	15 0.18	0 0.00	91 1.11	15 0.18	75 0.92	12 0.15	5,718 69.82	395 4.82	26 0.32	2,436 29.74	891 10.88	1,747 21.33	121 1.48	4 0.05	82 1.00	16 0.20
	건물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56	0 0.00	1 0.56	0 0.00	176 98.32	29 16.2	3 1.68	30 16.76	8 4.47	93 51.94	3 1.68	0 0.00	10 5.59	0 0.00
2018	총계	0 0.00	0 0.00	1 0.01	0 0.00	0 0.00	72 0.70	16 0.16	98 0.95	14 0.14	7,562 73.40	640 6.21	56 0.54	3,322 32.25	1,210 11.75	2,071 20.10	112 1.09	3 0.03	125 1.21	23 0.22
	건물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 2.11	0 0.00	0 0.00	2 0.70	262 92.25	73 25.7	10 3.52	54 19.01	8 2.82	107 37.68	4 1.41	0 0.00	5 1.76	1 0.35
2019	총계	0 0.00	0 0.00	1 0.01	6 0.04	0 0.00	75 0.53	26 0.19	113 0.81	11 0.09	10,602 75.57	857 6.11	100 0.71	4,988 35.55	1,914 13.64	2,362 16.84	176 1.25	1 0.01	184 1.31	20 0.14
	건물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1.35	0 0.00	2 0.39	0 0.00	495 95.74	109 21.08	10 1.93	161 31.14	56 10.83	145 2.71	7 1.35	0 0.00	7 1.35	0 0.00

⑤ (세부 질병종류 및 규모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혈관질병, 심혈관질병의 사업 규모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6> 업무상질병 재해 규모별 뇌심혈관 질병재해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 이상
2015	총계	7,064 (100)	1,366 19.34	842 11.92	1,288 18.23	544 7.7	629 8.9	734 10.39	346 4.9	410 5.8	905 12.81	
	뇌혈관 질환 (4.45%)	314 (100)	82 26.11	39 12.42	76 24.20	24 7.64	29 9.24	39 12.42	8 2.55	4 1.27	13 4.15	
	심장 질환 (0.38%)	27 (100)	6 22.22	3 11.11	3 11.11	5 18.52	2 7.41	3 11.11	2 7.41	1 3.70	2 7.41	
	2016	총계	7,068 (100)	1,323 18.72	815 11.53	855 12.10	442 6.25	631 8.93	585 8.28	720 10.19	347 4.91	435 6.15
뇌혈관 질환 (3.71%)	262 (100)	66 25.19	48 18.32	29 11.07	18 6.87	25 9.54	17 6.49	33 12.60	12 4.58	6 2.29	8 3.05	
심장 질환 (0.35%)	25 (100)	3 12.00	5 20.00	3 12.00	2 8.00	5 20.00	1 4.00	1 4.00	0 0.00	1 4.00	4 16.00	
2017	총계	8,190 (100)	1,457 17.79	902 11.01	914 11.16	517 6.31	689 8.41	588 7.18	844 10.31	318 3.88	678 8.28	1,283 15.67
	뇌혈관 질환 (4.82%)	395 (100)	100 25.32	57 14.43	64 16.20	22 5.57	48 12.15	36 9.11	37 9.37	14 3.54	4 1.01	13 3.30
	심장 질환 (0.32%)	26 (100)	7 26.92	5 19.23	7 26.92	0 0.00	2 7.69	1 3.85	1 3.85	0 0.00	1 3.85	2 7.69
	2018	총계	10,302 (100)	1,787 17.35	1,117 10.84	1,162 11.28	592 5.75	815 7.81	814 7.90	1,169 11.35	611 5.93	865 8.40
뇌혈관 질환 (6.21%)	640 (100)	152 23.75	105 16.41	105 16.41	45 7.03	52 8.13	74 11.56	58 9.06	18 2.81	12 1.88	19 2.96	
심장 질환 (0.54%)	56 (100)	14 25.00	10 17.86	9 16.07	5 8.93	5 8.93	3 5.36	5 8.93	2 3.56	3 5.36	0 0.00	
2019	총계	14,030 (100)	2,458 17.52	1,445 10.30	1,579 11.25	976 6.96	1,044 7.44	1,165 8.30	1,658 11.82	880 6.27	1,061 7.56	1,764 12.57
	뇌혈관 질환 (6.11%)	857 (100)	239 27.89	106 12.37	118 13.77	74 8.63	58 6.77	90 10.50	121 14.12	20 2.33	17 1.98	14 1.64
	심장 질환 (0.71%)	100 (100)	22 22.00	16 16.00	10 10.00	6 6.00	12 12.00	9 9.00	15 15.00	3 3.00	3 3.00	4 4.00

⑥ (연령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발생현황

○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구분하여 연령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7> 뇌심혈관질환 구분 및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계	18세 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5	총계	7,064 (100)	0 0.00	59 0.84	216 3.06	451 6.38	688 9.74	762 10.79	880 12.46	991 14.03	1,238 17.53	1,779 25.18
	뇌혈관 질환 (4.45%)	314 (100)	0 0.00	1 0.32	2 0.64	9 2.87	25 7.96	39 12.42	56 17.83	68 21.66	64 20.38	50 15.92
	심장 질환 (0.38%)	27 (100)	0 0.00	0 0.00	1 3.70	2 7.41	2 7.41	2 7.41	4 14.81	8 29.64	4 14.81	4 14.81
2016	총계	7,068 (100)	0 0.00	79 1.08	219 3.10	354 5.01	607 8.59	679 9.61	799 11.30	980 13.87	1,139 16.11	2,215 31.42
	뇌혈관 질환 (3.71%)	262 (100)	0 0.00	0 0.00	2 0.76	8 3.05	22 8.40	26 9.92	48 18.32	55 20.99	49 18.70	52 19.86
	심장 질환 (0.35%)	25 (100)	0 0.00	1 4.00	0 0.00	1 4.00	2 8.00	4 16.00	4 16.00	8 32.00	2 8.00	3 12.00
2017	총계	8,190 (100)	0 0.00	84 1.03	226 2.76	365 4.46	575 7.02	638 7.79	803 9.80	942 11.50	1,391 16.98	3,166 38.66
	뇌혈관 질환 (4.82%)	395 (100)	0 0.00	0 0.00	5 1.27	9 2.28	25 6.33	37 9.37	63 15.95	81 20.51	84 21.27	91 23.02
	심장 질환 (0.32%)	26 (100)	0 0.00	0 0.00	0 0.00	0 0.00	2 7.69	3 11.54	5 19.23	2 7.69	9 34.69	5 19.23
2018	총계	10,302 (100)	0 0.00	85 0.83	270 2.62	385 3.74	701 6.80	864 8.39	1,042 10.11	1,269 12.32	1,716 16.66	3,970 38.54
	뇌혈관 질환 (6.21%)	640 (100)	0 0.00	0 0.00	6 0.94	13 2.03	19 2.97	57 8.91	78 12.19	134 20.94	123 19.22	210 32.80
	심장 질환 (0.54%)	56 (100)	0 0.00	0 0.00	0 0.00	1 1.79	5 8.93	3 5.36	13 23.21	11 19.64	9 16.07	14 25.00
2019	총계	14,030 (100)	0 0.00	115 0.82	371 2.64	539 3.84	886 6.32	1,069 7.62	1,407 10.03	1,813 12.92	2,187 15.59	5,643 40.22
	뇌혈관 질환 (6.11%)	857 (100)	0 0.00	3 0.35	6 0.70	14 1.63	23 2.68	85 9.92	99 11.55	145 16.92	170 19.84	312 36.41
	심장 질환 (0.71%)	100 (100)	0 0.00	1 1.00	1 1.00	4 4.00	4 4.00	4 4.00	15 15.00	17 17.00	19 19.00	35 35.00

(4) 산재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재해자 현황 비교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업무상 재해 발생현황을 토대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상 재해(부상 및 질병자,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Ⅲ-28>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재해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총 인원수	재해자 총계	부상및 질병	사망	총 인원수	재해자 총계	부상및 질병	사망	총 인원수	재해자 총계	부상및 질병	사망
2017	1,120, 458	5,576	5,503	73	182, 721	148	122	26	317, 602	748	746	2
2018	1,160, 586	6,073	5,995	78	비공개	335	286	49	320, 326	846	842	2
2019	1,195, 051	6,289	6,222	67	187, 051	763	708	55	323, 697	880	875	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의 재해 현황 중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자(과로사)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29> 산재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사고		질병		과로사		경비 과로사 ²⁵⁾ (비중)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뇌심사망자	사망 비율 (질병/뇌심)	
2017	산재법	80,665	964	9,183	993	354	35.6	4(1.13)
	공무원	5,319	47	257	26	21	80.8	
	군인	104	6	75	30	12	40.0	
	교직원	744	3	101	3	3	100	
2018	산재법	90,832	971	11,473	1,171	457	39.0	21(4.60)
	공무원	5,889	67	184	11	8	72.7	
	군인	281	16	54	33	5	15.2	
	교직원	812	1	129	4	4	100	
2019	산재법	94,047	855	15,195	1,165	503	43.2	17(3.38)
	공무원	6,067	48	231	28	19	67.9	
	군인	682	11	81	44	5	11.4	
	교직원	960	4	148	1	0	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건을 분석하면, 2017년 과로사 사건 수 354건 중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인정)은 4건으로 1.13%, 2018년의 경우 457건 중 21건으로 4.6%, 2019년의 경우 503건 중 17건으로 3.4%를 차지하였다.

25)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2019년 인정사건 수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 및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25.0.0”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인정, 불인정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비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및 재해발생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수 및 사업장 유형별 분석, 연도별 업무시간 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정, 불인정 사건 간 업무시간 등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연령

(1) 전체 연령별 분석

가. 전체 기술통계량

구분	개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80	50	85	67.94	6.356

- 표본의 평균 연령은 67.94세이고, 최소는 50세, 최대는 85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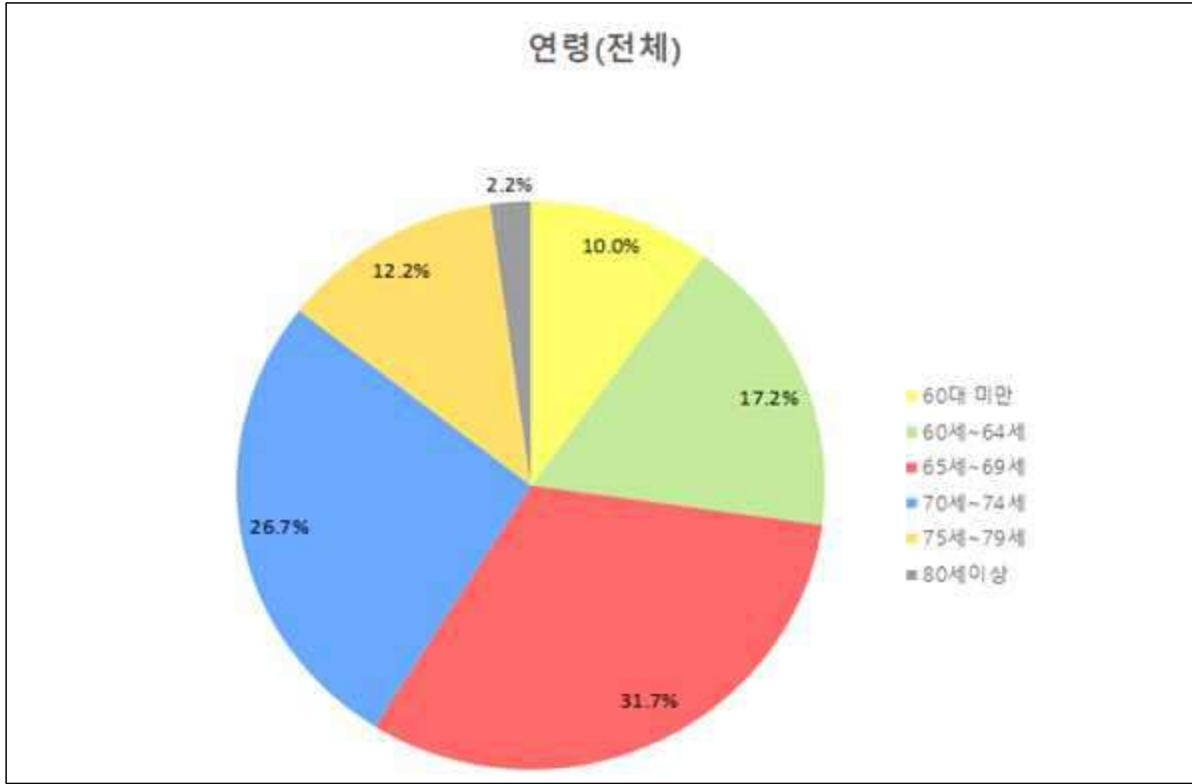
나. 전체 연령 분포

<표IV-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구분	60세 미만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이상	전체
개수	18	31	57	48	22	4	180
비중	10.0	17.2	31.7	26.7	12.2	2.22	100.0

- 표본의 연령 중 65세~69세 사이가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IV-1>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2) 인정·불인정 사건 분포

가. 인정·불인정 평균 비교

인정· 불인정 연령 분포

연령	인정여부	평균	N	표준편차
연령	인정	68.22	92	5.333
	불인정	67.65	88	7.294
	전체	67.94	188	6.356

- 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
- 불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7.65세, 최소 50세, 최대 8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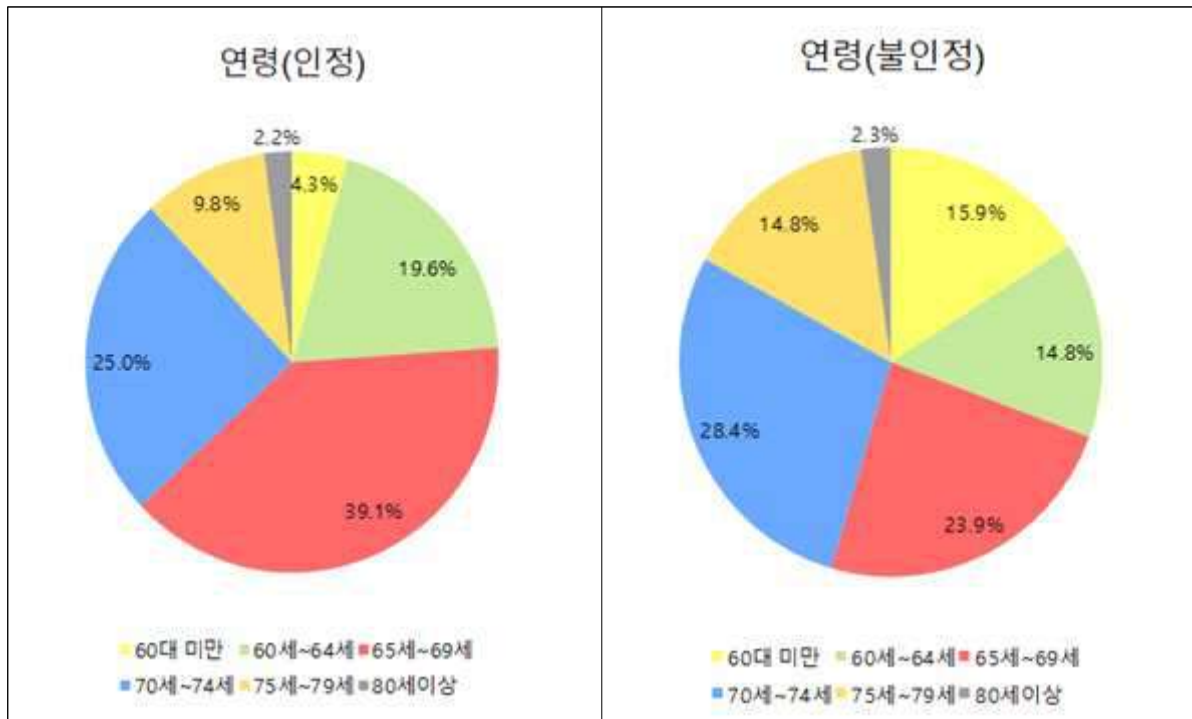
나. 인정·불인정 연령 분포

<표IV-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단위: 건)

구분	60세 미만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이상	전체
인정	4	18	36	23	9	2	92
불인정	14	13	21	25	13	2	88

<그림IV-2>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인정·불인정 현황



2.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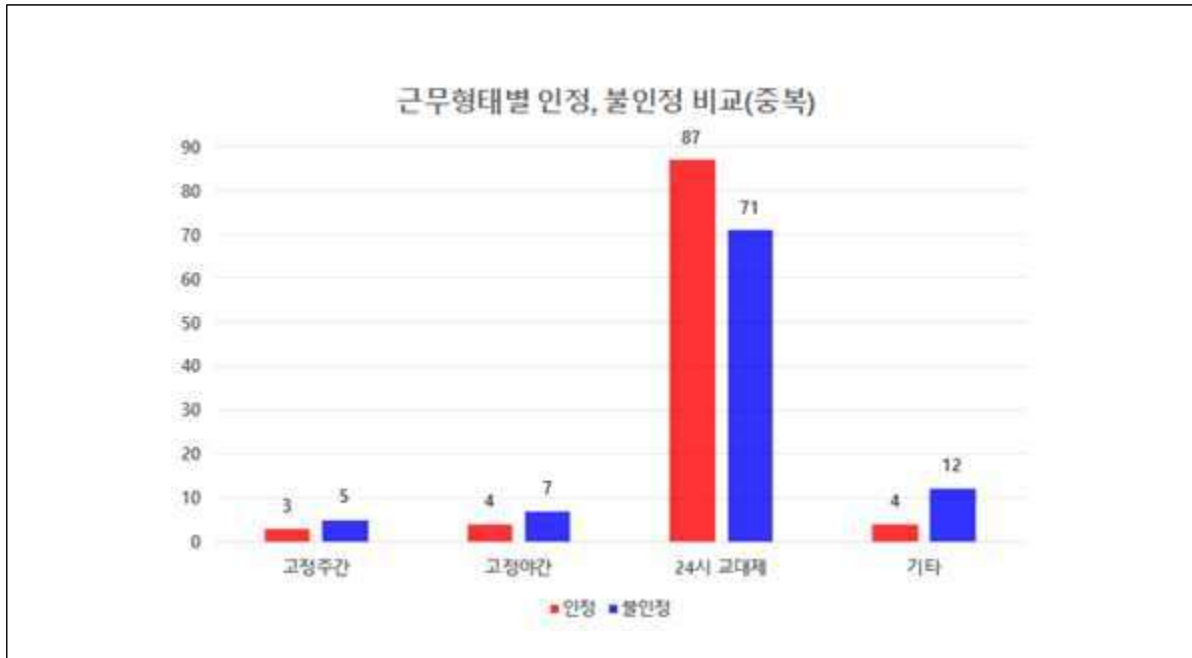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 고정저녁·고정야간,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시) 고정야간+24시간격일제, 24시간격일제 등 근무형태가 혼재된 경우 중복 체크하였으며, ‘기타’는 3조2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체크하였다. 전체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중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81.87%를 차지하였다.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를 분석(중복)하면, 인정 사건 98건 중 24시간 교대제는 87건(88.78%)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 사건 92건 중 아파트는 71건(77.17%)를 차지하며, 아파트 71건 중 70건(98.59%)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3>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별 발생 현황

구분	인정여부	고정주간	고정야간	24시간	기타	계
근무기간	인정	3	4	87	4	98
		3.06	4.08	88.78	4.08	100
	불인정	5	7	71	12	95
		5.26	7.37	74.74	12.63	100
	계	8	11	158	16	193

<그림IV-3>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별 발생 현황



3. 1일 업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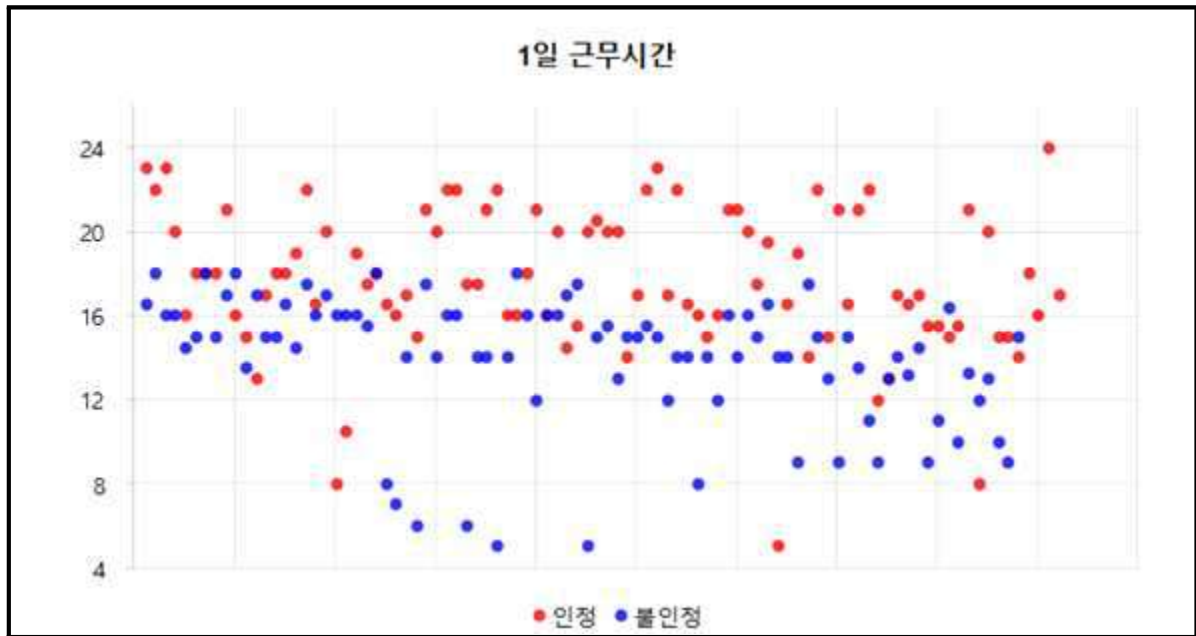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업무시간, 휴게시간(조식/중식/석식), 수면시간(야간 취침시간)이 각각 차지하는 시간에 따라 인정·불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불인정을 구분하여 1일 업무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 집단통계량

구분	인정여부	개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업무시간	인정	92	17.6739	3.46207	.36095
	불인정	88	13.9236	3.15840	.33669

-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 표본의 평균 1일 업무시간은 17.67시간, 불인정된 사건 표본의 1일 업무시간은 평균 13.92시간으로 인정·불인정 사건 간 1일 3.75시간이 차이를 보였다.

<그림IV-4>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업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나. 인정·불인정 사건 간 1일 업무시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독립표본 검정

업무 시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업무 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950	.331	7.582	178	.000	3.75028	.49461	2.77422	4.72633

-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의 1일 업무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t=7.582, p<0.05)하다고 볼 수 있다.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1일 업무시간이 3.75시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수면시간

- 2018. 1. 1.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수면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 집단통계량

구분	인정여부	개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수면시간	인정	92	2.8859	2.53124	.26390
	불인정	88	4.8205	2.43892	.25999

○ 인정된 사건은 평균 2.89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평균은 4.8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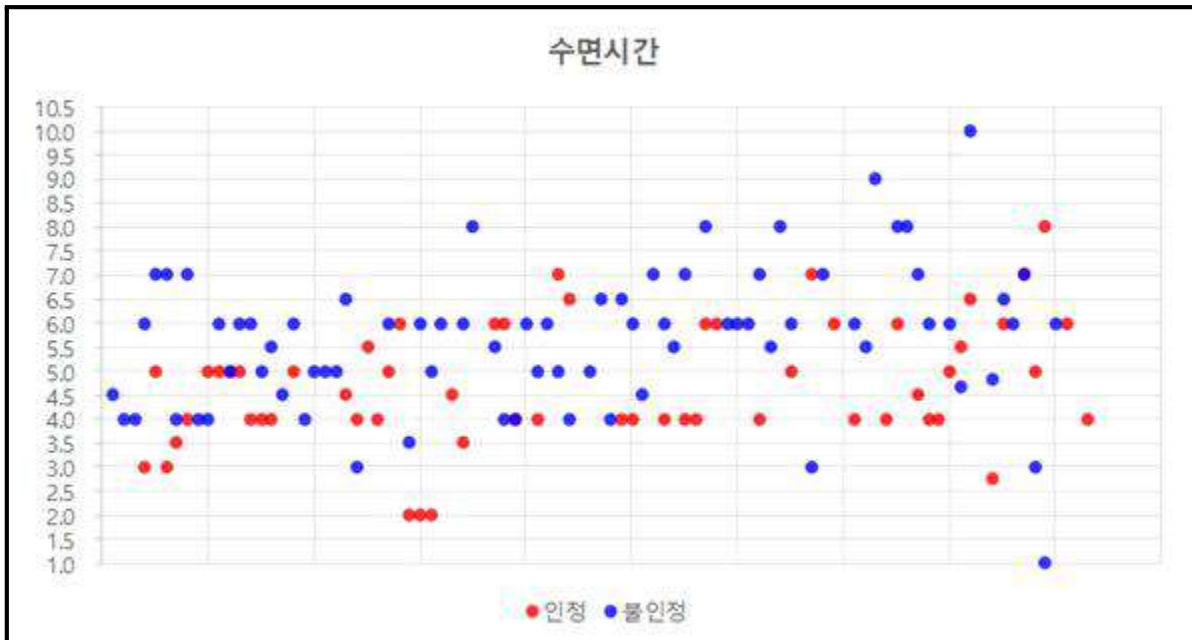
나. 인정/불인정 간 수면시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독립표본 검정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면 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5.217	.024	-5.218	178	.000	-1.93458	.37076	-2.66624	-1.2029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222	177. 990	.000	-1.93458	.37076	-2.66564	-1.20353

○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살펴보면, 두 집단 수면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t=-5.22$, $p<0.05$)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1일 수면시간이 1.93시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5> 경비노동자 과로사 1일 수면시간 인정·불인정 분포



5. 재해발생 1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 평균 야간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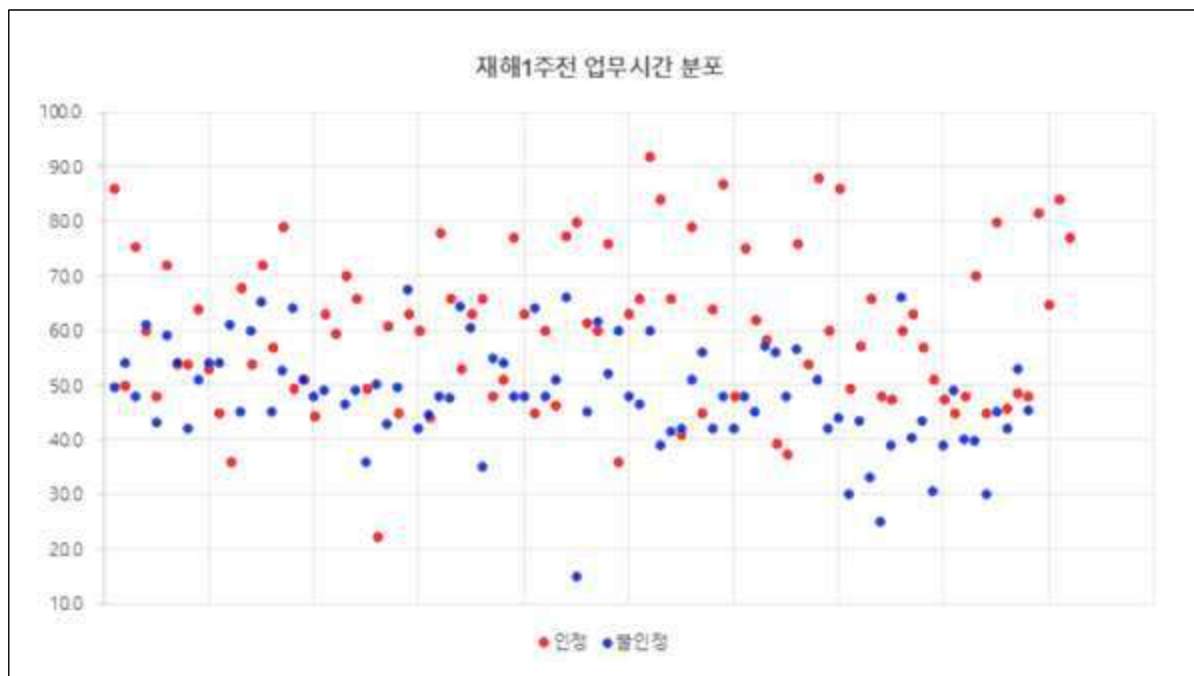
가. 집단통계량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1주 평균	인정	92	60.2054	14.23621	1.48423
	불인정	86	48.3566	9.68565	1.04443
1주 평균 야간	인정	88	18.1889	9.76310	1.04075
	불인정	73	10.0236	8.33794	.97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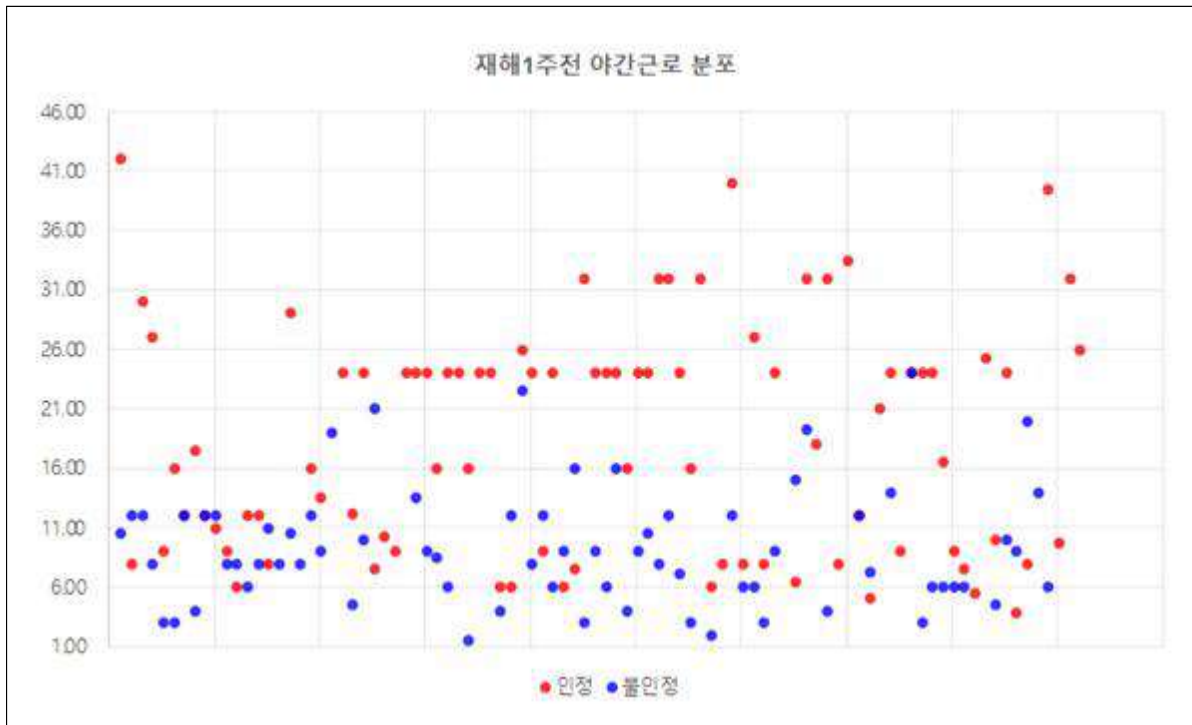
- 결측값이나 '0'으로 기재된 값은 제외한 수치를 분석하였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0.21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48.3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8.19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0.0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나. 재해 1주 전 업무시간/야간근로시간 분포(인정/불인정)

<그림IV-6>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그림IV-7>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다. 인정/불인정 간 재해 1주 전 업무시간/야간근무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구분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주 평균 업무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15.226	.000	6.448	176	.000	11.84881	1.83760	8.22223	15.4753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6.529	161.136	.000	11.84881	1.81487	8.26480	15.43281
1주 평균 야간근무	등분산을 가정함	55.927	.000	7.112	159	.000	8.98722	1.26373	6.49136	11.4830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507	135.234	.000	8.98722	1.19710	6.61976	11.35468

- 1주 평균 업무시간, 1주 평균 야간시간 모두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 재해발생 1주 전 평균업무시간을 살펴보면, 인정·불인정 사건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t=3.529$, $p<0.05$)하다.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평균 11.85시간 업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불인정 사건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t=7.507, p<0.05$)하다. 인정된 사건이 불인정된 사건보다 평균 8.97시간 야간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재해발생 4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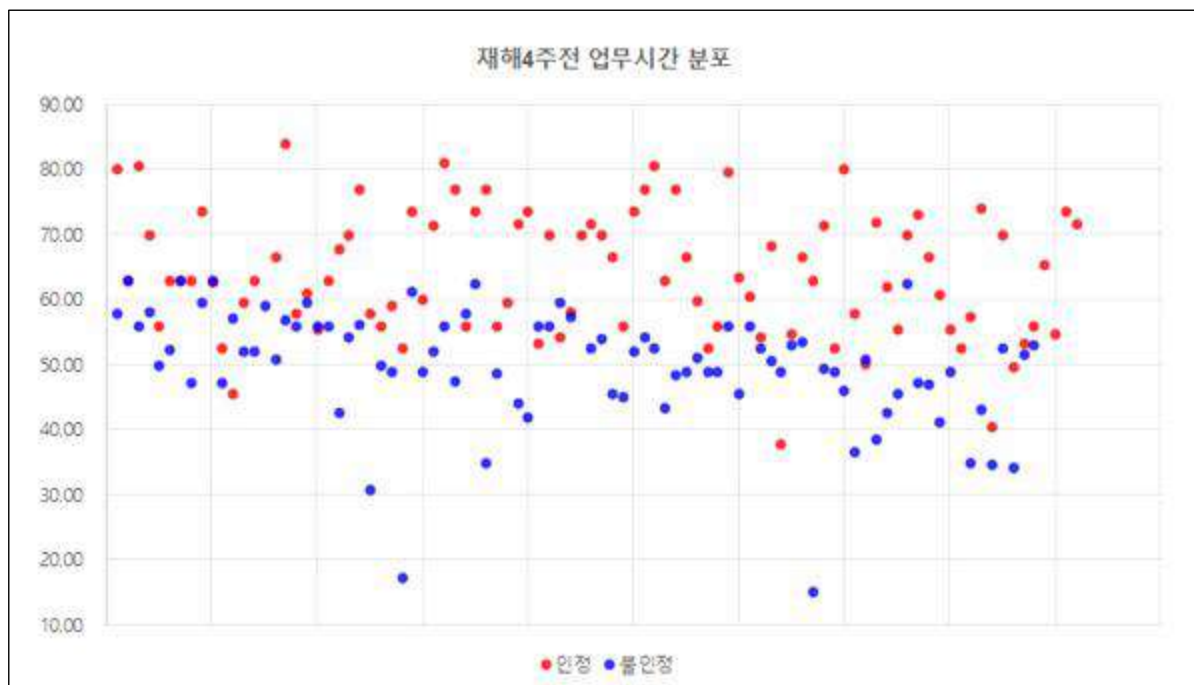
가. 집단통계량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4주 평균 업무시간	인정	91	63.9860	9.70070	1.01691
	불인정	85	49.9202	8.85277	.96022
4주 평균 야간시간	인정	86	19.5992	9.35904	1.00921
	불인정	73	9.6218	4.89801	.57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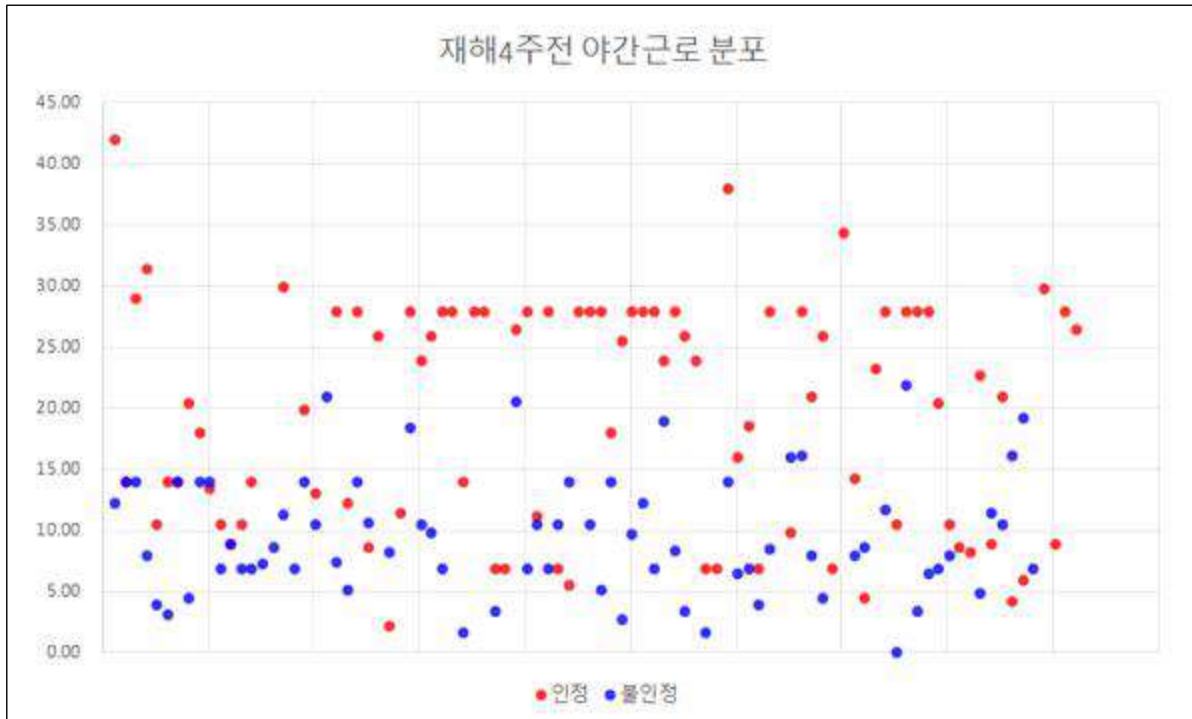
- 결측값이나 '0'으로 기재된 값은 제외한 수치를 분석하였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97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49.9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9.60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9.6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나. 재해 4주 전 업무시간/야간근로시간 분포(인정/불인정)

<그림IV-8>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그림IV-9>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다. 인정·불인정 간 재해발생 4주 전 업무시간/야간근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구분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주 평균 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4.339	.039	10.026	174	.000	14.06581	1.40300	11.29673	16.8348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0.057	173.909	.000	14.06581	1.39861	11.30536	16.82625
4주 평균 야간	등분산을 가정함	62.318	.000	8.202	157	.000	9.97741	1.21642	7.57474	12.3800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596	132.426	.000	9.97741	1.16067	7.68156	12.27325

-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과 4주 전 평균 야간시간 모두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유의($t=10.057$,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된 경우보다 평균 업무시간이 14.07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발생 4주 전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유의($t=8.596$,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 경우보다 야간시간이 9.98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재해발생 12주 전 업무시간/ 야간시간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평균 야간시간을 인정·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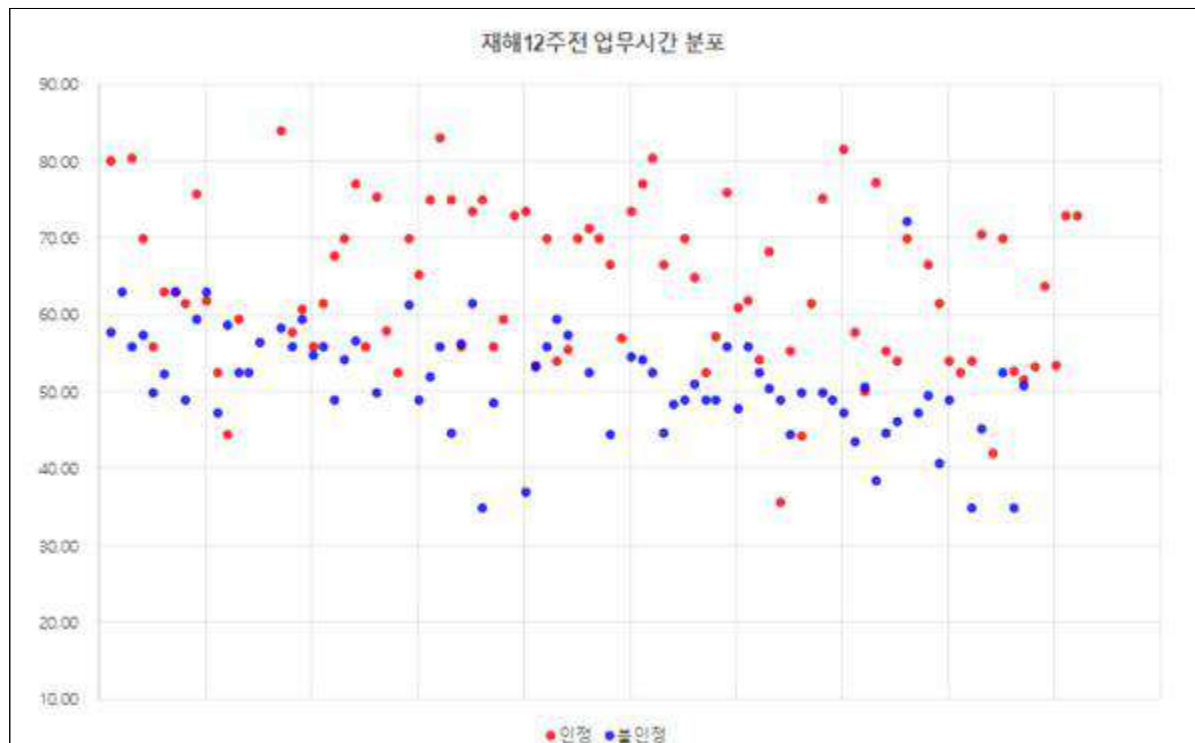
가. 집단통계량

구분	인정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12주 평균	인정	85	63.7691	10.35091	1.12271
	불인정	76	50.9514	8.40991	.96468
12주 평균 야간	인정	81	19.6417	9.56993	1.06333
	불인정	65	9.6555	5.08190	.6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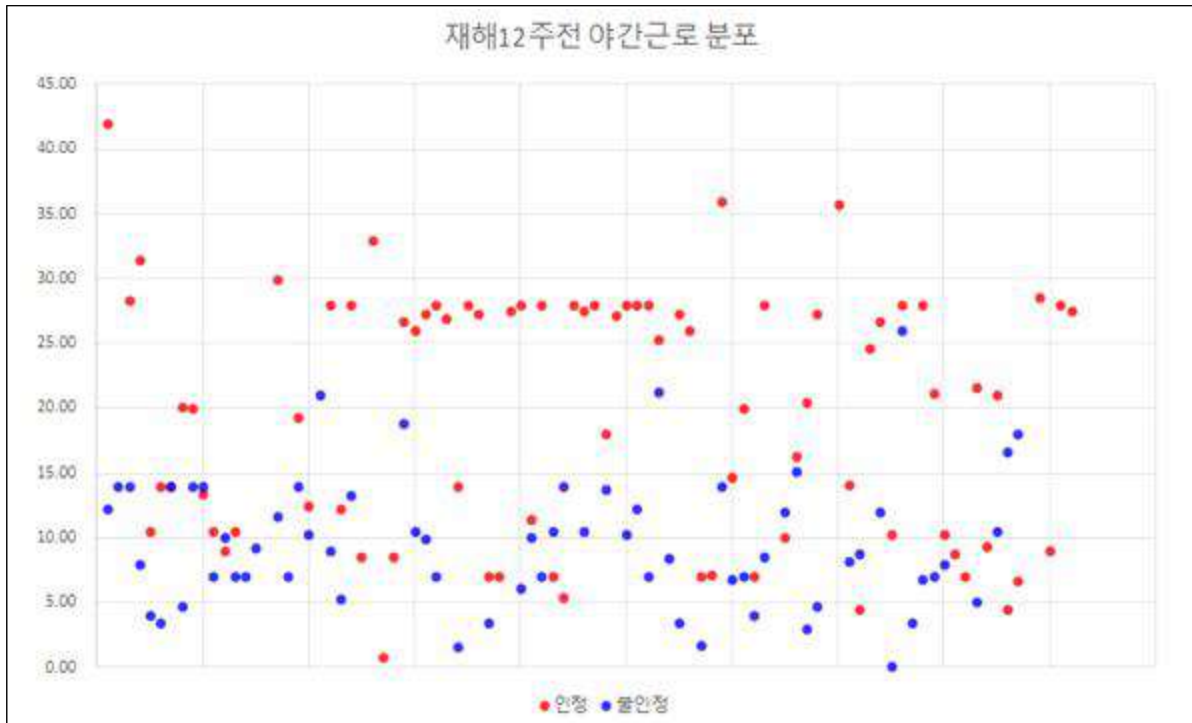
- 결측값이나 '0'으로 기재된 값은 제외한 수치를 분석하였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77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50.95시간으로 분석되었다.
- 인정된 사건의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19.64시간인 반면, 불인정된 사건 경우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9.6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나. 재해 12주 간 업무시간/야간근로시간 분포(인정/불인정)

<그림IV-10>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분포



<그림IV-11>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 분포



다. 인정·불인정 간 재해발생 12주 전 업무시간/야간근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구분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2주 평균 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11.356	.001	8.560	159	.000	12.81761	1.49738	9.86029	15.7749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659	157.604	.000	12.81761	1.48024	9.89395	15.74127
12주 평균 야간	등분산을 가정함	54.316	.000	7.594	144	.000	9.98619	1.31499	7.38701	11.5853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079	126.567	.000	9.98619	1.23612	7.54006	12.43232

-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 12주 전 평균 야간시간은 모두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업무시간 차이는 유의(t=8.659,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된 경우보다 평균 업무시간이 12.82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발생 12주 전 야간시간을 살펴보면, 인정 및 불인정 간의 야간시간 차이는 유의(t=8.079, p<0.05)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정된 경우가 불인정 경우보다 야간시간이 9.98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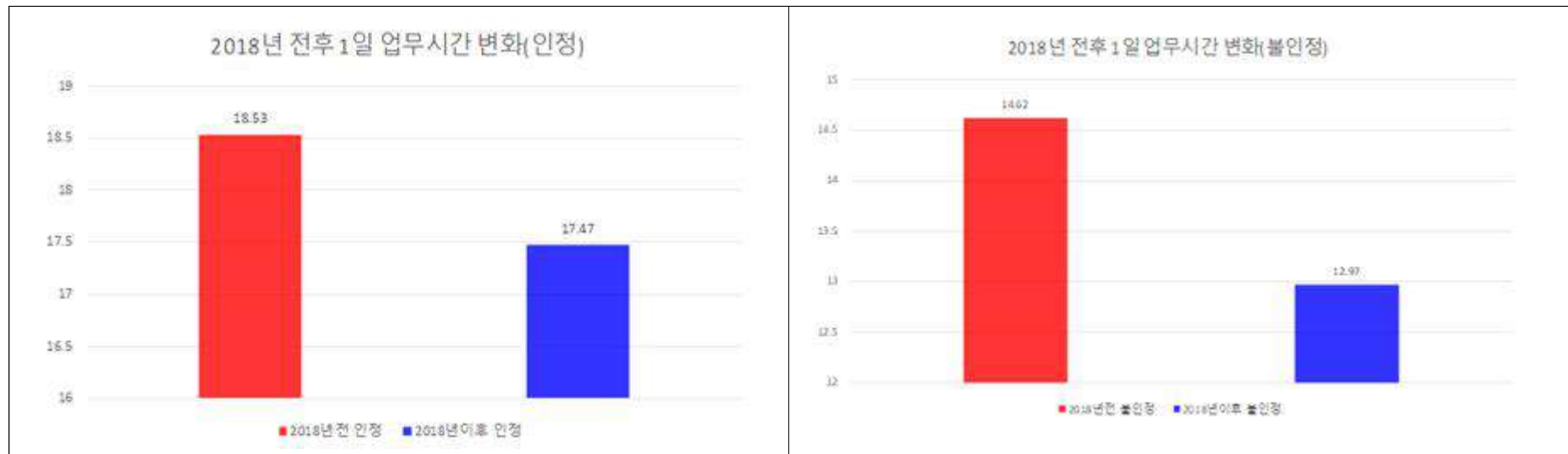
8. 2018년 이전·이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비교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1일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 12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을 비교 분석하면 2018년 이전 인정된 사건의 경우 1일 평균 업무시간 18.53시간에 비해 2018년 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이 17.47시간으로 적어졌고, 수면시간은 3.08시간에서 2.84시간으로 적어졌다. **2018년 이전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2018년 이후 지침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근무를 명시하였고,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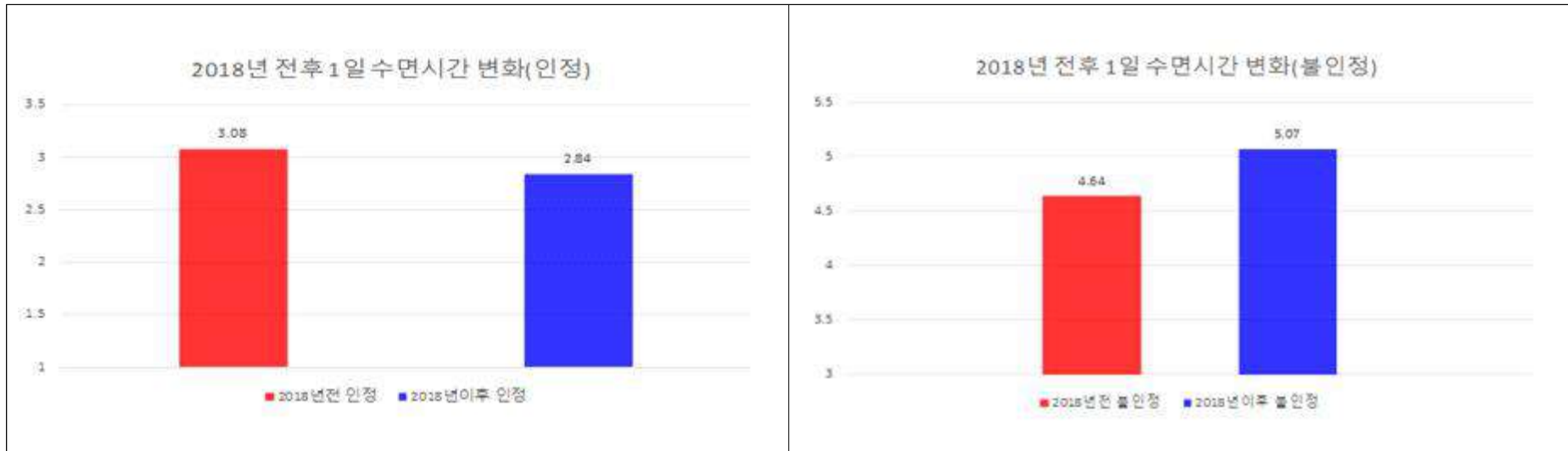
<표IV-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인정	2018년 이전	18.53	3.08	2.39	59.84	16.28	64.91	18.73	65.00	19.53
	2018년 이후	17.47	2.84	3.04	60.29	18.61	63.77	19.78	63.53	19.66
불인정	2018년 이전	14.62	4.64	2.75	51.11	9.48	52.26	9.84	53.96	10.37
	2018년 이후	12.97	5.07	2.80	44.53	8.78	46.74	9.29	47.24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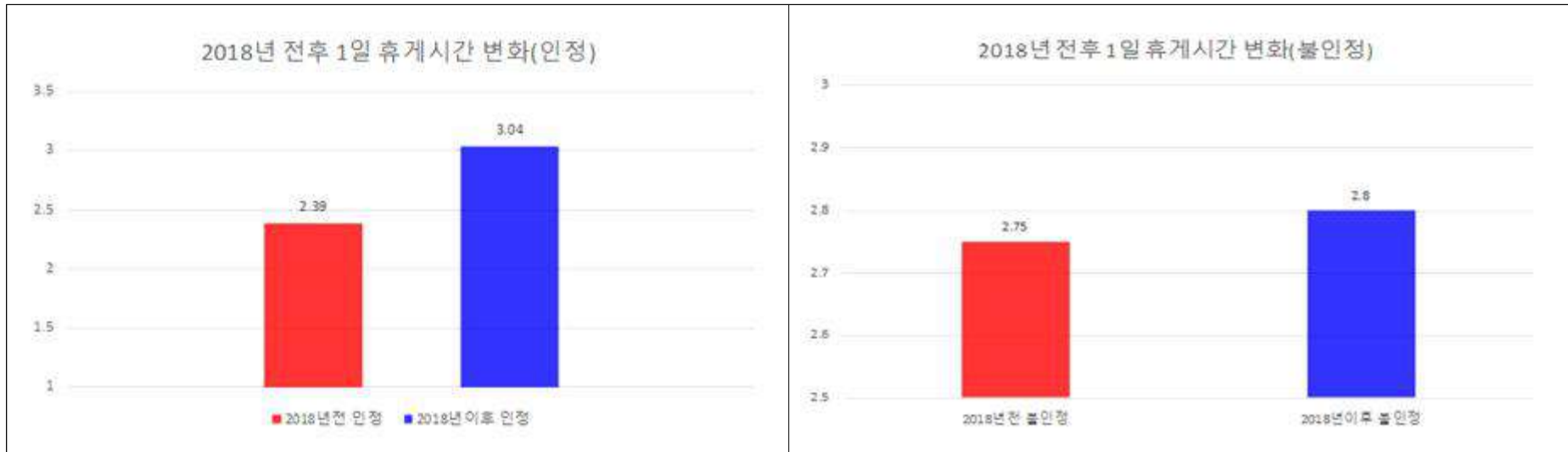
<그림IV-12>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업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그림IV-13>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수면시간 비교(인정·불인정)



<그림IV-14> 2018년 이전·이후 1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인정·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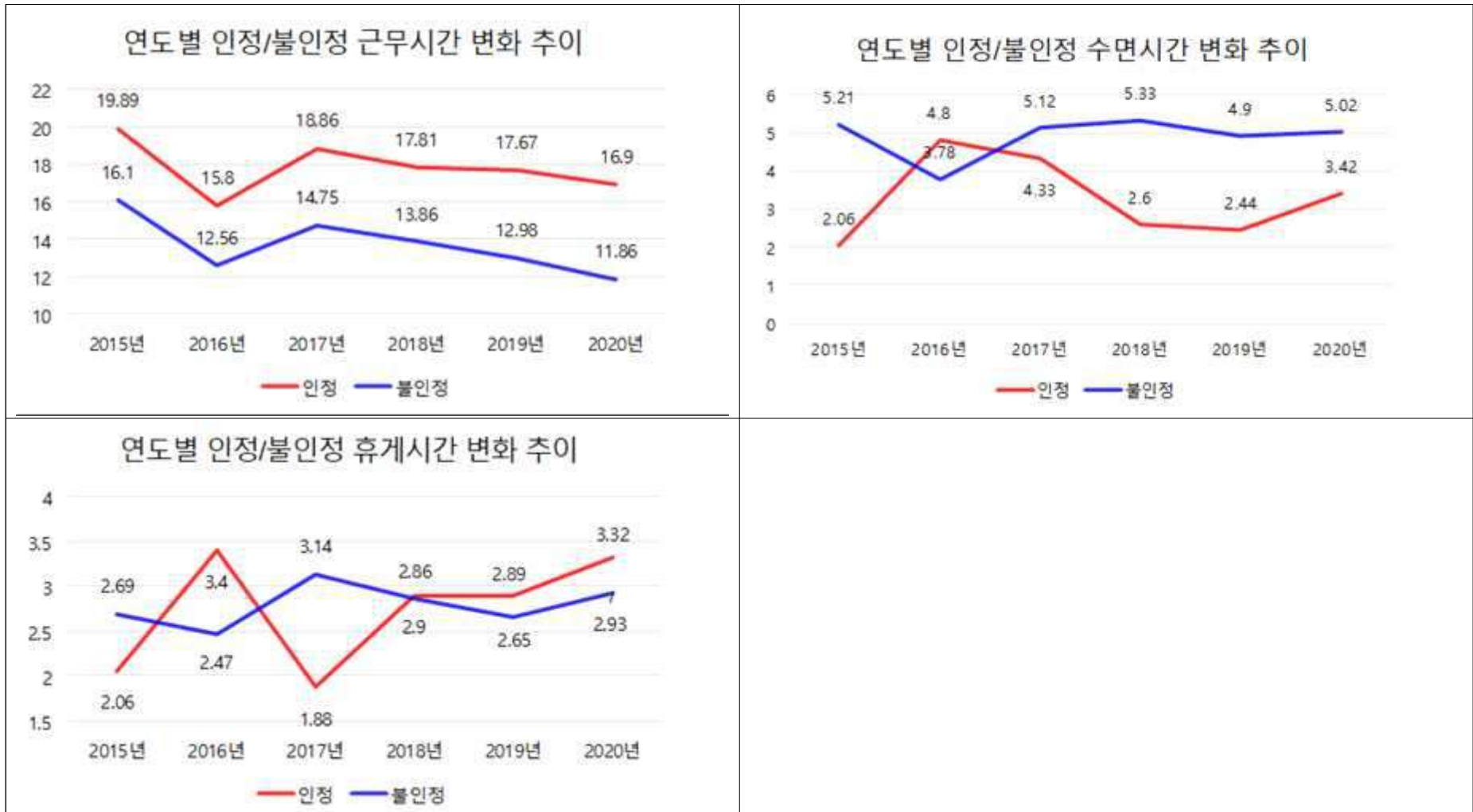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연도별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1주, 4주, 12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시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IV-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등 비교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2015년	인정	19.89	2.06	2.06	62.61	19.28	68	21.5	68.73	22.55
	불인정	16.10	5.21	2.69	52.87	9.33	55.83	10.1	56.14	10.33
2016년	인정	15.80	4.80	3.40	51.2	10	56.64	11.5	54.6	10.85
	불인정	12.56	3.78	2.47	49.23	8.67	48.12	8.81	51.87	8.76
2017년	인정	18.86	4.33	1.88	64.4	18.55	69.42	30	70.86	30
	불인정	14.75	5.12	3.14	50.5	10.21	51.52	10.34	46.91	10.49
2018년	인정	17.81	2.60	2.90	58.26	18.17	65.14	20.06	65.72	20.17
	불인정	13.86	5.33	2.86	13.32	7.67	50.22	9.06	8.64	9.59
2019년	인정	17.67	2.44	2.89	63.18	20.08	64.11	21.6	62.36	20.58
	불인정	12.98	4.90	2.65	44.13	11.68	45.72	9.58	46.08	9.10
2020년	인정	16.90	3.42	3.32	60.73	18.06	61.83	18.18	61.43	18.31
	불인정	11.86	5.02	2.93	41.38	9.06	43.79	10.55	44.06	10.90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2018년 이후 1일 업무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18.18시간에 비해 17.46시간으로 적어졌고, 1일 수면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3.73시간에 비해 2.82시간으로 적어졌고, 휴게시간은 2018년 이전 평균 2.45시간에 비해 3.04시간으로 많아졌다.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에는 인정된 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전에 비해 업무시간이 적어도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수면 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소 증가하여도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15> 연도별 평균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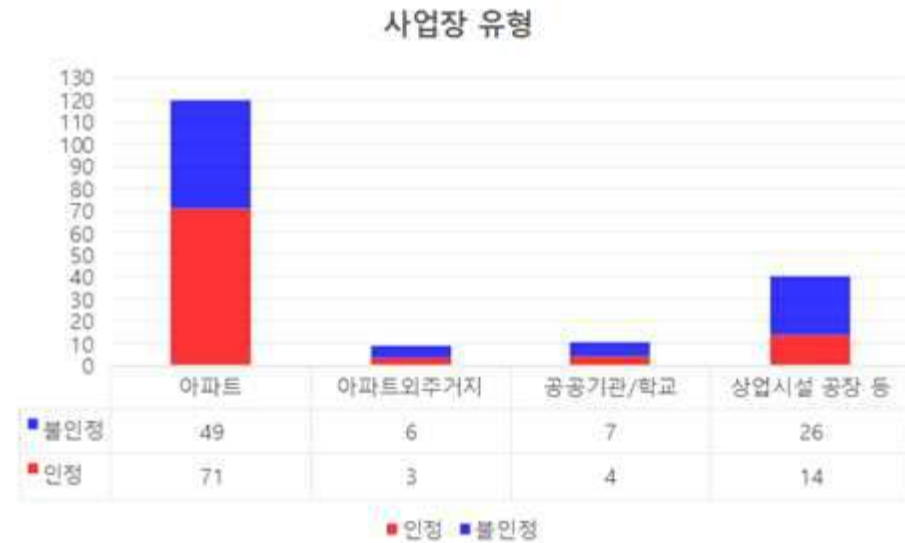
9. 사업장 유형별 분포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학교 등), 상업시설(빌딩, 상가, 공장, 신축공사현장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정·불인정 전체 사건 중 66.67%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으며, 인정 사건 중 77.17%의 과로사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다. 인정 사건 중 아파트 외 주거지를 포함할 경우 80.43%의 과로사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생 현황을 토대로 사업장 유형 중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병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IV-1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표IV-6>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분포

사업장 유형	인정	불인정	전체	비고(%)
아파트	71	49	120	66.67
아파트 외 주거지	3	6	9	5.00
공공기관/학교	4	7	11	6.11
상업시설, 공장 등	14	26	40	22.22
계	92	88	180	(100)



○ 경비노동자의 인정·불인정 사건에 대해 아파트, 아파트 외 시설로 분석한 결과 인정된 사건의 경우 아파트 외 시설의 경비노동자에 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이 많고, 수면시간, 휴게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7> 사업장 유형별 업무시간, 수면시간, 야간시간 비교 / <그림IV-17> 아파트·아파트 외 사업장 평균 업무시간 비교

구분		1일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업무시간		야간시간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아파트	인정	71	18.31	71	2.70	71	3.08	71	61.35	69	19.44	70	65.14	68	20.61	66	65.09	65	20.73
	불인정	49	14.40	49	4.40	49	2.83	49	47.43	40	9.05	47	51.51	41	10.38	44	51.74	38	10.16
아파트 외주거	인정	3	9.33	3	4.30	3	1.00	3	43.40	3	4.63	3	42.71	2	6.62	3	43.44	2	6.94
	불인정	6	14.70	6	6.50	6	3.13	6	50.47	6	6.30	6	50.36	6	6.36	5	49.65	6	6.60
공공 기관	인정	4	14.13	4	3.88	4	2.25	4	57.36	4	14.25	4	59.70	4	15.19	4	58.87	4	14.90
	불인정	7	12.43	7	4.36	7	2.50	7	50.21	4	7.63	7	47.96	4	8.16	5	53.37	3	7.97
상업 시설	인정	14	17.25	14	3.30	14	2.68	14	58.79	12	15.70	14	64.02	12	17.48	12	63.21	10	17.02
	불인정	26	13.25	26	5.40	26	2.63	26	49.05	23	10.49	25	47.36	22	9.36	22	49.13	19	9.71



10. 상시 노동자 수 규모별 현황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통해 상시 노동자 수 규모별 현황²⁶⁾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에 대한 분석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IV-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유형	인정	불인정	전체	비고(%)
5인미만	40	38	78	42.42
5인~10인미만	8	5	13	7.18
10인~20인미만	6	5	11	6.08
20인~30인미만	2	0	2	1.10
30인이상	2	2	4	2.21
미확인	34	39	73	40.33

<그림IV-18> 규모별 인정·불인정 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인정 사건 83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4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업무시간은 17.74시간, 수면시간 3.2시간, 휴게시간 2.67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인정 사건 전체 평균 1일 업무시간은 17.81시간, 수면시간은 2.77시간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6) 재해조사서의 경우 전체 사업장 상시 노동자 수를 입력한 경우가 있다.(예:1,000인 이상 등) 재해조사서에 5인 미만으로 입력한 경우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기재된 상시 노동자 수를 비교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였으며, 이외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1. 뇌혈관질병, 심혈관질병 유형별 분포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통해 경비노동자의 질병 유형을 살펴보면, 뇌혈관질병(뇌출혈, 뇌경색), 심혈관 질병, 기타(사인미상 등)로 구분하였을 때, 인정된 사건의 경우 뇌혈관질병은 28.58%, 심혈관질병은 59.52%를 차지하여 심혈관질병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병·심혈관질병 발생 현황 비교

질병유형		인정		불인정	비고
뇌혈관질병	뇌출혈	14	15.05	17	
	뇌경색	12	12.90	5	*뇌출혈 중복 1건
심혈관질병		55	59.14	45	*뇌출혈 중복 1건
기타		12	12.90	21	
계		93	100	88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현황> 중 뇌심혈관 질병 발생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경비노동자의 경우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이 전체 현황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10> 고용노동부 연도별 뇌혈관·심혈관질병 사망재해 발생현황

구분	뇌혈관질병 사망		심혈관질병 사망		계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15	164	57.00	129	43.00	293
2016	161	53.07	139	46.33	300
2017	179	50.56	175	49.44	354
2018	197	43.11	260	56.89	457

<그림IV-19> 경비노동자 뇌혈관질병·심혈관질병 유형별 비교



12. 경비노동자 과로사 월별 발병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재해발병월(재해발병 이후 사망한 경우 재해발병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의 경우 12월 16.87%, 1월 15.67%, 10월 12.05% 순위로 확인되었다.

<표IV-11> 경비노동자 과로사 월별 발생현황

월	전체		인정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		상업시설	
	전체	비율	인정	비율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1	20	11.17	13	14.13	12	4	0	0	0	0	1	3
2	19	10.61	8	8.70	7	6	0	1	0	0	1	4
3	17	9.50	8	8.70	5	3	1	2	0	0	2	4
4	9	5.03	3	3.26	2	4	0	0	0	0	1	2
5	13	7.26	6	6.52	6	3	0	0	0	2	0	2
6	11	6.15	6	6.52	4	3	1	1	0	0	1	1
7	7	3.91	6	6.52	5	0	0	0	0	0	1	1
8	17	9.50	10	10.87	8	4	0	0	1	1	1	2
9	11	6.15	7	7.61	3	2	1	0	0	0	3	2
10	19	10.61	10	10.87	8	6	0	0	0	1	2	2
11	14	7.82	1	1.09	1	6	0	1	0	3	0	3
12	22	12.29	14	15.22	10	7	0	1	0	0	1	0
전체	179	100.0	92	100	71	48	3	6	3	7	1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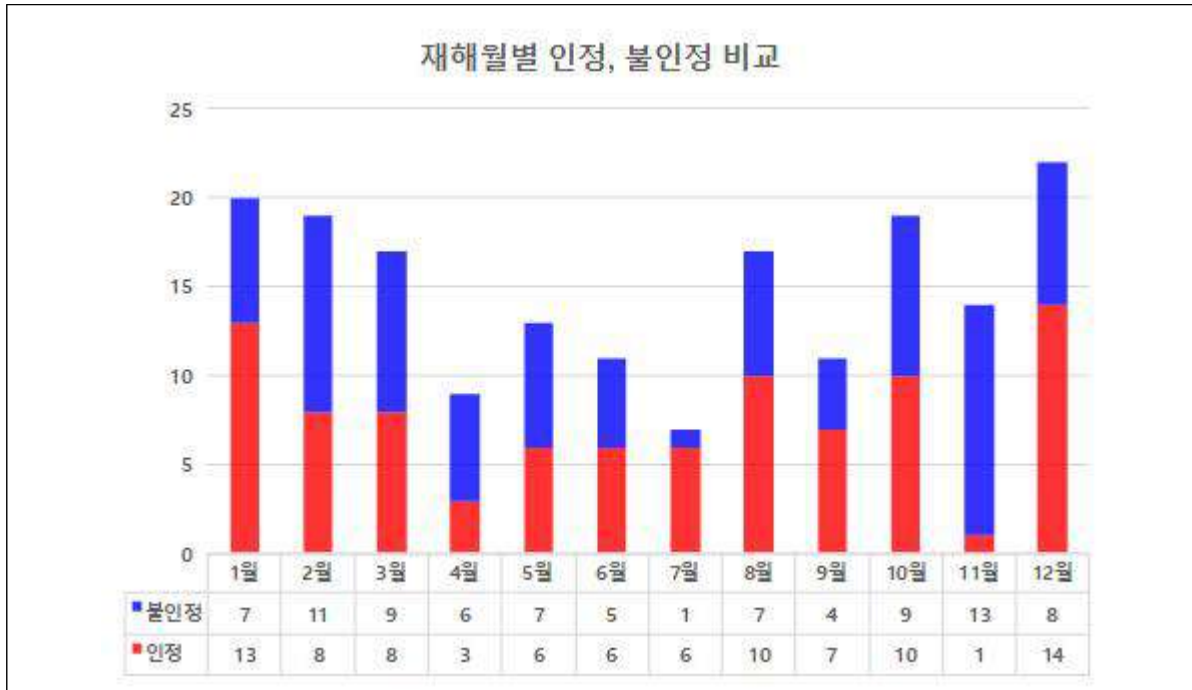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재해발병월(재해발병 이후 사망한 경우 재해발병월)을 기준으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의 경우 겨울(12~2월) 38.05%, 여름(6~8월) 23.91%, 가을(9~11월) 19.57%, 봄(3~5월) 18.48%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는 겨울 38.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2> 경비노동자 과로사 계절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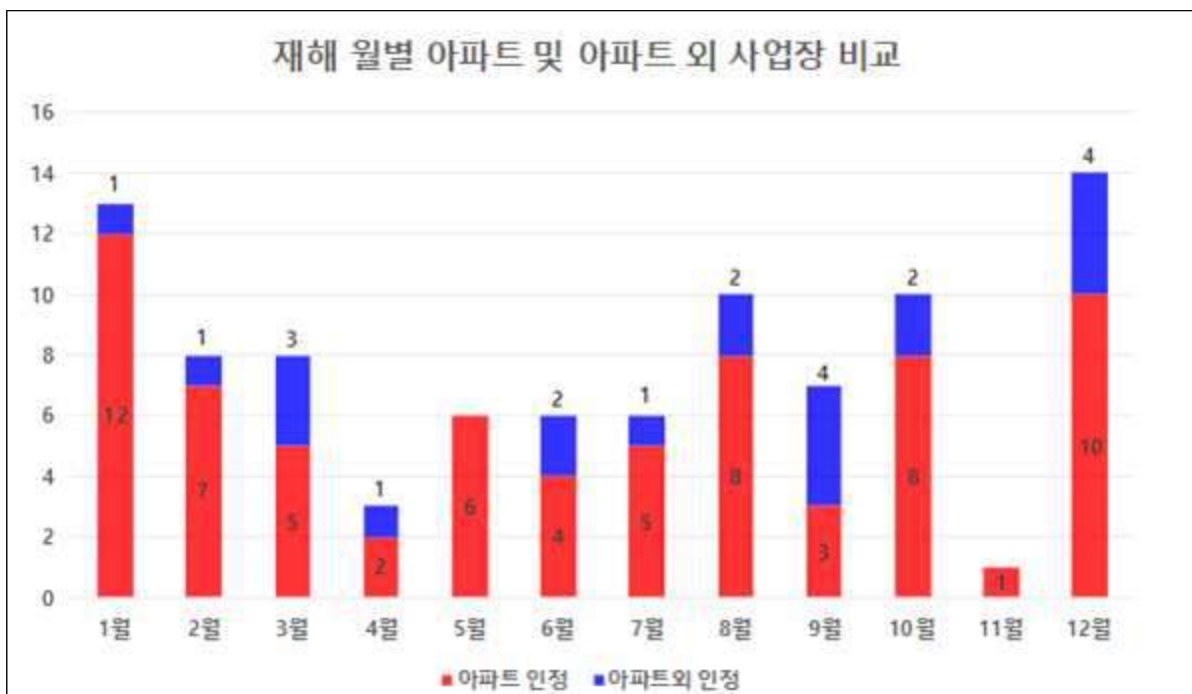
월	전체		인정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지		공공기관		상업시설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봄(03~05)	39	21.79	17	18.48	13	10	1	2	0	2	3	8
여름(06~08)	35	19.55	22	23.91	17	7	1	1	1	1	3	4
가을(09~11)	44	24.58	18	19.57	12	14	1	1	0	4	5	7
겨울(12~02)	61	34.08	35	38.04	29	17	0	2	3	0	3	7
전체	179	100	92	100	71	48	3	6	4	7	14	26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의 경우 아파트에서 78.31%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사업장을 비교하여 월별 발생현황과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 경비노동자 (71건)의 현황을 분석하면, 12월 10건, 1월 12건, 2월 7건 등 29건으로 40.85%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IV-20> 경비노동자 월별 인정·불인정 현황 비교



<그림IV-21> 아파트·아파트외 사업장 유형별 월별 발생현황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을 월별, 계절별, 사업장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경비노동자의 업무수행 장소, 작업환경과 재해발병 사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초소 근무, 경비초소 외 근무(순찰, 환경관리(화단관리, 제초작업, 가지치기, 경비초소 주변 청소, 주차 차량관리, 제설작업 등)로 구분하였을 때, 경비초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고온·한랭 등 온도변화 등이 경비노동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신체적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비초소 또는 휴게(수면)시설의 냉난방 상태, 시설(간이침대, 침대, 화장실 유무, 책상, 의자 등) 등 작업환경적 요인과 휴게(수면)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도 온전한 휴게(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를 사업장, 자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180건 147건(81.67%)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인정된 사건 중 92건 중 74건(80.43%)이 사업장에 발생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인정된 사건 71건 중 55건(77.46%)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사업장에서 1인이 근무하던 중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 상태 또는 숨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24시간 교대제, 야간 1인 근무 등 업무특성상 상병 발생시 조기발견 및 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려워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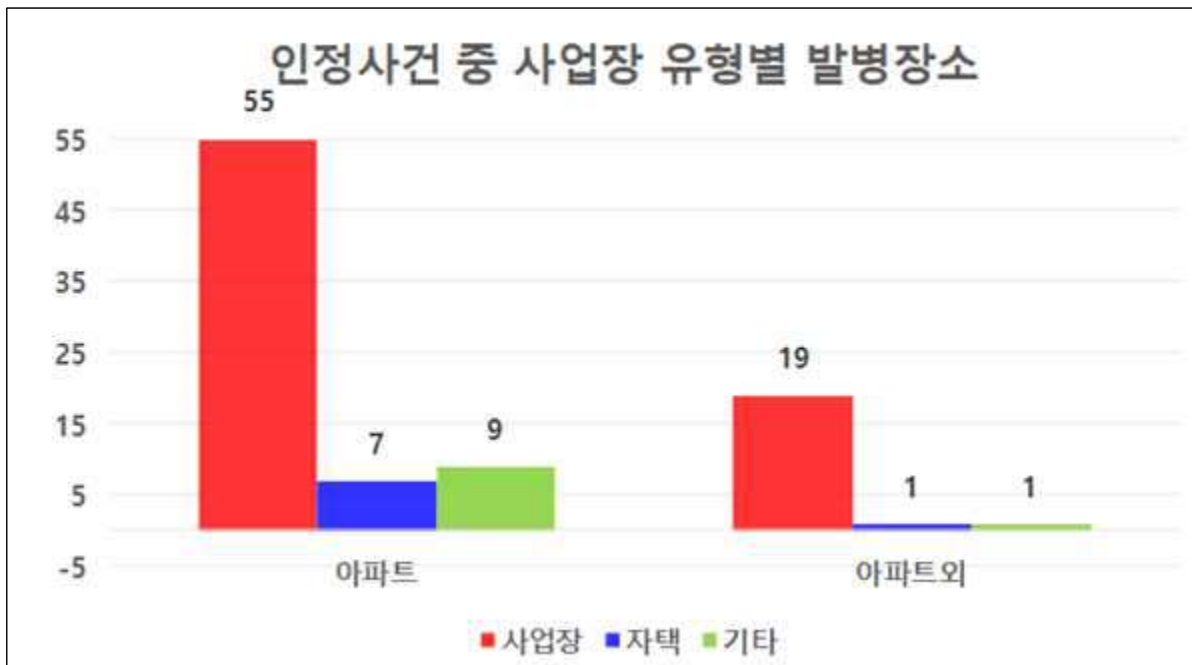
<표IV-13>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구분	전체		인정		불인정		인정된 사건 중 사업장 유형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아파트	아파트외
사업장	147	81.67	74	80.43	73	82.96	55	19
자택	15	8.33	8	8.70	7	7.95	7	1
기타	18	10.00	10	10.87	8	9.09	9	1
계	180	100	92	100	88	100		

<그림IV-22> 경비노동자 과로사 발병장소 현황



<그림IV-23>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업장 유형별 발병장소 현황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65건의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인정사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을 중심으로 특이사항을 분석하였다.

1. 급성과로, 단기과로가 인정된 사건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 92건 중 만성과로를 인정받은 사건이 대부분으로 79건(85.87%)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성과로(돌발적 상황) 9건(9.78%), 단기과로(재해발생 1주 전 업무량,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증가한 경우) 4건(4.35%) 이 확인된다.**
-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하며, 단기과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써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1) 급성 과로 : 택배원과의 마찰과 업무관련성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부산-2015-0000518 [인정]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비교적 조절이 잘 되었으며 택배기사와의 언쟁은 급성 스트레스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발생 전 택배 기사와 심한 언쟁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병 인지되고 있으며 발병 당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주요 유발인자로 사료됨 ’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인-2019-0001903 [인정]	비록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이전 12주간 (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재해발생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39시간 20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35시간35분 정도로 고인의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24시간 이

	<p>내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원과 다툼을 벌인 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후 고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하여 고인의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p>
--	--

(2) 급성 과로 : 제설작업, 환경정비 및 온도변화에 따른 업무관련성

① 제설작업, 새벽순찰 온도변화(겨울) - 업무관련성 인정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p>대전-2015 -0000109 [인정]</p>	<p>위원회에 참석한 내과, 신경외과(뇌혈관),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재해발생 당시 급격한 온도변화와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공동의 의견이다.</p>
<p>대구-2019 -0000462 [인정]</p>	<p>고인은 발병전까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여 왔으며,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79시간, 12주 간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5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업무형태가 교대제에 해당하는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이전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후 3일만에 업무에 복귀하여 겨울날 새벽에 순찰업무를 하였던 점, 재계약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이 만성적인 과로와 함께 신청상병 발생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p>서울-2016 -0002741 (재신청)²⁷⁾</p>	<p>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동 건설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시간 조사 결과 발병 전 9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2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인이 비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기는 하나 사망 직전 갑작스럽게 내린 눈 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기온차가 있는 실외에서 업무 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p>

② 옥상 환경정비, 온도변화(여름) - 업무관련성 인정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p>대전-2015 -0000831 [인정]</p>	<p>그러나 만66세의 고령이었던 재해자는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계단에 방치된 책이나 의자, 폐목재와 같은 중량물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밧줄을 이용하여 옮기는 업무를 갑작스레 수행하였는데 재해 당일 오전에는 특별히 신체에 무리가 될 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8월 하절기 정오 무렵에 건물의 옥상부근 장소에서 작업하여 심한 온도차에 급격히 노출됨으로써 고혈압, 뇌경색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재해자의 심혈관 관계통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p>

27) 재신청사건(인정·불인정)은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산정시 별도로 분석하였다.

	추정된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

③ 재해발생 전 돌발적 사고(물탱크 누수, 기계주차장 고장 등) - 업무관련성 인정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서울-2019-0000679 [인정]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고인은 상가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시설물 점검 및 주변청소, 파지정리 및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지하 물탱크에서 물이 새어나와 조치 작업 중에 쓰러진 것으로 발병 당시 업무에 돌발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이며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서울-2020-0001369 [인정]	고인은 2017. 9. 7.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9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비일지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5시간, 사망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30분.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흡하나, 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으로 주차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주인과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을 보이고, 고령임에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증상 발생 당시 버려진 런닝머신을 운반하는 돌발적인 중량물 취급 상황이 있는 점과 부검 소견상 이러한 운반 과정에서 고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경인-2020-0001541 [인정]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빌딩경비원으로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발병 직전 사고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급성 스트레스가 확인되며 ,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청상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단기 과로 : 재해발생 1주 간 업무시간이 기존 12주에 비해 30%이상 증가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서울-2016-0002715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확인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 후 18일 만에 발병하였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p>[인정]</p>	<p>경비업무 외 추가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72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 자료 및 건강검진 내역 상 특별히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서울-2018-0001187 [인정]</p>	<p>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업무시간 77시간 30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함 : 일상 업무시간(53:32)보다 30% 이상 증가함 : 교대근무자 장○○의 갑작스런 수술로 2017. 12. 4. 근무 후 17. 12. 5. 오전 7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함</p> <p>형광등을 켜놓고 경비실 내 침상(온열판넬 및 라디에이터 확인됨)에서 취침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취침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음이 확인됨.</p> <p>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검토결과, 빌딩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동료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했던 24시간 근무를 4일간 연속으로 수행하게 되어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77시간 30분이 되었고, 이는 일상업무 대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고인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서울-2019-0001668 [인정]</p>	<p>고인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보안, 순찰, 주변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업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76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6시간30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경인-2020-0001666 [인정]</p>	<p>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만성과로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인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주차 및 흡연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업무와 신청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2. 2018년 이전 : 개정 지침 적용시 인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 2018. 1. 1.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

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변경되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가 해당된다.

- 2018년 이전 사건으로 재신청(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인정’된 사건이지만 변경된 고시 및 지침을 적용하였을 경우 인정될 가능성 있었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서울-2015-0000664 [불인정]	고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3시간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지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보이며, 통상적 경비근무로 급성 과로나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본인 소인의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서울-2015-0001646 [불인정]	고인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흥분, 놀람, 돌발적인 상황 등이 없었고, 고인의 업무 환경 즉 휴게 및 수면시간과 수면장소 등을 감안하면 동종 직종에 비하여 특별한 과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 각 59시간으로 조사되어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평소 고혈압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부산-2015-0000050 [불인정]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이 49.5시간(야간근로 10.5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야간근로)시간은 57.75시간(12.25시간)으로 동일하며, 망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고 가족력 및 개인적인 문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당일 내원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상 '2014. 05. 13. 환자 이틀 전부터 조이는 chest pain있었다고 하며 금일 오전 10시경 local검진센터 가서 가슴사진 찍었다 하며 그때부터 좀 더 심하게 가슴 조이는 느낌 들었다 함. 현행 규정에 근거한 주 평균60시간 이상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나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 역시 인지되지 않아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서울-2015-0002353 [불인정]	○ 청구인 주장 근로계약서상 주간(06:00~22:00) 3시간, 야간(22:00~익일06:00) 5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원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주간 2~2.5시간, 야간 4시간으로 입사시에 맺은 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p>있음. 야간근무 중 3시간, 1시간씩 각각 휴게시간이 있기는 하나, 야간에 잠을 잘 수 있을만한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야간 근무중 주어진 휴식시간에는 좁은 경비사무실 안에서 의자와 의자사이에 판자를 올려놓고 임시 평상을 만들어 그곳에 누워서 쉬어야만 했음. 사무실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임시로 평상을 만들어도 다리를 쭉 펼수 조차 없어 새우잠의 가수면만 가능함.</p> <p>○ 지사조사 내용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가량으로 확인됨 발병전 4주동안의 1주평균 근무시간은 약 56시간 가량, 발병전 12주동안의 1주평균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가량으로 확인됨</p> <p>○ 근무시간 확인 내용 청구인은 관리원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주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누락된 시간대가 많이 확인되고, 사업장 관계자와 문답결과 일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p> <p>○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발병전 7일간의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가량으로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발병 전 4주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56시간 가량, 발병전 12주동안의 1주평균 근무시간은 약54시간 가량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p>
<p>대전-2016-0000371 [불인정]</p>	<p>재해자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7시간30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바뀌지 않아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 등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시간 64시간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시간 60시간을 초과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 증가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재해자는 단속적 근로를 수행하였는 바, 그 업무가 재해 상병(사인)을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p>
<p>서울-2016-0002078 [불인정]</p>	<p>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9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은 초과하고 있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60시간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의 사인은 부검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시체검안서상 '급성심근</p>

	<p>경색'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학교 경비로서 야간교대근로로 인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고, 육체적 부담과 피로 누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휴일없이 매일 근무한 점에 육체적인 피로 요인으로 판단되어지지만, 업무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 기준상 사망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나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취침 장소와 취침 시간 등이 보장되어 있는 점, 개인적 위험인자로서, 당뇨와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p>
<p>대전-2016-0000535 [불인정]</p>	<p>재해자는 1일 단위 교대 근무를 실시하므로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이에는 16시간 근무(07:00~다음날 07:00시간 중 8시간 휴게시간임)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주간 12:00~13:00, 18:30~19:30 및 23:00~07:00 중 2시간 순찰 외 나머지 6시간으로 확인된다.</p> <p>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으로 확인되며, 회사에서는 3월 2중순경부터 날이 풀려 1일 2시간 정도 맨홀청소, 울타리 토사정비, 화단 정비 등 환경미화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작업은 공동으로 하였다고 한다.</p> <p>재해자는 사망 1달 전부터 관리동 주변 맨홀청소 등 공동작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이 다소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나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병직전 심근경색이 야기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혈압, 심장판막증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p>
<p>대전-2016-0000045 [불인정]</p>	<p>2015. 02.부터 근무형태 조정되면서, 주간근무 06:00~22:00/휴무/06:00~익일 06:00/휴무 형태로 순환 근무 중이었으며, 휴게시간은 주간 총 3시간(11:30~13:00, 18:00~19:30), 야간 2시간 30분(24:00부터 04:30사이 1시간 30분 순찰시간 외 휴게)임</p> <p>업무상 과로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9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6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기 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p>
<p>서울-2017-0000578 [불인정]</p>	<p>업무시간 산정기준 :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서면문답서 등을 통해 시간 산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 없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 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54:00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p>: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p> <p>: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p> <p>의학자료를 검토한 바 관상동맥 협착에 따른 심장사로 확인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동안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30분으로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업무는 24시간 맞교대 업무이나 단속적 감시 업무로 근무 중 휴게 및 취침시간과 장소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시시간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	---

3. 2018년 이전 사건이지만 재신청(재심의)를 통해 인정된 사건

- 2018. 1. 1.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재신청(재심의)된 사건은 14건이며, 12건이 인정되어 85.71%의 인정률을 보였다. 고시 및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시 경비노동자의 업무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건번호	최초 사건(2017.12.31. 이전)	재신청 사건(2018.1.1. 이후)
대구-2018-0000643 [인정]	-	<p>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45분(4주 동안 업무시간 61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바, 재해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으며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어 신청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인정되고,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p>

<p>광주-2018-0001114 [인정]</p>	<p>소속기관에서는 위 신청 내용에 따라 2016. 12. 13.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판정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2016판정 제994호와 같이 불인정 판정하였으나, 최근 2018.1.1.자로 개정된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사건을 재심의 의뢰하였다.</p>	<p>관할지사 조사내용에 의거 산정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56시간과 70시간 56분으로서 개정된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인의 근무형태는 규칙적인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고 있다.</p>
<p>경인-2018-0001349 [인정]</p>	<p>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6. 6. 22. 불인정 결정되었으나, 관련 고시 변경을 사유로 2018. 6. 27. 재신청하였고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재의뢰하였다.</p>	<p>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약67시간 이상을 근무한 점, 24시간 격일 교대제 업무형태로 인한 부담이 있었던 점, 야간 휴식시간 중 순찰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휴식시간 동안 적절한 수면 및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p>경인-2018-00001416 [인정]</p>	<p>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6. 10. 26. 불인정되었으나, 2018. 5. 15. 재신청하였고, ○○○○본부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재의뢰하였다.</p>	<p>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6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7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시간 평가 결과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점, 교대제 업무(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경인-2018 -0001612 [인정]</p>	<p>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6. 3. 10. 불인정되었으나, 2018. 5. 9. 재심청하였고,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의뢰하였다.</p>	<p>고인이 발병 전 수행했던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는 경비 및 주차관리, 내방객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4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54분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시간 평가 결과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점, 감시단속 근무자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부산-2018 -0002087 [인정]</p>	<p>-</p>	<p>재해근로자는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에 해당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 해당하므로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 의견이다.</p>
<p>경인-2018 -0002209 [인정]</p>	<p>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7. 9. 19. 불인정되었으나, 2018. 5. 16. 재신청하였고,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재의뢰하였다.</p>	<p>고인의 발병 전 수행했던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단지 순찰, CCTV 감시업무, 아파트 시설물 관리업무,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별 진찰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p>

		<p>주 동안 45시간,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0분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시간 평가 결과 만성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점, 감시단속 근무자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부산-2018-0002280 [인정]</p>	<p>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뇌심혈관계 판정기준 개정(2018.1.1. 시행)에 따라 다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p>	<p>신청 상병 "급성심장사(추정)"은 상병 상태 인지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p>
<p>서울-2018-0002283 [인정]</p>		<p>고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24시간 교대근무 수행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p>
<p>서울-2018-0002741 [인정]</p>	<p>청구인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따라 유족급여청구서를 재신청하였다.</p>	<p>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동 건설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시간 조사 결과 발병 전 9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2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인이 비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기는</p>

		<p>하나 <u>사망 직전 갑작스럽게 내린 눈 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기온차가 있는 실외에서 업무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u>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p>
<p>서울-2018-0002553 [불인정]</p>		<p>고인은 2012년부터 약 3년 2개월간 교대제 경비원으로 출입인원 및 출입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 순찰, 건물주변 청소, 주차비 징수, 방문객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u>재신청건에 대한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서 상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52시간 30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수행에 해당하여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u></p> <p>그러나 신청 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심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시간 상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u>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교대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야간 수면공간이 별도로 안정적으로 제공되며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워</u>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p>

<p>대구-2019 -0000164 [인정]</p>	<p>※ 참고 : [특별진찰] 창원병원(19.2.19.) -종합소견 : 2018. 1. 1.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도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라 재평가된 결과,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12주간 73시간 30분, 4주간 73시간 30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1개에 해당함.</p>	<p>발병 전 1주일 간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3시간 30분(4주 동안 업무시간 73시간 30분으로 초과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교대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된다. 근무시간으로 만성으로 및 교대제근무하는 가중은 있으나, 감시업무에 해당하고 사인이 미상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업무시간상으로 과로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교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 의견이다.</p>
<p>서울-2018 -0002058 [불인정]</p>	<p>※ 참고 : [특별진찰] 안산병원(18.9.28.)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도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 따라 재평가된 결과,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12주간 48시간39분, 4주간 48시간39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1개, 교대제 업무에 해당함. -별도의 휴게공간이 제공되며, 야간업무시 5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수면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신청시 휴게시간을 모두 적용하였음(주간 4시간 30분, 야간 5시간 36분)</p>	<p>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68세의 고령의 나이로 건물 경비원 업무를 격일로 수행하며 업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청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심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시간당 단기 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야간 수면공간이 별도로 안정적으로 제공되며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또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찰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4.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 휴게(수면)시간 조사 및 판정이 미흡한 사건

- 2018. 1. 1. 고시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별도 사항을 명시하였다.
- 2018. 1. 1.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전후 사건에서 업무시간, 휴게(수면)시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이 미흡한 사건이 확인된다. 2018년 고시 개정 전후 사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2018년 전·후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였던 업무시간 등 산정 및 조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한 사건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015~2017년 : 고시 및 지침 변경 전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서울-2014-0002275 [불인정]	<p>고인은 2013. 6. 1. (주)○○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격일 근무제), 휴게시간(근로계약서 상)은 12:00~13:30, 17:00~18:00, 23:00~06:00로 확인되었다.</p> <p>고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진술 기준)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확인되었다.</p>
경인-2015-0001089 [불인정]	<p>○ 주 업무는 담당구역 감시 및 순찰이며, 부수적으로는 청소, 분리수거지원, 우편물/택배 수불, 차단기 조작, 주민민원응대, 긴급상황 조치 등</p> <p>○ 순찰시간은 주간 30분, 2회(아침 1회 07:00~08:00), 점심 1회(15:00), 야간 30분 1회(저녁 23:00), 간헐적으로 시계순찰(순번제, 전구역 12곳, 24:00~03:00),</p> <p>○ 음식물통 분리수거 : 2시간 30분 소요(매시간 10~20분)</p> <p>○ 재활용 분리수거(수시로 수거)</p> <p>○ 발병전 1주일 이내 : (60시간)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p> <p>○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p> <p>○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p>
서울-2016-0000997 [불인정]	<p>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야간 수면시간(23:00~익일 05:00)을 포함하여 10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순찰시간은 1일 4회[07:00~07:30, 14:30~15:00, 22:30~23:00, 05:00~05:30(각30분)]이고, 야간 취침시간은 보장이 되며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p> <p>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음.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됨.</p>

	<p>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발병 전 3개월간의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음. 발병 전 3개월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초래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함.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9시간으로 조사됨</p>
<p>광주-2016-0000245 [불인정]</p>	<p>○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42시간 09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4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96시간 09분(야간 33시간 포함)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49시간 02분(야간 08시간15분포함)이다. ○ 발병 전 주간의 근무일은 2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364시간 09분(야간 69시간)으로 발병 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31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4주 및 8주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2시간 09분, 약 49시간 02분, 약 45시간 31분 정도로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업무시간 산정근거 확인되지 않음)</p>
<p>경인-2017-0000322 [불인정]</p>	<p>○ 휴식시간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하며, 휴게시간은 12시간(주6시간, 야간6시간), 취침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이나 순찰 도는 시간 이외에는 경비원이 휴식을 자유롭게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발병 전 1주일 이내 : 48시간 00분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00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00분 근무</p>

(2) 업무시간 산정 및 조사 내용과 다르게 판정한 사건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p>대전-2015-0000831 [인정]</p>	<p>○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이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총 64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업무량 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산정된 근무시간은 재해자의 근태기록에서 주간 근로시간 10시간, 전일 근로시 24시간 중 정확한 휴게시간의 산정이 불가하여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해자는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로 업무 특성상 평소의 노동강도가 약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휴게시간을 산정할</p>

	<p>수 없어 사업장에서의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한 것일 뿐 실제의 근무시간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p> <p>그러나, 만 66세의 고령이었던 재해자는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계단에 방치된 책이나 의자, 폐목재와 같은 중량물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밧줄을 이용하여 옮기는 업무를 갑작스레 수행하였는데 재해 당일 오전에는 특별히 신체에 무리가 될 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8월 하절기 정오 무렵에 건물의 옥상부근 장소에서 작업하여 심한 온도차에 급격히 노출됨으로써 고혈압, 뇌경색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재해자의 심혈관 관련계통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p>
<p>서울-2017-0001880 [인정]</p>	<p>4)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과로여부</p> <p>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시간(58시간 30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p> <p>고인은 24시간을 연속해서 일해야 하고 1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반복해야 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로 인간의 생체리듬을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며, 비록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1시간의 순찰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휴식의 질이 낮아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시설 또한 노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축적된 과로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겹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p>
<p>부산-2019-0002894 [인정]</p>	<p>○ 재해근로자는 정규직 07:00~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자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3시간(주간 3.5시간, 야간 9.5시간)으로 확인되나, 식사(점심, 저녁) 각 1시간 30분씩, 그 이외 23:00~다음날 06:00까지 취침을 했다는 것이 심의 의뢰기관 조사내용이다.(주간 3시간, 야간 7시간)</p> <p>○ 경비실은 약 3~4평으로 CCTV모니터, 의자 및 침대, 전기난로, TV, 에어컨, 냉장고, 전기방석 등이 있고 식사는 주위 식당을 이용하거나 컵라면으로 해결했다고 한다.</p> <p>○ 발병 전 1주 평균 57시간12분, 4주간 평균 50시간3분, 12주간 평균 50시간3분</p> <p>○ 현장조사 결과 총86세대 규모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발병 직전 1개월간 경비일지에서 등기우편, 택배 등의 수령사실은 없고, 2세대 전출입, 승강기 수리 1회 등이며, 통상적인 감시, 단속업무로 밤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경비실에</p>

	<p>서 잠을 자지만 수면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아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최저 63시간에서 최대 85시간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확인된다.</p>
--	---

5.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 휴게(수면)시간 조사 및 판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사건

- 2018년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근거’, ‘업무시간 산정근거’,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등 비교적 잘 이루어진 사건이 있으며, 휴게(수면)시간 산정 시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된 경우도 확인된다.

(1) 2015~2017년 : 고시 및 지침 변경 전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p>서울-2016-0002715 [인정]</p>	<p>○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경비실 내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취침이 보장되고, 중식, 석식 시간이 근로계약상 각 1시간 30분 정도 되나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 휴게가 어려웠던 것으로 재해조사 상 확인된다.</p> <p>○ 사업장에서는 낮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하나 동료 근로자 진술 상 식사를 경비실에서 해결하다보니 수시로 일을 처리하느라 온전하게 쉬지는 못한다고 함.</p>
<p>경인-2015-0000012 [인정]</p>	<p>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06:00~22:00 근무, 다음날 비번, 다음날 06:00~익일 06:00 근무의 순서로 근무하였고, 6:00~22:00 근무 및 06:00~06:00 근무시 휴게시간은 점심 12:00~13:00, 저녁 19:00~20:00이며, 휴게장소는 별도로 없고 경비실내 취침할 공간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동료 근로자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부검감정서 등 관련자료 확인한 결과 상병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야간 근무시 휴게시설 등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점, 수면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가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p>서울-2015-0001392 [인정]</p>	<p>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일 7시간 30분(주간 2시간 30분, 야간 5시간)이나 청구인은 1일 6시간 이라고 하고, 아파트 내부에 별도 휴식공간이 없고 업무량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에 상주했다고 하며, 히터는 있지만 겨울에 대비한 방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춥다고 한다.</p> <p>소속기관 담당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으로 과로시간을 산출하였는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으로 조사되었다.</p> <p>고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은 사망원인 확인되며 가수면시설의 부재는 초과근무로 판단되고 재해당일 새벽 저온에 제설작업 등 인간공학적인 부담에 노출되어 급성 과로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이다.</p>

<p>부산-2015 -0001090 [인정]</p>	<p>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형태(시간표 상 1일 6시간 휴식)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이전 근무시간을 보면,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1.5시간이고,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던지 업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내용에서 확인되며, 상병 인지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업무의 과로 및 강도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비록 고혈압, 대동맥박리 등의 과거력은 있었으나, 12주간의 근무시간과 작업장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였을 경우 만성과로도 인정되어 질환발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로 볼 때 기저질환이 존재하지만 업무에 의한 악화 가능성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p>서울-2016 -0001392 [인정]</p>	<p>○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2016.2.16. 05:40 교대 후 오전부터 제설작업 중 쓰러짐</p> <p>○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 발병 전 1주동안 업무시간 5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2:43으로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p> <p>○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54으로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함. 수면 시설 부재(주간 휴게시간은 지정된 휴게실애소 휴식, 야간 수면시간(24:00~ 05:00)은 경비실내에서 쪽잠을 잔다고 함). 차량통제는 정문초소에서 수행. 환경미화원이 6명 근무하며, 경비원은 단순 외곽청소만 수행. 재해당일 제설작업은 관리소 직원 등 모두 수행 (염화칼슘 살포 및 빗자루로 청소 등). 급격한 온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겨울날씨로 보임. 주간 휴게시간은 시간이 지정(13:00~ 14:30, 19:00~20:30)됨.,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단기계약(최소 1개월부터)에 따른 고용불안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경비원들의 잦은 이직 발생)</p> <p>○ 고인은 통상의 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며, 사망당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면시설이 없으며 야간순찰(22:00~03:00)을 5개 초소 근무자가 교대로 수행하는 점으로 볼 때 야간(5시간 휴식)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p> <p>○ 고인은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며, 근무 중 수면의 내용이 부실하고 야간순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제설작업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만성과로가 인정되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p>
<p>광주-2016 -0000971</p>	<p>○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4시간(야간 12시간)으</p>

<p>[불인정]</p>	<p>로 일상적인 업무량,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입사일부터 발병 전까지 총 18일 동안에는 9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146시간으로 주당 평균 56시간 47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근무환경은 컨테이너 형태의 경비실로 경비실 뒤편에 있는 별도의 휴게실에 간이침대, 냉난방기 등이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진다.</p> <p>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발병 전 총 18일 동안의 주당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 47분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유족 문답 및 사업장 사실조회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 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특이사항 : 재해 발생 전 근무기간 18일(2016.4.20.~2016.5.8.)</p>
<p>경인-2017-0000836 [인정]</p>	<p>○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3일 근무/총 57시간 00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6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65시간 08분 (※근무시간 산정내용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휴게시간 5시간(점심 및 저녁 각 30분, 취침 4시간)을 공제하고 산정</p> <p>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소재의 5개동 270세대의 ○○○○ ○ 2차 아파트의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업무는 아파트 주변 주야간순찰 및 청소, 택배보관, 분리수거, 불법주차단속 등의 업무였고, 사망당일은 07:00경 출근해 교대 후 경비업무 및 제설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전날은 휴일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08분임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발병 전까지 입주시준인 관계로 다량의 쓰레기 배출 처리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 및 발병당일 영하 11도의 추운날씨에 외부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환경(영하의 날씨) 및 지속적인 교대근무, 근무시간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

(2) 2018년 이후 고시 및 지침 변경 후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p>경인-2018-0001416 [인정] (재신청)</p>	<p>1)고시 개정 전 근무시간 : 발병당일: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근부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p> <p>2) 고시 개정 후 근무시간 : 발병당일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77시간 근무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이상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수면시간 업무시간에 산입함 (업무시간 산정) 재해자는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로 "제2018-2호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수면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p>
<p>대전-2018-0000125 [인정]</p>	<p>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 업무에 종사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78시간으로서 발병 이전 12주간 (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83시간 27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p> <p>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3시간으로 확인된다.</p> <p>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u>망인이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의 경우 독립된 수면장소 및 연속 5시간 이상 수면시간 보장되어야 하나, 독립된 수면장소가 아닌 업무 장소인 경비초소의 간이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면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장시간의 업무 수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u>"고 판단하였다.</p>
<p>대전-2018-0000056 [인정]</p>	<p>○ 작업환경 및 수면시간 <u>경비실은 1층 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평 정도로서 야간 취침시간 (24:00~05:00)에는 경비실 내 간이침대에서 커튼을 치고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된다.</u> ※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p>

	<p>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산정함(제2018-2호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p> <p>○ 업무시간 산정 재해자는 24시간 교대제 근무제로 “제2018-2호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수면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에 산입하고 다만 중 석식시간 각 60분(2시간)을 제외하여 1일 업무시간을 22시간으로 산정하였다.</p> <p>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5시간 9분으로 확인된다.</p> <p>비록,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1시간 30, 75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재해자는 수면시간이 5시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업무 장소인 경비실 내 간이침대에서 커튼을 치고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면시간 역시 업무시간에 간주되는 등 장시간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서울-2018-0000051 [인정]</p>	<p>○ 업무시간 산정 등</p> <p>① 06:00부터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시간부터 업무시간으로 산정</p> <p>②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해 3시간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p> <p>③ 23:00부터 수면시간이고 05:30경에 기상함 (취침 시 소등, 외부인 출입 없음)</p> <p>수면시간은 연속하여 5시간 이상이 확보된다고 하나, 수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무지 초소내 침상에서 수면을 하고 있고, 초소의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으로 산입(개정 지침)</p> <p>○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0시간 38분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음</p>

	<p>○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3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 만성 과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p> <p>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펴 볼 때, ①고인은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비록 증상 발생 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량이 단기간 급증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나,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으로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개정된 지침에 따라 별개의 수면장소가 없어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입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에서 교대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으로 뇌부위 출혈이 발생하였고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서울-2018-0000537 [인정]</p>	<p>○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사업주 사실확인서, 2018.1.4.)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 : 07:00~익일 07:00 -휴게시간 : 식사시간 2시간(12:30~13:30, 20:00~21:00) 및 야간 취침시간(4.5시간) -야간취침시간 : 22:00~익일06:00 중 4.5시간 휴게(3동 지하에 별도의 취침공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고인의 경우 근무지인 5동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잔다는 진술, 일부 경비원은 3동 지하 취침공간에서 취침을 하고 있고,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취침하기도 한다고 함) -근무시간 : 격일 22시간(야간취침시간 4.5시간 제외하면 17.5시간)</p> <p>나. 발병 전 근무상황 ※ 업무시간 산정근거 : 독립된 휴게공간 여부에 대한 일부 논란은 있으나, 야간취침시간 4시간 30분 여부에 대해선 다툼이 없음(야간휴게시간 5시간 미만으로 업무시간으로 산정함)</p> <p>○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조사됨</p> <p>○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 10분으로 조사됨</p> <p>고인의 업무내용 검토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75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격일제 근무로 인한 장시간 연속근무, 야간근무, 휴게시간 부족 등 업무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p>경인-2019</p>	<p>[업무시간 조사표 작성근거]</p>

<p>-0003048 [인정]</p>	<p>고인의 업무시간은 근로계약, 순찰일지, 사업주, 유가족 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오전 06시 시업, 익일 오전 06시 종업으로 확인됨. 1일 휴게시간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초소가 1곳이며, 1일 2명의 경비원이 근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 상 주간 휴게시간 8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야간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정문 초소 내 별도의 공간에서 간이침대를 이용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곳의 존재하나 연속 5시간 이상 수면시간을 제공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야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함. 순찰 일지 상 30분 단위로 야간 근무를 수행한, 실제로 4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비원들의 합의 하에 야간 순찰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함.</p> <p>○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61시간 53분, 12주 간 1주 평균 55시간 18분</p>
<p>경인-2019-0002933 [인정]</p>	<p>○ 근무환경 1일 2회 60분간의 휴게시간(2시간)이 주어지고 사업주 확인서상 근무 중 수면시간 보장으로 되어 있으나 수면장소는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발생 후 유족이 현장 방문하였을 때도 취침 및 휴식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p> <p>○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72시간, 12주간 1주 평균 77시간 10분</p> <p>○ 근로시간 산정근거 : 근로계약서, 진술서</p>
<p>경인-2020-0000140 [불인정]</p>	<p>○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24시간 2교대 근무(06:30~익일06:30)</p> <p>○휴게시간 : 주간 3시간(11:00~13:00, 17:30~18:30), 야간 4시간40분(24:00~04:40)</p> <p>○취침시간 : 야간 휴게시간인 24:00~04:40 취침가능(별도 휴게시설에서 취침)</p>
<p>광주-2020-0000660 [인정]</p>	<p>○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 방해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재해자는 관리원 근로계약서에서 23:00~05:00(6시간)까지 야간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면공간이 업무장소와 별개로 마련된 독립된 장소가 아닌 소음과 빛, 외부간섭이 차단되지 않은 경비업무 공간의 경비 초소 안에서의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되어야 함.</p> <p>○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73시간 26분, 12주 간 1주 평균 69시간56분</p>
<p>서울-2020-0000717 [불인정]</p>	<p>○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p> <p>해당 사업장은 일지나 출퇴근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대리인과 사업주의 진술을 기반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09시에서 다음날 09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중간에 휴식시간이 11~14시, 16~17시 두차례가 있고, 22~다음날 08시까지의 시간은 휴식 및 취침시간으로 되어 있음. 휴식시간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09~11시, 14~16시, 17~22시, 다음날 08~09시 총 하루 10시간으로 산정함. 사업주 진술 및 대리인 제출내용도 10시간으로 일치</p> <p>-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40시간, 12주 간 1주 평균 34시간32분</p>
<p>서울-2020-0000610 [인정]</p>	<p>○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p> <p>심의의뢰기관에서는 청구인, 사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청구인 주장)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은 총5회 있으며, ① 점심 휴게시간(11:30~14:30) 3시간, ② 저녁 휴게시간(17:30~19:30) 2시간, ③ 야간 휴게시</p>

	<p>간(22:00~02:00 혹은 02:00~06:00) 4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야간 휴식시간은 격일제 근무로 하루는 22:00~02:00, 다음날은 02:00~06:00을 번갈아 가는 형태임</p> <p>○ (담당자 확인)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유족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은 점심 휴게시간으로 담당자 사업장 출장하여 동료근로자 면담한 바, 점심 휴게시간은 11:30~14:30(3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의 휴게장소는 초소 내 숙소를 마련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사진 별도 첨부)</p> <p>○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66시간30분, 12주 간 1주 평균 66시간 30분</p>
서울-2020-0000649 [불인정]	<p>최초 조사한 내용대로 점심 및 저녁 식사, 휴게시간을 잘 지켜지며, 야간 취침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거의 수면을 방해받지 않는 지하실 독립공간으로 외부의 간섭없이 5시간 이상 수면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휴게시간 : 점심 2시간, 저녁 2.25시간, 야간수면 6.5시간)</p>
서울-2020-0001791 [인정]	<p>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10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자로, 근무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었으나 취침공간이 부족하여 경비실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였으며, 세백에도 입주인들이 주차 문제로 제대로 된 휴식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p> <p>고인은 비록 간암과 폐동맥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개인적 소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24시간 교대제 근무 및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힘든 열악한 근무조건이 고인의 병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이 기존의 개인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p>
대구-2020-0000712 [인정]	<p>(조사자)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시 휴게공간이 외곽담당 미화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간의 협소성 등 여러 이유로 경비원들의 이용 가능성은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식적으로 휴게공간을 이용하지 말라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자유로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므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경비실 근무일지 등 확인한 바 매일은 아니나 공식적인 휴게시간에 택배인계인수내역 확인되며, 여타 이유로 휴게시간에 경비실에 있을 경우 휴게의 방해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을 확인됨)</p>
경인-2020-0001666 [인정]	<p>4) 업무시간 산정 및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p> <p>-경비실 안에 간이 침상이 있으나 CCTV 경비를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됨(근무장소 사진 및 첨부자료 참조)</p> <p>-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시작 06:00 및 업무종료 익일 06:00 기준으로 하고 휴게시간 산정은 경비근무시간표상 휴식시간(주간6시간)으로 산정하였고, 23:00~05:00 취침은 독립된 장소에서의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입(2019. 8. 1.~2019. 9. 2. 사업장에서 제출한 경비일무일지 기준으</p>

	로 근무일 확인함) -사업장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옆 1평 남짓 경비실이 CCTV 경비근무를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24시간 내방객이 드나드는 건물이라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함.
--	---

6. 경비노동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폭넓게 인정한 사건

- 휴게시설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폭넓게 인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업무상질병 판정서
서울-2020-0002146 [인정]	업무시간 확인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3시간27분으로 확인되므로 만성과로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교대제 업무수행, 유해한 작업환경(영하의 기온에 노출, 휴게공간 미흡), 정신적 긴장(실직에 따른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7. (문헌 고찰)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질환 및 안전문제와의 관련성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실시한 「과로사 요양결정 사례 분석(2020.12.)」 중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질환 및 안전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 질환

-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는 많이 있어 왔고, 기존 문헌에서 장시간 노동기준은 주로 50시간 혹은 60시간 이었다.

<표 V-1> 근로시간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기존연구 내용(보고서 표2-1)

저자(발행연도)	주요 연구결과
Uehata(1990)	○ 장기적인 과중부하가 신체에 급격한 불건강을 야기하기 보다는 신체의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의 과잉반응을 일으켜 결국 심혈관계의 이상을 초래
Pieper 등 (1993)	○ 장시간 노동은 일하는 동안 혈압이 증가하여 오랫동안 일을 할수록 혈압 증가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결국 장시간 평균 혈압이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의 증가된 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기여

Hayashi 등 (1996)	○ 24시간 혈압이 연장근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상혈압군과 경한 고혈압군을 실험군, 주평균 30시간을 근무하는 정상혈압군과 경한 고혈압군 대조군으로 설정한 결과, 과로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24시간 평균 혈압을 올림
Spurgeon 등 (1997)	○ 주5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음
Sokejima 등 (1998)	○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루 노동 11시간 이상 근로자가 7~9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2.94배 높음 ○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 1년 동안의 작업시간이 증가할수록 혈압과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Liu 등 (2002)	○ 일본인 대상 심근경색 발생위험 연구에서 발생 한 달 전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9배 더 높았고,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2.9배 더 높았음
Kobayashi 등 (2004)	○ 1일에 11시간 이상 근로(1개월에 대략 60시간 초과근로)하는 남자 근로자는 1일 7~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이 2.44배 더 높았음
※ 자료 : 김경하, 2015	

○ 정연 등(2018)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000년 이후에 발간된 10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2-2>와 같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RR)는 1,477(95% CI:1.304~1.673)로, 표준 주당 근무시간으로 사용된 30~50시간과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높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남성(RR=1.592, 95% CI:1.292~1.962)과 여성(RR=1.367, 95% CI:1.027~1.820)의 모든 집단에서 장시간 노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제시하였다. 장시간노동의 기준을 주당 48시간, 52시간, 60시간으로 유형화하여 수행한 하위 집단을 분석한 결과는 모든 유형의 장시간 노동자 집단은 표준 근로 집단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언급하였다.

<표 V-2>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2)

메타분석 기준	요약추정치(RR)	95% 신뢰구간	요약추정치 개수(n)	12(%)
통합분석	1.477	1.304; 1,673	31	71.3
남성	1.592	1,292; 1,962	7	36.5
여성	1.367	1.027; 1,820	2	0
주당48시간이상*	1.721	1,375; 2.153	12	44.5
남성	1.609	1.259; 2.056	9	50.4
여성	2.584	1.571; 4.243	3	0.0
주당52시간이상*	1.807	1.381; 2.363	9	50.4
남성	1.643	1.210; 2.229	7	56.3
여성	2.752	1.653; 4.581	2	0.0
주당60시간이상*	1.987	1.594; 2.477	7	17.0

남성	1.928	1.538; 2.416	6	17.7
여성	-	-	-	-
※ 자료 : 정연 등(2018)				
주 : 1) *p<0.1<성별 meta-anova 분석결과), - : 요약추정치 1개 집단을 의미함				
2)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목록은 Y.Cheng 등(2014); S.Conway 등(2016); AE.Dembe등(2016); I.Jeong 등(2014) ; T.Lallukka 등(1001) ; Y.Liu 등(2002) ; K.Tarumi 등(2003), H.Hannerz 등(2018) ; B.Netterstrom 등(2010) ; M.Kivimaki 등(2011)임				

(2)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로에 대한 양적 기준으로는 노동시간 이외에도 교대제 및 야간노동 등 노동시간 배치가 있다. 교대근무가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해서는 생리적 리듬의 변화로 당내성의 감소, 인슐린 저항, 코티졸 수치의 증가 및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것 등과 관련이 있고, 흡연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 사회적 문제 등으로 여겨지고 있다. (Caruso 등, 2007; Knutsson 등, 2000; Karlsson 등, 2001; Davis 등, 2006; Haus 등, 2006). <표2-3>에서는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은 높고, 교대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병의 발생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V-3>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 관련 기존연구 내용(보고서 표2-3)

저자(발행연도)	주요 연구결과
Karlsson 등 (1986)	○ 504명의 제지공장 노동자들을 15년간 추적 조사하여 교대 근무자들과 주간 근무자들의 허혈성심질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11~15년 근무한 경우 상대위험도가 2.2배였고, 16~20년간 근무한 경우는 2.8배로 나타나는 등 교대근무 기간이 길수록 허혈성심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Leena 등 (1997)	○ 헬싱키 심장연구의 일환으로 1,806명을 6년간 추적 조사한 코호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무 직종과 상관없이 교대근무는 낮시간 근무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1.4배 정도 높임
Böggli 등 (1999)	○ 순환형 교대근무가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첫째, 혈압, 심박동수와 체내 카테콜아민 노동의 일일 주기변동을 파괴하고, 둘째, 감소된 신체활동과 빈약한 식사, 흡연의 증가 및 사회접촉의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셋째, 교대근무는 직업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교대근무자는 비교대 근무자에 비해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4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
Karlsson 등 (2005)	○ 교대근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상동맥질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교대근무 기간이 30년 이상군에서 관상동맥질환 사망 표준화 위험비가 1.24로 나타났고, 교대근무 기간이 5년 미만군에서 뇌경색 위험이 유의하게 매우 높아짐
※ 자료 : 김경하, 2015	

- 정연 등(2018)에서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13개 논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2-4>와 같다.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높았다고 보고하였다(RR=1.224, 95% CI:1.167~1.285).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교대근무자 간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교대근무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RR=1.275, 95% CI:1.126~1.443).
- 한편, 야간근무 교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RR)은 1.168(95% CI: 1.085~1.259)이었고, 성별로는 야간 교대 남성 근로자 집단은 비교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RR=1.137, 95% CI: 1.012~1.278), 여성에서도 야간 교대근무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언급하였다(RR=1.340, 95% CI : 1.049~1.712).

<표 V-4>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4)

메타분석 기준	요약추정치(RR)	95% 신뢰구간	요약추정치 개수(n)	12(%)
통합분석	1.224	1.167 ; 2.285	50	62.1
하위 분석	-	-	-	-
교대 전체	-	-	-	-
남성	1.058	0.989 ; 1.131	28	2.7
여성	1.275	1.126 ; 1.443	12	64.3
야간교대 근무	1.168	1.085 ; 1.259	22	31.7
남성	1.137	1.012 ; 1.278	11	47.9
여성	1.340	1.049 ; 1.172	2	0

※ 자료 : 정연 등(2018)
주 : 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목록은 DL.Brown 등(2009); CM.Haupt 등(2008); W.Kang 등(2016); A. Knutsson 등(1999) ; L.Tenkanen 등(1997) ; C.Vetter 등(2016), A Wang 등(2016) ; Y.Cheong 등(2014) ; BJ.Kim 등(2012) ; T.Ellingsen 등(2007) ; H.Virkkunen 등(2006) ; F. Tüchsen 등(2006) ; K.Allies^oe 등(2010)임

<표 V-5> 교대근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의 메타분석 결과(보고서 표2-5)

메타분석 기준	요약추정치(RR)	95% 신뢰구간	요약추정치 개수(n)	12(%)
통합 분석	1.099	1.048 ; 1.151	67	65.9
남성	1.013	0.953 ; 1.076	46	36.2
여성	1.213	1.131 ; 1.301	21	82.2
하위 분석				
야간근무교대	1.275	1.097 ; 1,483	12	80.6
남성	1.164	0.940 ; 1.439	4	59.7
여성	1.334	1.089 ; 1.634	8	85.4

※ 자료 : 정연 등(2018)
주 : 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목록은 H. B^oggild 등(1999); Y.Fujino 등(2006); J. Hermansson 등(2007); C.Hublin 등(2010) ; JTJ^orjensen 등(2017) ; B.Karlsson 등(2005) ; R.McNamee 등(1996), G.Yadegarfar 등(2008) ; M.Yong 등(2014) ; F. Gu 등(2005)임

- 또한 정연 등(2018)에서는 교대근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2-5>와 같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교대 근로자의 사망 위험이 9.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언급하였다(RR=1.099, 95% CI : 1.048~1.151) 성별로는 남성의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RR)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RR)은 1.213(95% CI : 1.131~1.3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교대근무 중에서 야간 교대근무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는 사망 위험(RR)은 1.275(95% CI : 1.097~1.4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별로는 여성의 사망 위험(RR)만 1.334(95% CI : 1.089~1.634)로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제도

-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표VI-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감시·단속적 근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p>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p> <p>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p> <p>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p> <p>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²⁸⁾</p>	<p>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p> <p>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p>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을 말한다.

2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은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경비원 등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으로는 임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인 관행 등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2016. 10.)」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고용노동부의 2016~2019년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신청 및 승인 추이²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I-2>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신청 및 승인 추이(고용노동부)

<참고>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신청 및 승인 추이

◇ 감시·단속노동자 적용제외 신청 및 승인 추이를 보면, '18년의 경우 크게 증가했으나 '19년(11월 기준)은 예년 수준보다 소폭 증가

		'16년 1~11월	'17년 1~11월	'18년 1~11월	'19년 1~11월
신청	신청건수	10,244건	12,049건	21,324건	13,115건
	신청인원	45,753명	51,438명	76,561명	55,121명
승인	승인건수	9,784건	11,332건	20,300건	12,627건
	승인인원	43,224명	47,971명	71,168명	52,325명

* 연도별 인가 추이: (16) 10,331건 47,142명 (17) 11,936건 50,383명 (18) 21,724건 75,518명

◇ '18년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부분의 주52시간제 시행('18.7월~)에 따라 노동시간 상한이 축소되면서 경비직(감시근로), 임원 운전기사(단속적) 등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비 등 업무종사자의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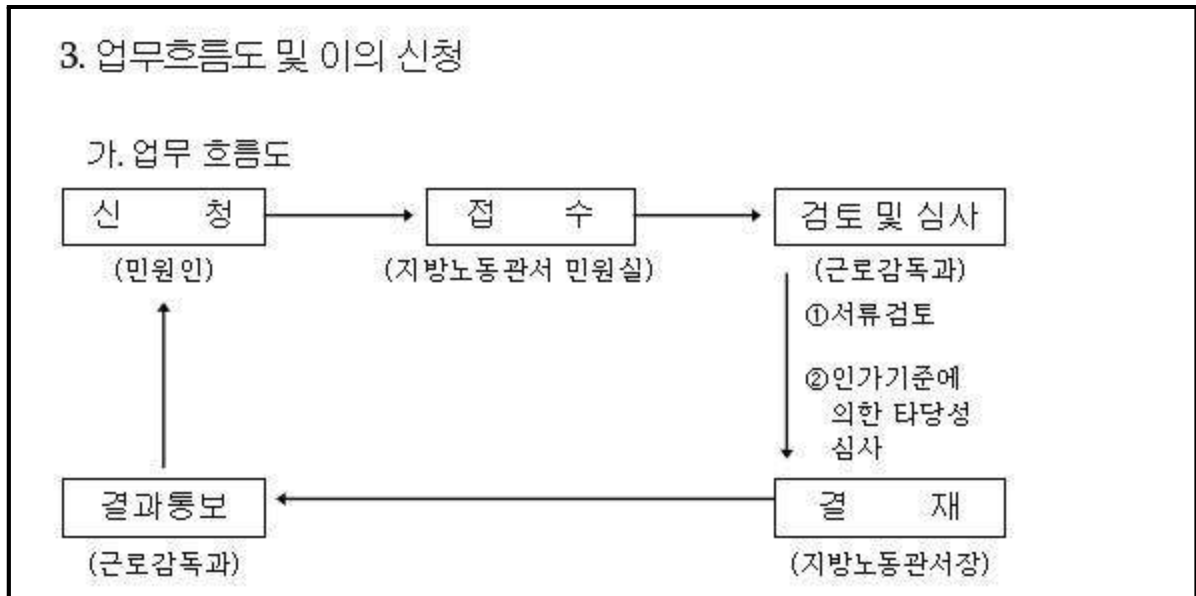
*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었던 노동자가 공공부분에 직접고용될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므로 새로 바뀐 사용자가 감시·단속 종사자로 승인을 희망할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일정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고용노동부 2020. 1. 2. 참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림VI-1>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절차



○ 고용노동부가 2020. 12. 18. 의원실에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승인률은 2015년 93.4%, 2016년 93.9%, 2017년 94.7%, 2018년 94.6%, 2019년 91.9%이며, 20년(6월말) 92.1%이며, 평균 승인률은 93.7%에 해당한다.

<표VI-3> 감시·단속적 신청건수, 처리건수(의원실 자료)

(단위: 건)

연도	신청건수	처리건수		
		소계	승인	불승인·반려 등
'20년 6월말	7,390	7,390	6,809	581
'19년	14,128	14,128	12,993	1,135
'18년	23,411	23,411	22,141	1,270
'17년	12,688	12,688	12,016	672
'16년	10,959	10,959	10,288	671
'15년	11,152	11,152	10,432	720
계		79,728	74,679	

<제공> 용혜인 의원실

-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 기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직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91호)」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지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 고용노동부는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장 현지출장을 통한 노동조건 실태 확인 의무화(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 명시하는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경비노동자의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판단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경비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사용자가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1) 원심은,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에 "24:00~04:00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관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2012. 9. 3. 작성된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순찰조의 조장을 맡은 바 있는 소외인은 '24:00~04:00경에 순찰을 돌면서 근무초소(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는지, 경비원이 가면을 하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원심은, 경비원들 중 일부는 2014. 2. 13.경 경비원 휴게실이 설치되기 전에 근무초소(경비실)가 아닌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비원들 일부가 사용한 지하실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공호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점, 2012. 11. 1.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불필요 물자 반입금지: 처리되어야 할 일반물자로 침대, 의자, 빈 화분, 재활용품”을 지적하고 있는 점, 2012. 7. 2.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같은 해 6. 18.~6. 29. 실시한 지하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나무사다리 방치, 비인가 전열기구, 폐품 보관 방치, 침대 설치, 공동식탁(설치)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하여 별점조치를 한 점, 2012. 7. 25.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침대 이용자에 대하여 근무기강 불량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원들 중 일부가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피고의 징계 등을 무릅쓰고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2014. 2. 6. 비로소 경비직원의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에 관하여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2014. 2. 8. ‘휴게시간’, ‘순찰중’이라고 기재된 풋말을 제작한 후 이를 경비실에 부착하도록 한 점, 2014. 2. 13.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 이전에는 입주민들이 민원제기, 동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4. 2. 이전에는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도와 임금 -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의 어려움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이 예외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 12. 2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2014.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1. 1.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VI-4>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이

연도	2007	2008~2011	2012~2014	2015
최저임금 지급률	70%	80%	90%	100%

-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2016. 10.)」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92다24509 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법 제53조제3항)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다20548 등) -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예시로 들고 있는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91다20548, 법무 811-28682, 2000. 10. 25. 근기 68207 -3298 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4.13.)”고 보고 있다.
- 경비노동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예:06:00~다음날 06:00)의 근무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조식, 중식, 석식, 야간(휴게시간, 수면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휴게공간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 수면시간에 경비실의 간이시설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의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3.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문제점 - 휴게시설,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없음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기준 없음”이라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예외 승인’을 전제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해조사서 등 재해조사 과정에서 감시·단속적 승인 여부에 대한 조사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 재해조사서(예시)>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가. 근로내용 및 직력	
근로시간	1일평균()시간 / 1주평균()일 / 1주평균()시간 / 기타 : 격일 24시간 근무제/ 근로계약서상 실근로시간 : 1일()시간 격일 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분 / 저녁시간()분 / 휴식시간 : 1일(1)회, 1회()분
근무내용	- 격일 24시간 근무제, 경비업무 - 점심 및 저녁식사 각각()분, 취침시간()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고정주간근무 <input type="checkbox"/> 고정 저녁/야간근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대근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시간 교대근무)
하루 휴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식사시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능 /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해진 휴게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90 분)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준수 /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직무 자율성	<input type="checkbox"/>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input type="checkbox"/>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또한 “(아파트 경비) 근무 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

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업무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서에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산정)된 업무시간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임, 독립된 수면장소가 없고, 연속 5시간 이상 제외고된 경우가 아니며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 1일 업무시간 20시간, 22시간, 23시간 등)”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지침의 기준을 토대로 재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의원실에 2020. 6.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고 제출하였다. “(주요 판단기준) 근무장소와 분리, 야간에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장비 마련, 냉난방 시설 마련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휴게시설과 ‘근무장소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살펴보면, 휴게시설과 근무장소의 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휴게시설을 근무장소와의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온전한 휴게, 수면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노동조건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수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의 대책

- 고용노동부는 2020. 12. 18. 의원실에 제출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관련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경비노동자가 속한 건물관리업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산재 승인 기준)이 최근 5년('15~'19년)간 평균 37명 발생*

* ('15년) 30명 → ('16년) 21명 → ('17년) 26명 → ('18년) 48명 → ('19년) 61명 → ('20.6월) 25명

○ 고용노동부는 '20년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예방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 근로자(경비)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감독('20.9.14.~'20.11.13.)을 실시*하고 시정 지시하였음

* ('16~'20년 직무스트레스 예방감독) ▲'16년 병원·금융보험업·운수업 등, ▲'17~'18년 고객응대업무 등에 의한 정신질환 발생 및 고위험 업종, ▲'19년 병원업, ▲'20년 **경비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건물관리업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안전보건공단, 디딤돌 사업)하고 있으며,

- IT업종·건물관리업 등 장시간근로에 기인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컨설팅 지속 실시 중('18년~, 100여개소/년)

* '20년에 건물관리업 14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진행

<제공> 용혜인 의원실

-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 강화 및 구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근로감독관직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 강화('19.8월)

*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기준에 휴기시설 마련 추가, 감시적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승인대상, 사업장 현지출장조사 의무화 등

○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의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시달('20.6월)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기준에 휴게시설 마련을 추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음으로 휴게시설 적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
- (주요 판단기준) 근무장소와 분리, 야간에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장비 마련, 냉난방 시설 마련 등

○ 제도 보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가진단('20.7월, 16,296단지) →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8월, 500개소) →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9~11월, 150개 실시)

2. 노동부 사건 현황 : 노동시간 위반, 임금체불 신고건수, 처벌 건수

- 고용노동부는 2020. 12. 18. 의원실에 제출한 경비노동자의 노동시간 위반, 임금체불 신고건수, 처벌건수(처벌은 형량에 따라 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비노동자의 신고건수 등에 대하여 별도로 추출·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다.

<표Ⅶ-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제2항 위반 신고사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조치내역 건수		
		계	행정종결	송치종결
'20년 6월말	120	106	70	36
'19년	251	247	109	138
'18년	218	198	63	135
'17년	179	168	75	93
'16년	213	198	69	129
'15년	222	209	70	139

*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 검찰 송치 후 처벌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경비노동자의 신고건수 등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움

<표Ⅶ-2> 2015년~2020년 상반기 임금체불 신고 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5년	사업장수	127,243	124,974	3,621	124,803	102,148	28,305	4,013
	접수건수	204,329	198,632	5,697	197,393	141,171	56,222	6,936
	근로자수	295,677	286,955	8,722	284,534	178,926	105,608	11,143
	체불금액	1,299,273	1,251,467	47,807	1,232,897	601,959	630,939	66,376
2016년	사업장수	133,546	131,160	3,985	131,257	108,358	29,150	3,793
	접수건수	217,530	210,665	6,865	211,241	152,290	58,951	6,289
	근로자수	325,430	314,458	10,972	312,654	198,392	114,262	12,776
	체불금액	1,428,631	1,363,017	65,615	1,348,897	686,639	662,258	79,734
2017년	사업장수	130,996	128,673	3,750	128,343	106,760	27,726	4,477
	접수건수	209,714	203,493	6,221	202,215	149,464	52,751	7,499
	근로자수	326,661	314,123	12,538	312,338	203,902	108,436	14,323
	체불금액	1,381,065	1,304,301	76,764	1,288,919	675,050	613,869	92,146
2018년	사업장수	138,533	135,925	4,447	136,179	107,817	36,368	4,059
	접수건수	224,781	217,317	7,464	217,958	151,504	66,454	6,823
	근로자수	351,531	337,276	14,255	336,857	203,243	133,614	14,674
	체불금액	1,647,197	1,555,323	91,874	1,550,885	729,206	821,679	96,312
2019년	사업장수	135,384	133,290	3,699	133,815	104,874	37,967	2,849
	접수건수	227,739	221,382	6,357	222,618	150,798	71,820	5,121
	근로자수	344,977	331,135	13,842	336,019	203,374	132,645	8,958
	체불금액	1,721,703	1,629,233	92,470	1,656,140	826,033	830,108	65,562
2020년 상반기 (6월)	사업장수	67,497	65,701	2,836	65,954	51,387	17,986	2,479
	접수건수	107,170	102,065	5,105	102,562	71,671	30,891	4,608
	근로자수	160,311	151,485	8,826	151,682	96,199	55,483	8,629
	체불금액	850,649	785,383	65,266	784,077	432,239	351,839	66,572

- * 사법처리는 검찰에 '기소의견' 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를 의미함
- * 우리부의 임금체불 관련 신고사건은 사실관계 조사 후 확정, 시정지시, 불응 시 수사착수, 검찰송치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송치이후의 기소여부는 검찰의 권한, 형량은 법원의 권한으로 별도 파악이 어려움
- * 신고사건 통계는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있어 경비노동자가 제기한 신고사건 관련 통계는 추출이 불가함

<제공> 용혜인 의원실

1.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변화 추이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업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업무상 질병 전체 인정률은 2015년 44.9%, 2016년 44.1%, 2017년 52.9%, 2018년 63.0%, 2019년 64.6%, 2020년 63.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정률은 2018년 이후 63~64%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업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병 인정률은 2015년 23.5%, 2016년 22.0%, 2017년 32.6%, 2018년 41.3%, 2019년 41.1%, 2020년 38.2%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 및 지침 변경 후 인정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³⁰⁾> 뇌·심혈관질병 인정률은 2015년 27.8%, 2016년 13.9%, 2017년 23.1%, 2018년 63.6%, 2019년 47.8%, 2020년 68.9%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까지 신청건 수 98건 중 승인건 수 21건으로 승인률 21.4%이며, 2018~2020년까지 신청건 수 124건 중 승인건 수 74건으로 승인률 59.7%이다. 2015~2020년까지 평균 승인률은 42.8%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8. 1. 1.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후 승인률은 2.79배 증가하였다. 신청건 수는 2015년~2017년까지 98건, 2018~2020년까지 124건으로 1.27배 증가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노동자’로 분류하여 제출한 현황은 경비노동자 외 관리소장, 청소, 시설 유지관리, 주차원, 조경 등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현황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업무상질병판정서 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230건 중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을 분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인정률 기준은 ‘최초 1회차 결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심의 사건 14건(2018년 13건, 2019년 1건)을 제외한 166건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전체 인정률은 48.8%(인정 81건, 불인정 85건)이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0.0%, 2016년 23.8%, 2017년 22.2%, 2018년 70.0%, 2019년 53.1%, 2020년 71.43%으로 분석되었다. 2015~2017년 평균 인정률 24.6%인 반면, 2018~2020년 평균 인정률은 64.95%로 2018. 1. 1. 지침 개정 후 인정률은 2.64배 증가하였다. 신청건 수는 2015~2017년 69건에서 2018~2020년 97건으로 1.41배 증가하였다.**

30)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비노동자’ 산재 현황으로 제출한 사건에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포함되는 경비노동자 외 관리소장, 청소, 시설관리, 조경, 주차원 등 다른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2019.11.30.)」에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청건 중 ‘경비원 및 검표원’ 승인률(2018.상반기.~2019.하반기.)에 대하여 “세부 직종 중 ‘경비원 및 검표원’의 신청건수는 총 157건, 승인률은 61.8%로 전체 신청건수의 승인률인 41.3%에 비하면 ‘경비원 및 검표원’의 승인률의 유의하게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18. 1. 1.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재심의 사건은 14건이며, 2018년 13건 중 10건이 인정되었고, 2019년 1건 중 1건이 인정되었다. 재심의 사건 14건 중 인정 11건, 불인정 3건으로 인정률은 78.57%이다. 2018년 지침 개정 사항을 통해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경비노동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인정된 것과 업무시간 산정 기준(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어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 등)을 적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전체 인정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뇌심혈관질환 인정률,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 질환(사망) 인정률,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 인정률을 비교하면, 2015~2017년까지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29.9%, 2018~2020년 40.20%로 1.34배 증가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인정률은 2015~2017년에 비해 2.6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부 고시 및 지침 개정 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률은 전체 인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경비노동자 과로사 규모, 연령, 업종비교 : 60세 이상 남성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 모두 남성이며, 인정 92건 중 60세 미만 인정 사건은 4건으로 4.35%를 차지하였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95.65%가 60대 남성 노동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 사건 평균 연령은 68.22세이다.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연도별 <산업재해 분석현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를 중심으로)>과 경비노동자 과로사(업무상질병판정서)를 비교 분석하면, 연도별 전체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중 경비노동자 과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7%(293명 중 9명), 2016년 1.67%(287명 중 5명), 2017년 1.13%(354명 중 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4.60%(457명 중 21명), 2019년 3.38%(503명 중 17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장 규모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1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5~9인 미만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0.0%, 2016년 57.16%, 2017년 34.62%, 2018년 50.0%, 2019년 53.63%를 차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00%, 2016년 42.87%, 2017년 11.54%, 2018년 18.75%, 2019년 27.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24%, 2016년 7.0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로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0%, 2016년 23.81%, 2017년 15.38%, 2018년 43.75%, 2019년 53.10%로 2018년 이후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 1. 1. 경비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시 및 지침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 뇌심혈관 질병 사망 사건 중 ‘60세 이상 남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45%, 2016년 19.91%, 2017년 21.35%, 2018년 25.78%, 2019년 3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심혈관 질병 사망 사건 중 60대 이상 남성노동자 사건 중 경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2015년 14.29%, 2016년 7.25%, 2017년 5.80%, 2018년 18.18%, 2019년 10.0%로 분석되었다. 2018~2019년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 중 60대 이상 남성의 사망 사건에서 경비노동자가 1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을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10.24%, 2016년 7.0%, 2017년 7.34%, 2018년 10.50%, 2019년 1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뇌심혈관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5년 3순위(10.24%), 2016년 3순위(7.0%), 2016년 4순위(7.0%), 2017년 3순위(7.34%), 2018년 1순위(10.50%), 2019년 1순위(1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인정률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병 사망 사건을 종합하여 업종에 따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제외)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 전

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 업종별 사망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사망자 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6, ② 0.41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대비 2.56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27로 1.69배 높고, 2017년 ① 0.19, ② 0.32로 1.69배 높고, 2018년 ① 0.24, ② 0.58로 2.42배 높고, 2019년 ① 0.27, ② 0.72로 2.6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종별(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종사자 수 대비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뇌심혈관질병 발생 현황을 토대로 ▲ 전체 근로자 수, 업종별 근로자 수, ▲ 전체 뇌심혈관질병 재해자 수, 업종별 재해자 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자 수를 토대로 ①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②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뇌심혈관질병 만인률을 비교하면, **2015년 ① 0.19, ② 0.25이며 전체 뇌심혈관질병 만인률 대비 1.32배 높으며, 2016년 ① 0.16, ② 0.12로 0.75배 높고, 2017년 ① 0.23, ② 0.40로 1.74배 높고, 2018년 ① 0.36, ② 1.00로 2.78배 높고, 2019년 ① 0.51, ② 1.25로 2.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 뇌심혈관질병 만인률과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질병 사망 만인율, 뇌심혈관질병 사망만인률의 변화 추이 및 2018년 이후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 모두 남성이며, 전체 평균 연령은 67.94세, 최소 50세, 최대 85세이다. 인정 사건 92건의 평균 연령은 68.22세, 최소 52세, 최대 80세이다. 인정 사건 중 65~69세가 36명(39.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를 고정주간, 고정저녁·고정야간,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기타(3조2교대, 4조3교대 등)로 구분하였고, 중복 체크한 결과 전체 사건 중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81.87%를 차지하였다. 인정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시간 교대제(격일제) 88.78%, 고정저녁·고정야간 4.08%, 기타 4.08%, 고정주간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1일 평균 업무시간(수면시간, 휴게시간 제외)은 인정 17.67시간, 불인정 13.9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3.75시간 업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인정 2.89시간, 불인정 4.8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93시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0.21시간, 불인정 48.3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1.85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8.19시간, 불인정 10.0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8.97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3.99시간, 불인정 49.3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4.07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4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9.20시간, 불인정 9.62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9.98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 63.77시간, 불인정 50.95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12.82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발생 12주 전 평균 야간업무시간은 인정 19.64시간, 불인정 9.66시간으로 분석되어 인정된 사건의 경우 불인정 사건에 비해 9.98시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2018년 이전.이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업무시간은 1일 평균 18.53시간, 1주 평균 59.84시간, 4주 평균 64.91시간, 12주 평균 65.0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은 1일 평균 17.47시간, 1주 평균 60.29시간, 4주 평균 63.77시간, 12주 평균 63.53시간으로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살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수면시간, 휴게시간은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수면시간은 1일 평균 3.08시간, 휴게시간은 1일 평균 2.39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수면시간은 1일 평균 2.84시간, 휴게시간은 1일 평균 3.0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후 1일 평균 수면시간 0.24시간 낮아졌고, 1일 평균 휴게시간은 0.65시간 증가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수면시간이 낮아진 것은 지침 개정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이 증가한 것은 업무시간이 낮아진 것과 같은 이유로 업무시간이 낮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살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가 인정된 사건의 경우 2018년 이전 야간시간은 1주 평균 16.28시간, 4주 평균 18.73시간, 12주 평균 19.53시간이었으나, 2018년 이후 야간시간은 1주 평균 18.61

시간, 4주 평균 19.78시간, 12주 평균 19.66시간으로 2018년 이전에 비해 2018년 이후 야간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수면시간이 낮아진 이유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의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야간시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18년 이전 4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2018년 이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명시하였고,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의 사업장 유형을 아파트, 아파트외 주거지, 공공기관(연구소, 학교 등), 상업시설(신축공사, 공장, 빌딩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92건 중 아파트 71건(77.17%), 상업시설 14건(15.22%), 공공기관 등 4건(4.35%), 아파트외 주거지 3건(3.26%)로 분석되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장 유형을 아파트와 아파트 외로 구분하여 인정된 사건의 업무시간을 비교하면 아파트의 경우 1일 평균 업무시간 18.31시간, 아파트 외 15.52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아파트 61.35시간, 아파트 외 49.48시간, 4주 평균 아파트 65.14시간, 아파트 외 47.95시간, 12주 평균 아파트 65.09시간, 아파트 외 49.87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교대제(격일제), 수면시간·휴게시간의 보장 여부, 독립된 공간에서 수면(휴게)시설 확보 여부, 경비 및 순찰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관리(화단관리, 제초작업, 제설작업, 낙엽치우기 등), 주차관리, 택배관리, 입주민 민원 등 부가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아파트 외 사업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5인 미만, 5~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3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경비노동자 수가 명시된 경우 경비노동자의 수, 재해조사서에 명시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 중 5인 미만, 5~10인 미만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확인되었다. 인정 사건의 경우 5인 미만 40건(43.48%), 5~10인 미만 8건(8.70%)으로 52.17%를 차지하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현황을 분석한 것과 같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비노동자의 2018년 50.0%, 2019년 53.63%로 분석되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면(중복) 심혈관질환 55건(59.14%), 뇌혈관질환 26건(27.95%/ 뇌출혈 14건(15.05%), 뇌경색 12건(12.90%)), 기타(심정지, 급성심장사, 사인미상 등) 12건(12.90%)으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교대제 등이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경비노동자의 24시간 교대제(격일제)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발생 월별 현황을 분석하면, 인정된 사건 92건 중 12월 14건(15.22%), 1월 13건(14.13%), 8월 10건(10.87%), 10월 10건(10.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절별로 구분하면 겨울(12~2월) 35건(38.04%), 여름(6~8월) 22건(23.91%), 가을(9~11월) 18건(19.57%), 봄(3~5월) 17건(18.48%)를 차지하여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1건 중 겨울철(12~2월) 29건(40.85%), 여름철(6~8월) 17건(23.94%)를 차지하였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초소 근무, 경비초소 외 근무(순찰, 환경관리(화단정비, 제조작업, 제설작업, 낙엽치우기 등),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로 구분하였을 때, 경비초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고온·한랭 등 온도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경비초소 또는 수면(휴게)시설의 냉·난방 상태, 시설(간이침대, 침대, 화장실 유무, 책상, 의자 등) 등 작업환경적 요인과 수면(휴게)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도 온전한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등 업무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의 발생장소를 사업장, 자택, 기타(도로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0건 중 147건(81.67%)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인정된 사건의 경우 사업장에서 74건(80.43%)이 발생하였고, 인정된 사건 중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71건 중 55건(77.46%)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중 사업장에서 1인이 근무하던 중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24시간 교대제(격일제), 야간에 1인 근무 등 업무특성상 상병 발병시 조기 발견 및 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려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파트에서 24시간 교대제(격일제)로 근무하는 60대 이상 남성이며, 10인 미만 규모, 야간에 1인 근무시 겨울철(12~2월)에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수면(휴게)시설 미확보, 수면(휴게)시간 미보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2019.11.)」 특정 직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아파트 경비종사자-아파트 경비종사자 뿐만 아니라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 적용하되, 야간 업무 중 경비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야간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재해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업무시간 산정 근거, 산정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이 있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게시물 부착(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등) 진술에 터잡아 업무시간이 산정된 경우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교대제근무’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각각 사업장별 경비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보다 폭넓게 판단하기 위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업무시간 산정근거, 산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중요한 수면(휴게)시간 보장 여부, 수면(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공단 지침 등에 수면(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1]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재해조사시트

1. 재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해당 □비해당)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용일자				퇴사일자	
종사상지위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아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직 종	(직종코드)			평균임금	
사업주와의 관계			-선택사항-		사업주와 동거 □해당 □비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선택사항-		
▶ 유족수급권(사망재해)					
사망일자 : -선택사항-		/ 사망구분 : -선택사항-		/ 청구구분 : -선택사항-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순번	재해자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유언비율
순위	주소				
장해	부양	수급자격	수급권	청구 대표자	동의여부
(계속)					
2. 산재보험 적용관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 사 명 칭)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개시)	(우편번호)			
사업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해당 □비해당)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적용불가	□해당사항 없음 □적용제외 □성립전 재해 □성립취소			신고구분	-선택사항-
	-제외사유 선택사항-				
본지사구 분	-선택사항-			사업구분	-선택사항-
사업장상 태	-선택사항-			사업종류	-선택사항-
성립일자	-선택사항-			접수일자	-선택사항-

미가입재 해	-선택사항-		급여징구 구분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input type="checkbox"/> 태납
3. 재해경위(재해 발생형태-중분류)				
재해 일시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해 경위				수정 <input type="checkbox"/>
현장 방문확인 여부 -선택사항-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질병 <input type="checkbox"/>			
다른배상여부 -선택사항-	구상대상 -선택사항-	불가항력 -선택사항-		
보험가입자 의견 -선택사항-				
▶ 신청상병				
주/부/파생	상해코드	상병코드	세부상병명(진단명)	
4. 주치의사의 소견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input type="checkbox"/> 본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소견 작성 의료기관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내원 방법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구급차 <input type="checkbox"/> 구급차외 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환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년 월 일 (:)	최초 발생	재해 당시 의식소실(<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환자의 진술 및 소견서 등을 기초로)	증상내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진술, 소견서 등을 기초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치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5.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주요 검사	<input type="checkbox"/> X-Ray <input type="checkbox"/> CT <input type="checkbox"/> MRI <input type="checkbox"/> MRA <input type="checkbox"/> 심장혈관조영술 <input type="checkbox"/> Bone scan <input type="checkbox"/> PET <input type="checkbox"/> 초음파 <input type="checkbox"/> 내시경 <input type="checkbox"/> 관절경 <input type="checkbox"/> 근(신경)전도 <input type="checkbox"/> 폐기능 <input type="checkbox"/> 조직 <input type="checkbox"/> 적외선체열 <input type="checkbox"/> 정신상태 <input type="checkbox"/> 심리학적 기타·특이사항()			
기초 질환	고혈압(<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혈압치료(<input type="checkbox"/> 미복용 <input type="checkbox"/> 부정기복용 <input type="checkbox"/> 정기복용) 고지혈증(<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당뇨(<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당뇨치료(<input type="checkbox"/> 미복용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인슐린) 결핵(<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간염(<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상병관련가족력(<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타·특이사항 (기존질환, 약물복용 등에 관한 내용)			
신 체	신장(____cm) 체중(____kg)		비만도(<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도 <input type="checkbox"/> 중등도 <input type="checkbox"/> 고도)	
흡	현재흡연(<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1일__갑)(흡연기간__년) 과거흡연(____년도 이후 금연)			

연 음 주	음주(□유 □무)(1주__회)(음주기간__년)(1회 소주기준__병)(1회 맥주기준__병)									
가정환경/대인관 계 등 사생활 부분의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text								
건강보험 등 관련 과거 치료 내역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text								
적용부서 협조요청		<input type="checkbox"/> 미가입재해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인 가입승인 <input type="checkbox"/> 14일 이내 재해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류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가. 근로내용 및 직력										
근로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간근무제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__조__교대 <input type="checkbox"/> 격일제 <input type="checkbox"/> 고정야간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무 내용	-text 근무형태, 담당업무, 하루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하루 휴식	<input type="checkbox"/> 식사시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input type="checkbox"/> 가능 /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정해진 휴게시간 (<input type="checkbox"/> 있음 (00분)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을 <input type="checkbox"/> 준수 /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작업 주기	<input type="checkbox"/>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주당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월당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연간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input type="checkbox"/> 계절적 작업으로 연간 ()정도 수행하는 작업									
근 무 경 구 분 별 직 력	번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담당업무(작업내용)	취급 물질(물품) 의 종류	부서/라인/공정				
	현 직 력	1	0000-00-00	0000-00-00	text	text				
	과 거 직 력	1	0000-00-00	0000-00-00	text	text				
나. 업무의 세부내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뇌혈관 <input type="checkbox"/> 심장			업무형태	<input type="checkbox"/> 감시단속업무 <input type="checkbox"/> 택시					
①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증상 발생 전 (1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 운전 (주행) 시간	야간 시간	총 업무 시간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text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

기타 고려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text
업무상(외) 특이사항		text
대기 시간	<input type="checkbox"/> 있음	대기시간 발생 사유 ()
	<input type="checkbox"/> 없음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___분/회, 하루 몇__회)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감시 업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장(___시간), <input type="checkbox"/> 미보장] 수면장소 확보 유무[<input type="checkbox"/> 있음(<input type="checkbox"/> 별도 공간, <input type="checkbox"/> 간이시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여부(<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7. 조사결과		
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담당자 조사결과	text	
의견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을 기재	text	
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주치의사	text	
자문의사	자문의사 (서명)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특별진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특진() <input type="checkbox"/> 직업성폐질환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자문기구()	
text		
8. 조사목록		
연번	목록명	부속(첨부)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2018. 00. 00.
일반직 급 홍길동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5년~2020.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5~2019년 산업재해 분석현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2019.11.)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3.12.) 등

근로복지공단, 2015~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등

김경하, 과로사 요양결정 사례 분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20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의 실무적용 실태 및 운영개선 방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2015. 12.)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용혜인의원실, 경비노동자 질병·사고 신청·승인건 수(2015~2020.6.)

경비노동자 사망·질병 관련 유형별 분류(2015~2020.6.)

뇌심혈관계질환 연령별·직종별 통계(2015~2020.6.)

경비노동자 업무상질병판정서(2015~2020)

경비노동자 재해조사서(항목별 요약)(2015~2020)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일본)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11.) 등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발행 **2021.4.19 용혜인의원실**

문의 **용혜인의원실** hello@yonghyein.kr 또는
 02-784-3063

본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00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장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본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
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발표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토론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
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은종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의 용혜인의원실 hello@yonghyein.kr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